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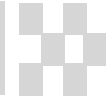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연구기관명 :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23.12.~2024.7.
- 연구책임자 : 박주형(경인교육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성기(협성대)
 - 차성현(전남대)
 - 정성수(대구교육대)
 - 김의성(대전교육청)
 - 이상신(덕소초)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에
기재된 내용들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요약



정부의 지속적인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교권 회복 및 보호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이 연구는 교권 관련 제도의 변화와 교권 침해 실태,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면담자료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행 법제에서는 교사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교권이 도전받을 수 있는 상황임. 교권 침해 실태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졌음. 2022년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3,035건에 이르며, 중학생에 의한 침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함.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012년 교권 보호종합대책, 2022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2023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까지 여러 정책이 도입되었음.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크게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권 보호 안전망 구축, 교권 보호 역량 강화 및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2023년 교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법령 개정이 다수 이루어짐.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학생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교권 보호 정책을 살펴보았음. 미국의 교권 보호 정책은 효과적인 교육자 양성과 실질적 커리큘럼 제공, 경력에 따른 자격 체계와 보상 다양화, 다 계층 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지원 전문가 확보, 적절한 훈육 전략과 학생의 교실 통합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변호사, 정신과 의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조직함. 또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상담과 복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 영국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정책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의 최소화 노력,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교권 침해 학생을 위한 교내외 지정교육

기관 운영 등이 있었음. 프랑스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내부규정의 별과 징계, 관리자와 교육청의 지원체계, 공무원 직무 보호조치 및 경찰신고, 고소 등이 제도화되어 있었음.

초점 집단 면담(FGI) 결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사의 권한 위축, 아동학대법 관련 학부모의 과도한 권리 행사, 학교 기능의 지나친 확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등이 도출됨. 그 결과 교사가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교원들은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해 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었음. 면담 참여자들은 2023년 이후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개선 방향으로 부모 교육 강화, 교육청의 직접적인 법적 지원체계 구축,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이 제안되었음.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논의에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예방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 구체적인 과제로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단기적 보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교권 보호 및 회복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성 개발 여건 조성, 교권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강화 및 실효성 확대, 학교구성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강화, 교육지원 활동 행정업무 조정·이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지향 등을 제안함.

Contents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II 이론적 배경

- 1. 교권의 개념 및 교권 침해 실태·원인 13
- 2.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 분석 29
- 3.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분석 36
- 4. 관련 법령의 변화 분석 58
- 5. 선행연구 분석 79
- 6. 종합 논의 93

III 외국의 교권 관련 정책과 법 제도 사례

- 1. 미국 사례 99
- 2. 일본 사례 118
- 3. 영국 사례 128
- 4. 프랑스 사례 152
- 5. 종합 논의 162

I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을 위한 FGI 분석	
1.	FGI(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개요	167
2.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현상에 대한 인식	169
3.	교권 침해 원인과 결과	171
4.	교권 침해 사례 및 회복	173
5.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평가	179
6.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182
7.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직무조정 방안 탐색	186
8.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90
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	
1.	연구를 통해 드러난 현상 및 원인	195
2.	정책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	197
3.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제안	210
VI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결과 요약	236
2.	정책적 제언	237
3.	향후 연구 제언	238
	참고문헌	240

표 목차

〈표 II-1〉 교권의 내용	16
〈표 II-2〉 교육활동 침해 현황(2019~2022)	18
〈표 II-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접수 교권 침해유형 및 실태	20
〈표 II-4〉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37
〈표 II-5〉 인천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38
〈표 II-6〉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0
〈표 II-7〉 강원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1
〈표 II-8〉 세종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2
〈표 II-9〉 대전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4
〈표 II-10〉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5
〈표 II-11〉 충청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6
〈표 II-12〉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7
〈표 II-13〉 전라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8
〈표 II-14〉 전라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49
〈표 II-15〉 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0
〈표 II-16〉 대구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1
〈표 II-17〉 부산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2
〈표 II-18〉 울산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3
〈표 II-19〉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4
〈표 II-20〉 경상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56
〈표 II-21〉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3.9.27.)	59
〈표 II-22〉 「초·중등교육법」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2.12.27.)	60

〈표 II-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	61
〈표 II-24〉 「초·중등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3.9.27.)	62
〈표 II-25〉 아동학대처벌법의 교육활동 관련 개정	65
〈표 II-26〉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75
〈표 II-27〉 자치법규에서 정의한 교권 개념	77
〈표 II-28〉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 직무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령	86
〈표 II-29〉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의 직무 영역	87
〈표 II-30〉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	87
〈표 III-1〉 학교 내 규율의 전통적 접근 방식과 회복적 접근 방식의 차이	104
〈표 III-2〉 학부모의 이기적인 언동 분류	119
〈표 III-3〉 몬스터 페어런츠 관련 범죄	121
〈표 III-4〉 전문가팀 설치 사례	124
〈표 III-5〉 국가행동설문조사의 주요 결과(DfE, 2023b, pp. 11-12)	132
〈표 III-6〉 학생 행동에 대한 학교의 대처 권한과 방법(DfE, 2024a, pp. 15-30)	139
〈표 III-7〉 정학 및 퇴학 규정(DfE, 2023c, pp. 11-15)	142
〈표 III-8〉 합당한 강제력의 상황과 목적(DfE, 2013, pp. 4-5)	144
〈표 III-9〉 합당한 강제력의 상황과 목적(DfE, 2022b, pp. 7-20)	145
〈표 III-10〉 2021-2022년 공립 및 교육부협약 사립학교 초등학교 교원 피해 인원 추정 수치(Sénat, 2024, p33)	154
〈표 III-11〉 2018-2019년 공립 및 교육부협약 사립학교 중등학교 교원 피해 인원 추정 수치(Sénat, 2024, p34)	154
〈표 III-12〉 프랑스의 교원 보호 조치(MENJ, 2024)	160
〈표 IV-1〉 연구 참여자 정보	166
〈표 V-1〉 교권 관련 선행연구 제언의 범주화 결과	198
〈표 V-2〉 선행연구의 제언과 현 법령 및 제도와의 비교	200

그림 목차

[그림 II-1]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2009~2022)	17
[그림 II-2] 한국교총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1993~2022)	17
[그림 II-3]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2019~2023)	22
[그림 II-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2021~2023)	22
[그림 II-5] 2021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23
[그림 II-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16~2023)	24
[그림 II-7] 학교 전반에 대한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2012~2023)	25
[그림 II-8] 학생의 인성 수준(2012~2023)	26
[그림 II-9]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7~2023)	27
[그림 II-10]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2019~2023)	27
[그림 II-11]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	32
[그림 II-12] 정영수 외(2010)가 제시한 교직원 직무분류도	89
[그림 III-1] 다양한 교사 역할 구조의 예시	111
[그림 III-2] MTSS에 따른 개입과 지원 위계	113
[그림 III-3] 도교도 교육 상담센터 상담내역	1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필요

- 그간 지속적인 정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음. 이는 변화된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서 정책 개선을 위한 원동력으로 평가됨.
- 최근 급변하는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예컨대,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도래, 학령인구 감소와 가족의 교육적 기능 약화, 학교의 기능 확대(초등 늘봄학교 등)로 인해 사회의 한 조직으로서 교육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음.
- 현재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는 상당 부분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기 이전에 디자인된 부분이 많음. 비록, 2023년 진행된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요구들이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교권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2)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필요

- 2012년 8월 정부는 교권 침해 사안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함(교육과학기술부, 2012). 주요 내용은 교원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처벌, 피해 학생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학교 방문 예약제 시행, 교권 침해 은폐 처벌,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임.
-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16년 2월 기존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개정함. 이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교원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이 강화됨.

-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현상은 꾸준히 증가하였음. 2019년~2022년 1학기까지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임. 2021년은 2,269건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집계됨(교육부 보도자료, 2023. 5. 22.).
- 특히 2022년 중학생이 수업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지만, 교사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확산되면서 교권 침해행위를 제지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짐.
- 이에 2022년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신설되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3년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2023년 9월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함.
- 그러나 2021년 호원초 교사, 2023년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등 잇따른 교원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¹⁾에 의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남. 이에 교원들은 2023년 7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2023년 9월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함. 교권 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미함.
- 교권 4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직위 해제를 제한하고 교권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며,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가능하게 하였음.
- 또한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조치를 하고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

1)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보호자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

- 교권 보호를 위한 4법의 통과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근본적인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권 보호정책이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3)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법률 개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도입, 최근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련의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이 현재의 시각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혹은 새로운 보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의 모습은 학교급과 학교의 지역적 특성 및 학교 유형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 현상이 침해의 주체 즉,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 등이나에 따라 침해 교원의 대응 및 피해가 달라질 수 있음.
- 교권 침해의 모습과 행태 그것의 영향에 따라 어떻게 침해된 교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회복된 교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사안은 침해 대상과 침해유형 등이 더 다양해지고 있음. 이에 교권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교권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4)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 교육 이슈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발생과 동시에 대중의 큰 관심을 얻는 사안들 예컨대, 학교폭력 사건, 교권 침해 사건, 입시제도 문제 등은 사안

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우 단기적으로 해당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됨.

-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접근은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그 사건이 품고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다른 교육정책들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드러내지는 못함. 현재도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교사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식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좁은 의미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교권 회복 및 보호의 근본적인 취지가 바람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학교의 구조나 업무 처리 방식 그리고 수업의 방식에서 이러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과의 연관성도 살펴보아야 함.
- 예컨대, 학교 내 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권 회복적 관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 직무조정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즉, 학교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교원들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 영역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과 근본적인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것임. 연구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집단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현재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 측면에서 부족한 면을 제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영역들을 발굴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초점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교권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권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1) 교권 관련 제도의 변화 및 실태 분석

-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국내의 교권과 관련한 정책, 제도, 법령 등의 변화 과정을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교권 변화의 이유와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2012년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2016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육 활동 보호 체계화, 2021년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2022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2023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분석함.
- 해외국가의 교권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함.
 - 선행연구나 언론 기사에서 다루어진 선진국의 교권 보호 관련 정책 중 본 연구의 초점에 부합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사례를 분석함. 최근의 정책 변화나 법·제도 개선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함.

2) 교권 회복 및 보호와 관련된 실태 분석 및 요구조사

- 최근 발생한 교권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고, 교육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교권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들을 문헌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현 교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을 도출함.
- 교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교권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과정을 통해 교권이 침해되며 교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교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분석함.

3)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직무 조정 방향 탐색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 과정은 주로 침해되는 교권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며,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통해 침해된 교원의 교권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하지만,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지금 교권 회복 및 보호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인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이 필요함.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 영향이 커지고 있고, 사회에서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다만, 본 연구는 교원의 직무 규정 또는 업무 부담 경감 등의 연구와는 달리 변화된 교육환경변화 및 새로운 학교와 교원의 직무 관점에서 교사 직무 조정 방향을 폭넓게 다루고자 함.

4) 교권 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

- 교권 관련 제도의 변화 및 실태 분석, 해외국가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분석, 초점 집단면담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우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재의 교권 보호 제도에 비추어 보완해야 할 부분과 새롭게 추구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도출함. 교권 회복 및 보호는 교원의 노력과 교원들을 위한 정책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안함.
- 다음으로, 외국의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정책들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제안을 도출함. 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다르고 공교육 형성이나 현재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 과정이 다름.

- 본 연구의 중장기적 정책 개선 제안은 법률을 포함한 법령 개선, 교권 회복 및 침해 관련 정책 개선, 교사의 교권이 확립될 수 있는 교사 직무 조정 방향 등을 포함함.

나. 연구의 방법

1) 문헌분석

- 교권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변화,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직무 조정 방향 탐색, 교사·학생·학부모의 교권 문제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요구 분석,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제안, 외국의 교권 보호 정책을 주제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권에 대한 정책변화, 교육공동체의 인식 및 요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함.
- 교권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교권 관련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 선행연구는 ①교권 관련 정책 및 법, 제도의 변화, ②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직무 조정 방향 탐색, ③교사·학생·학부모의 교권 문제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요구 분석, ④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제안, ⑤외국의 교권 보호 정책의 5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수집함.

2) 초점 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

-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함.
- FGI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함.
- FGI 대상 선정은 학교급과 교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함. 특히, 교권 회복 및 보호와 관련하여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교권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와의 면담도 함께 진행함.

- FGI는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권과 관련한 어려움과 앞으로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함.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주제에 따라 내용을 체계화하고 요약 화하여 교권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

Ⅱ. 이론적 배경

1. 교권의 개념 및 교권 침해 실태·원인
2.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 분석
3.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분석
4. 관련 법령의 변화 분석
5. 선행연구 분석
6. 종합 논의

II. 이론적 배경

1. 교권의 개념 및 교권 침해 실태 · 원인

- 교권이라는 용어는 정부나 언론 등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다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 교사의 추상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의미하기도 함. 여기서는 법적 개념과 학술적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논의하는 데 필요한 교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법적 개념

- 현행법 중 ‘교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조항은 없음. 다만, 법률 수준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과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 보호위원회’와 ‘교권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교권 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권 보호’는 ‘교육활동 보호’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교권’은 ‘교육활동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교육활동권’의 범위가 어떤 것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즉, 교육활동권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나 교육 방법 결정권, 교육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가 됨.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 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이라는 말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해석됨. 앞 문단에서 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이나 교육 방법 결정권, 평가권, 생활지도권과 같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한은 침해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 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교권은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권을 언급하고 있음.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여기서 말하는 교권도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는지,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함. 포괄적으로 교원의 권위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2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 중 공개하지 않을 수 항목의 하나로서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언급할 때 교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 교권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움.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스승의 날 행사 내용으로서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교권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이라는 말의 맥락에서 볼 때 ‘교원의 권위’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요컨대, 법적으로 교권의 개념은 ‘교원의 권위와 권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달리 말하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교원의 권위는 법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지만 교원의 권한은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객관화하여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이러한 교원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평가권만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평가하며, 교육감은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평가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

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학교장이나 교사 등 교원의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도 제3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처럼 현행 법제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권위(사회적 신뢰와 존경)는 물론이고 법적인 권한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

나. 학술적 개념

- 김달영 외(2014) 등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권은 교원의 권리와 더불어 교원의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권리로서의 교권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고, 권위로서의 교권은 교원이라고 하는 직무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교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서 받아야 할 사회적인 신뢰와 인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음.
- 김성기 외(2017)는 교권의 개념이 상황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교사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함. 여기서 교육권이란 ‘교육에 관한 권리·권한의 총칭’, 즉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갖는 개별적·구체적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 김민규 외(2016)도 교권을 교사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위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음. 다만, 경기도교육청이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교권의 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교권은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권위 및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함.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교사가 법률상 정해진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적 권리라는 점보다는 인간으로서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교권이라고 간주될 수 있음. 다만,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단순히 교사의 교육할 권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퇴근 후의 삶이나 교

사의 복장이나 언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권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표 II-1> 교권의 내용

구분	내용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선택 및 선정권평가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원단체 활동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재판청구권 노동권

출처: 경기도교육청(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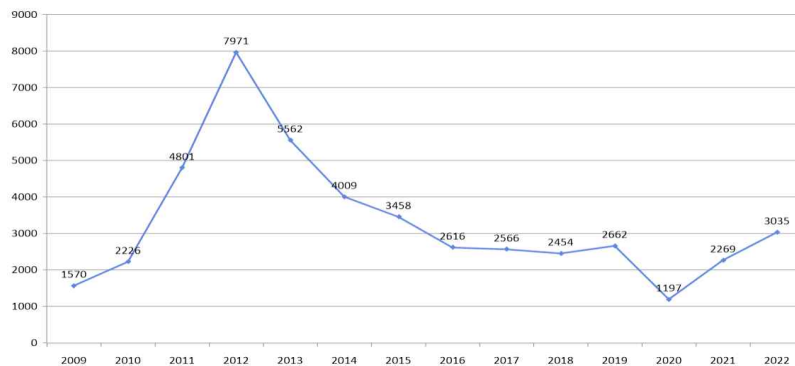
- 교권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교원의 교육할 권리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특히 교원의 교육권은 교원의 고유한 권리로 제시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교육권이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주어진 권리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현행 교육 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교육권은 교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다. 교권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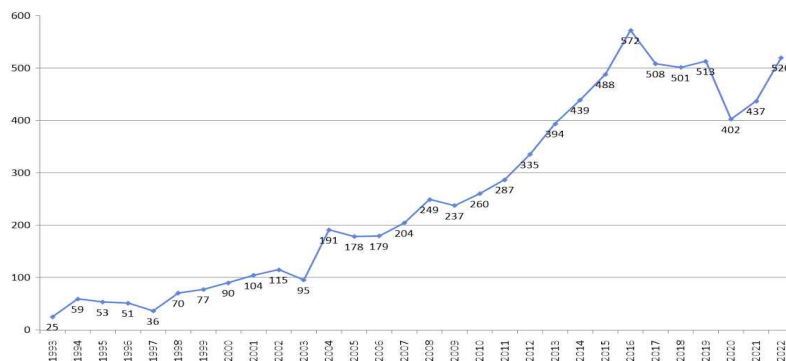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보도자료, 2023. 5. 22.)에 따르면, 2019년 침해 심의 건수는 2,662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1,197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
- 교육부 집계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자료(이웅, 2023. 8. 1.)를 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12년 7,971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2020년까지 지속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건

수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1]은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 교총 집계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이웅, 2023. 8. 1.)을 살펴보면, 교권 침해 건수는 1993년 25건에서 2016년 572건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202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건수를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음. 앞서 제시한 교육부의 교권 침해 현황과 유사한 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교권 침해 건수가 급감하였다가 2021년부터 해마다 급증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교권 침해 건수를 초과하였다는 것임. 다음 [그림 II-2]는 한국교총의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그림 II-1] 교육부의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2009~2022)



[그림 II-2] 한국교총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1993~2022)

-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1,862건, 고등학교 845건, 초등학교 287건, 특수학교 32건, 유치원 5건으로 중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전체 3,035건 중 약 61.4%를 차지하고 있었음.
- 또한, 같은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전체 3,035건 중 약 93.3%인 2,833건으로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
-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020년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이 각각 9.9%, 9.8%에서 2021년, 2022년 각각 11.0%, 12.2%로 증가하였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상해·폭행도 2019~2021년 3.5~4.7%에서 2022년 6.9%로 증가하였음.
- 2019~2022년 모두 모욕·명예훼손이 침해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유형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다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다음 <표 II-2>는 교육부 보도자료(2023. 5. 22.)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최근 4년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 통계자료임.

<표 II-2> 교육활동 침해 현황(2019~2022)

연도별 침해 현황(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침해 심의 건수		2,662			1,197			2,269			3,035				
2019~2021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단위: 건)															
학 년 도	초			중			고			기타			합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2019	185	102	287	1,394	77	1,471	856	48	904	-	-	-	2,435	227	2,662
2020	50	44	94	488	36	524	543	36	579	-	-	-	1,081	116	1,197
2021	149	67	216	1,158	64	1,222	767	36	803	24	4	28	2,098	171	2,269

2022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단위: 건)																		
학 년 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학생	학부 모 등	계
2022	0	5	5	202	85	287	1,791	71	1,862	807	38	845	29	3	32	2,833	202	3,035

※ 2021학년도부터 기타(특수학교 포함) 추가,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추가

침해 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단위: 건)												
학년도	침해 대상	상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 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기타	합계
2019	학생	240 (9.9%)	1,345 (55.2%)	205 (8.4%)	126 (5.2%)	82 (3.4%)	14 (0.6%)	24 (1.0%)	28 (1.1%)	238 (9.8%)	133 (5.5%)	2,435 (100%)
	학부모 등	8 (3.5%)	112 (49.3%)	1 (0.4%)	16 (7.0%)	21 (9.3%)	1 (0.4%)	0 (0.0%)	6 (2.6%)	42 (18.5%)	20 (8.8%)	227 (100%)
2020	학생	106 (9.8%)	662 (57.5%)	107 (9.9%)	69 (6.4%)	38 (3.5%)	12 (1.1%)	30 (2.8%)	23 (2.1%)	34 (3.1%)	40 (3.7%)	1,081 (100%)
	학부모 등	7 (6.0%)	46 (39.7%)	3 (2.6%)	6 (5.2%)	10 (8.6%)	0 (0.0%)	1 (0.9%)	4 (3.4%)	33 (28.4%)	6 (5.2%)	116 (100%)
2021	학생	231 (11.0%)	1,203 (57.3%)	200 (9.5%)	80 (3.8%)	60 (2.9%)	19 (0.9%)	65 (3.1%)	67 (3.2%)	93 (4.4%)	80 (3.8%)	2,098 (100%)
	학부모 등	8 (4.7%)	68 (39.8%)	7 (4.1%)	15 (8.8%)	19 (11.1%)	3 (1.8%)	1 (0.6%)	3 (1.8%)	29 (17.0%)	18 (10.5%)	171 (100%)
2022 (1학기)	학생	167 (11.3%)	835 (56.6%)	123 (8.3%)	69 (4.7%)	70 (4.7%)	11 (0.7%)	41 (2.8%)	35 (2.4%)	58 (3.9%)	66 (4.5%)	1,475 (100%)
	학부모 등	10 (8.3%)	42 (34.7%)	2 (1.7%)	16 (13.2%)	12 (9.9%)	0 (0.0%)	1 (0.8%)	3 (2.5%)	28 (23.1%)	7 (5.8%)	121 (10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5.22.) p.5

○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원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교육부, 2023).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체 이용 건수는 2020년 19,310건에서 2021년 33,704건으로 1년 만에 70% 이상 증가하였고, 2022년 이용 건수도 1학기에만 36,367건으로 집계돼 한 학기 만에 2021년 1년간의 이용 건수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3년 8월 발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

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25~26일 만 하루 동안 교총에서 접수한 교권 침해 건수는 11,628건이었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8,344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3,284건)의 2.5배 이상이었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유형 중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이 6,720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음. 다음 <표 II-3>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 침해유형 및 실태 통계자료임.

<표 II-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접수 교권 침해유형 및 실태

구분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	업무방해/수업 방해	폭언·욕설	폭행	성폭력 (성희롱·성추행)	전체
학부모	6,720	173	1,346	97	8	8,344
학생	-	1,558	958	636	132	3,284
합계	6,720 (57.8%)	1,732 (14.9%)	2,304 (19.8%)	733 (6.3%)	140 (1.2%)	11,629 (100%)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3)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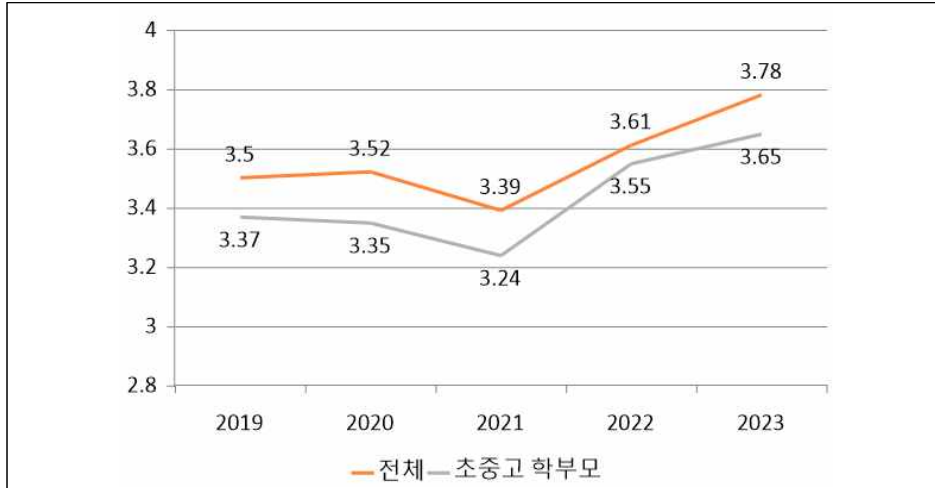
-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2년까지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이하 학교급은 중학교 이상 학교급과 비교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교 이상 학교급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율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유형은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유형은 업무방해 및 수업 방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권 침해행위자에 따라 차이를 보임.

라. 교권과 관련된 학교 교육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곧 학교 현장의 교권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교육 관련 조사인 KEDI 교육 여론조사 자료(2012~2023년)를 통해 종단적인 관점에서 교권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흐름을 살펴보았음.
- KEDI 교육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에서 이슈가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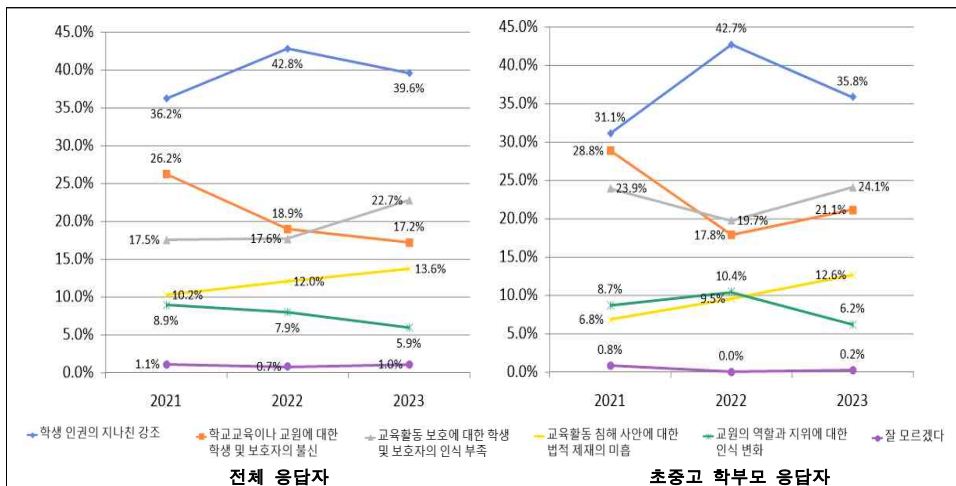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의견을 알아보는 교육 분야 여론조사임. 1999년 이래로 현재까지 매년 조사·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함(권순형 외, 2023).

- KEDI 교육 설문조사는 2023년 조사 기준으로 총 9개의 영역(교육정책,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대학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의 55문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권순형 외, 2023), 이 연구에서는 교권과 관련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학생의 인성 수준’,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살펴봄. 문항에 따라 일부 해의 자료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현황을 제시함.
- 한편 문항에 따라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한 자료가 있었음.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우선, 교권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1=전혀 심각하지 않다, 2=심각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심각하다, 5=매우 심각하다)’는 2019~2023년 모든 해에서 평균 3점 이상이었음. 전체 응답자의 점수가 2021년 3.39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급격하게 상승하여 2023년에는 3.78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함(권순형 외, 2023; 임소현 외, 2019).
-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점수도 2021년 3.24점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2023년 3.6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체와 비슷하게 변화하였음. 사회 전반적으로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지나오면서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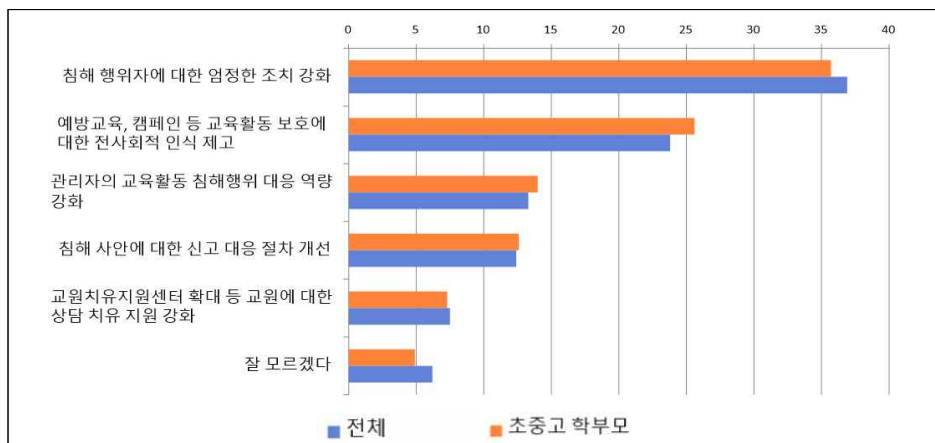
[그림 II-3] 학생 및 학생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2019~2023), KEDI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로 2021~2023년 모두에서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 모두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음(권순형 외, 2023). 다음의 [그림 II-4]는 2021~2023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를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래프임.



[그림 II-4]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 이유(2021~2023), KEDI

-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문하였음. 전체 응답자와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응답 순위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침해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 제고’가 응답 비율 1, 2위를 차지하였음(임소현 외, 2021).



[그림 II-5] 2021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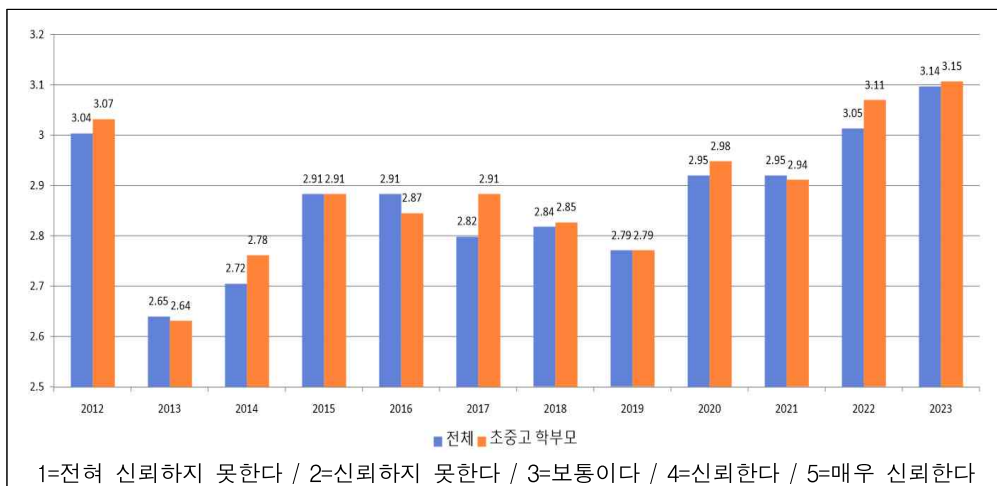
- 교권 침해가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1=전혀 못하고 있다, 2=못하고 있다, 3=보통이다, 4=잘하고 있다, 5=매우 잘하고 있다)’를 살펴봄. 전체 응답자와 학부모 집단 모두에서 최근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학교급에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응답자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추락했음을 알 수 있음(권순형 외, 2023; 임소현 외, 2017; 임소현 외, 2019; 임소현 외, 2021).
- 비록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교권에 대한 도전 현상을 강화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그림 II-6]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2016~2023), 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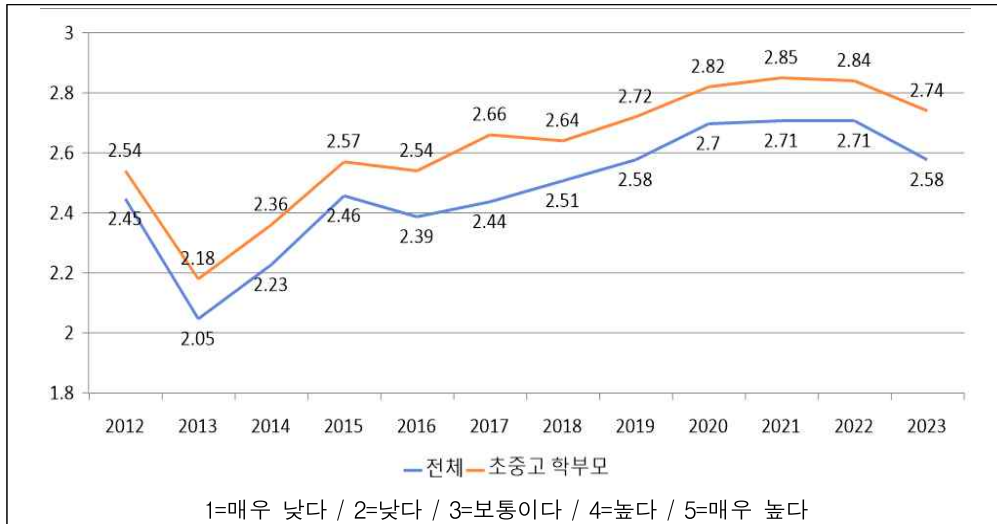
- 다음은 교권은 곧 교사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1=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신뢰하지 못한다, 3=보통이다, 4=신뢰한다, 5=매우 신뢰한다)’를 살펴봄. 2012년에는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으나, 2013년 2점 중반까지 급락함. 2022년 3점 이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최고 점수를 기록함(권순형 외, 2023). 특히, 2022~2023년에 초·중고 학부모 응답자의 신뢰 정도 점수는 전체 응답자 신뢰 정도 점수보다 높음.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들어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는 것이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음.



[그림 II-7] 학교 전반에 대한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2012~2023), K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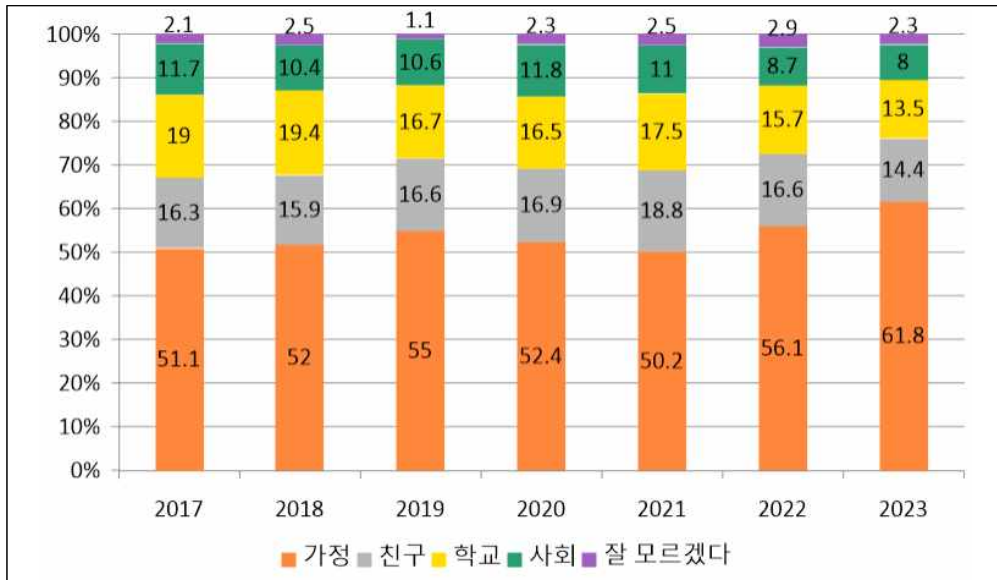
- 가장 빈번한 교권 침해자 중 하나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인성 수준(1=매우 낮다, 2=낮다, 3=보통이다, 4=높다, 5=매우 높다)’을 살펴봄. 모든 연도에서 3점(보통이다) 미만으로 나타남. 2013년 최저점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하다가 2023년 급격하게 하락함. 모든 연도에서 초·중·고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학생의 인성 수준을 높게 평가함(권순형 외, 2023; 이강주 외, 2013; 임소현 외, 2015; 임소현 외, 2017; 임소현 외, 2019; 임소현 외, 2021).
- 2022년까지 학생의 인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긴 하였지만, 가장 좋을 때도 3점(보통이다) 미만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불거진 2023년에 학생의 인성 수준 점수가 급락하였으므로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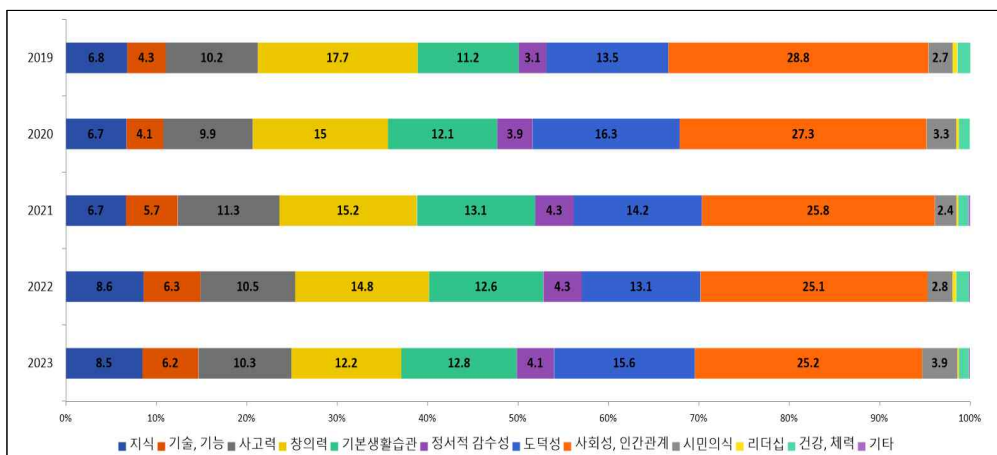
[그림 II-8] 학생의 인성 수준(2012~2023), KEDI

-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 중 ‘가정 요인’은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친구, 학교, 사회 요인’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가정 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남. 2023년에는 가정 요인이 61.8%로 모든 연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요인은 모두 최저치를 기록함(권순형, 2023).
- 국민 여론은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으로 학교, 친구, 사회보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인성교육 방향도 어느 정도는 가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다음의 [그림 II-9]는 2017~2023년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을 비율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모든 해에 사회성, 인간관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23년으로 올수록 창의력 응답 비율은 낮아지고, 도덕성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권순형, 2023). 2023년을 기준으로 사회성, 인간관계가 1위, 도덕성이 2위, 기본 생활 습관이 3위를 차지해, 사회가 학교에서 길러주기를 기대하는 사항은 지식, 기술, 기능, 사고력, 창의력 등 지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사회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의 [그림 II-10]는 2019~2023년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을 비율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그림 II-9] 학생이 좋은 인성을 갖도록 하는 영향 요인(2017~2023), KEDI



[그림 II-10] 학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길러주기를 바라는 사항(2019~2023), KEDI

마. 시사점

- 현행법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법령에서 교권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육 방법 결정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등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교원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기 어려움.
 - 교권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교육활동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여 교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해야 함. 교원의 권위와 법적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교권은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연구자들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됨. 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법적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모두 포함함. 최근 교권 침해 이슈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뿐만 아니라 퇴근 후의 삶이나 교사의 복장, 언행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교권의 학술적 개념을 종합하여 교원의 법적 권리와 권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교사의 권리를 더 넓게 해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최근 교권 침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두드러짐. 교권 침해유형으로는 학생의 상해·폭행, 모욕·명예훼손, 학부모의 아동학대 등 악성 민원이 주요한 비율을 차지함.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 및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 교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함.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교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권 침해 예

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의 인성 수준은 낮게 평가됨. 학생의 인성 형성에 있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됨.
-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함.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도덕성과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함.

2.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 분석

-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을 큰 틀에서 보면 교권의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된 것을 포괄하는 교원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이런 의미에서 교권 보호정책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교사자격규정 공포(1948년)과 교육공무원법 제정(1953년) 및 교원종합대책안 마련(1989년) 등이 포함될 수 있음(전제상, 2024).
- 하지만 본격적으로 교권 및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라 할 수 있음(전제상, 2024). 또한 법적으로는 2016년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교원지위향상법이 개정됨으로써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됨.
- 특히, 2023년은 교권 및 교육활동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해임. 2023년에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입법으로 이어짐. 이전 해인 2022년 12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

안’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교권 보호 대책이 전면적으로 보강되었음.

- 과거 2012년에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된 바 있고, 그 이전 해인 2011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였음.

가. 2011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 2011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추진 배경으로는 당시 학생들 사이의 심각한 욕설 문화, 졸업식 뒤풀이 문화, 교사의 지도 불응, 교사 폭행 및 성희롱 등의 사안 증가가 있었음.
- 특히 문제행동 및 위기 학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지도 방법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함. 예컨대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문제행동 학생과 위기 학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는 지원 중심의 생활지도와 같은 방법을 추구함.
- 체벌 금지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등 교실 붕괴가 일어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밝힘.
- 직접적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문화를 바꿔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문제행동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학생 측면에서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한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 상·벌점제 운영, 학생 의견수렴 체제 구축 및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단위 학교의 학칙 제정권 및 체벌 대체 지도 자율권 확대, 간접적 체벌의 허용(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교육적 훈육),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도입 및 상담·선도 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 상담제’ 도입, 학년 초 문제행동 성향 진단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함.
- 교원과 학부모 측면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교원 연수 강화, 인성 및 기본 생

활 예절 교육 강화, 학생 언어 순화 교육 강화, 정보 통신 윤리교육 강화,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추진 방향을 설정함.

- 2011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교권 보호나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음.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교권 침해 문제(교사의 지도 불응, 교사 폭행, 교사 성희롱 등)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그 해결 방법으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자치 활성화,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 지도(단위 학교의 재량권) 확대,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학생 체벌 금지의 결과로 문제행동 학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으로 간접적인 체벌(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의 허용, 출석정지 도입 등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임.

나. 2012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

- 2012년 8월 29일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교권 추락 예방에 정부가 나설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①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② 피해 교원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③ 교권 침해 은폐 처벌, ④ 시도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실제로 상당 부분이 법 개정으로 정책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법명에 ‘교권’이 아니라 ‘교육활동’이라고 수정되어 개정되었음. 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가중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및 교권 보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상담·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교권 침해 억제력 강화 및 발생 개연성 사전 차단
교권 침해 피해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 위주의 교육적 지도 - 교권 침해 수준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등 실시 ○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도입 ○ 교권 침해 시 ‘가중 처벌’	피해교원 상담·치료 지원 ○ 피해 교원에 대한 우선적 보호 강화 - 수업 등에서 일시적 제외, 우선 전보 ○ 피해교원 ‘(先)상담·치료 → (後)처리시스템’ 마련 ○ 교육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 등 지원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 교권 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학교장 및 교육감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의 교권 침해예방 역량 강화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육 정례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 문화 정착 유도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 교권 침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시도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등 ○ 교육청 차원 교권 보호 계획 수립·추진 ○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교권 보호 법적 기반 마련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	

[그림 II-11]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 2022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교육부는 2022년 12월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함. 추진 배경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 발생하여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지도 불응과 수업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 학생의 인권·학습권과 교사의 권리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었음.
- 교육부는 통계자료와 국민 여론조사, 한국교총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반영하고,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학생·학부모, 교원 단체·노조 교권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과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음.
- 첫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으로 ‘고시’에 추가하였음.
- 둘째,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하였음. 또한, 시도교육청의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개선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하며,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 보호 위원회를 적극 개최하도록 명시하였음. 단,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셋째, 침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적 조치 강화와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조치 거부 시 추가 징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제시함.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치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음.
- 그밖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에 교권 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교육활동 보호 정부-민간 협의체 구성 및 교육공동체 협약 체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홍보, 학부모-시민단체와의 협업 등을 방안으로 제시함.

라. 2023년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 2022년부터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2022년 12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게 되었지만, 2023년 서이초 교사 등 다수의 교사 자살 사건이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음. 이에 따라 그해 8월 10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8월 14일에는 교육부와 국회 이태규 의원 공동주최로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음.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실제로 2023년 9월 1일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고, 2023년 12월에 김성기 외(2023)가 연구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토대로 조례 예시 안이 발표되었음.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며,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와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음. 이에 따라 그 이후에 실제로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으며,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게 되었음. 또한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지역교권 보호위원회)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다만,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임.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모든 민원은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음. 다만, 이러한 대책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8월 17일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 인권 오·남용 예방,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임.

마. 시사점

- 정부가 추진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체벌 금지 이후 증가한 교사의 지도 불응 및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조했음. 이는 체벌 대신 교육적 훈육과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여줌.
- 2012년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음.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과 가중처벌,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 지원 등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2022년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며, 교권 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2023년에는 교사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계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음.

- 종합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교육계, 학부모, 학생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3.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은「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023년에 시행된「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의 근거에 의해 시·도교육청마다 특색있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김태욱 외(2018)의 연구에서 각 시·도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분석하기 위해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이라는 3가지 분석 요소가 담긴 분석 틀을 바탕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분석하였음.
- 다만,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3가지 분석 요소 안에서 정책과 과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3가지 분석 요소 중 일부(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를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했으며, 일부 시·도는 독창적인 정책과 과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수행하고 있었기에 분석 요소 명칭을 다소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음.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들을 활용했으며, 2024년 계획이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2024년 계획을 참고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023년 계획을 참고하였음.

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²⁾

1)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이나 교육활동 전념 문화를 만드는 등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원 치유·지원 내실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II-4>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 교육활동 침해 대응 능력 강화 지원 -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워크숍 실시 ○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 학교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대상 연수 ○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 보호 문화 생활화 - 교원의 사생활 침해 요소 최소화 방안 마련 ○ 연수 및 홍보자료 개발·보급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원 치유·지원 내실화] ○ 피해교원의 치유·지원 강화 - 서울시 내 전문상담기관 103개소 지정(상담심리전문가 184명 위촉) ○ 교원 마음방역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맞춤형(찾아가는)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 마음 돌봄 집단 상담 및 의사소통 교육 실시 ○ 학교 단위 치유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 「교원안심공제」서비스의 내실화 및 지원 확대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 맞춤형 컨설팅·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 교원 소송비용 지원(민·형사 소송 심급별 550만원) - 검경찰 조사시 변호인 선임료 지원(200만원 이내)

2) 이 부분은 유형철 박사(인천 청호초)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

정책	세부 내용
	- 피해교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지원) ○ 「교권 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운영 -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Wee센터 연계) -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SEM119)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운영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 교육활동 보호 사업 운영 적극 권장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내실화 ○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지정·운영

출처: 2023학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2) 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프로그램 등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회복 지원 내실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제 강화’를 제시하였음.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기구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직위해제 대상 교원 처분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타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표 II-5> 인천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문화 조성] ○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교원 존중 프로젝트, 사제동행 동아리) ○ 교육활동보호 정책 협의체(상·하반기 1회 이상) 운영 ○ 교육활동보호 소통 간담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교육활동보호 홍보 자료 제작 배부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침해 예방·치유·회복 지원 내실화] ○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교육3주체 대상) 운영

정책	세부 내용
	○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운영 ○ 교육활동보호 교육자료 개발·보급 ○ 다채움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공동체 교원온شم표 공모사업(105팀 선정) 운영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 법률지원단 변호사 위촉(33명) -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수사기관 조사·수사 시 동행 지원 ○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집단 및 온라인) 및 치료 지원 - 치유지원 협약 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1인당 200만원 이내) ○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 운영 - 법률 자문,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원스톱 통합 지원 신청 구현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 대응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변호사 동행, 치유비용 1인당 100만원 지원) -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운영(교육전문가 5명, 의료지원단 4명, 법률지원단 33명) ○ 교권 침해 관련 특이(악성) 민원 사안 대응 -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민원기동대)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제 강화] ○ 시교육청교권 보호위원회 운영(10명~20명)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사고당 최대 2억원, 민·형사 심급별 최대 660만원 지원) -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지원) ○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50명 내외) 운영 ○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출처: 인천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3)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문화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다소 다르게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전략 및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표 II-6>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지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분리지도와 분리교육 연계 방안 제시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의 연계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 신규(저경력) 교사 역량 강화 ○ 유치원·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지원 ○ 학부모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책무성 교육 강화 ○ 교육활동 보호 홍보 강화 및 현장 모니터링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 ○ 경기교권 보호지원센터 및 교원보호공제 확대 운영 - 경기교권 보호지원센터 총 13개 센터 확대 운영 - 교원보호공제 사업 보장 내역 확대로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 보상 - 분쟁 조정 서비스 지원 - 민사·형사 소송 제반비용(사건당 최고 7천만원) - 악성민원 대응 경호 서비스 지원 ○ 교권 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 강화 - 신속한 법률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센터 교권전담변호사, 고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보호 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민원대응 시스템 운영 및 출입관리 강화 - 교원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운영 및 민원 면담실 조성(1교당 600만원) -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운영으로 외부인 학교 무단출입 방지 ○ 순직 지원 업무(순직유족급여) 담당자 지정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안내 - 초·중등(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 개정과 관련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안내 ○ 조례 제정 및 개정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안내 -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칭)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출처: 경기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4)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강화 방안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반 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및 심리 건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운영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인천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단위 학교 책무성 부여를 과제의 한 파트로 다루고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2024 교육활동 보호 계획」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피신고자 보호 조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음.

<표 II-7> 강원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기반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 교육활동 보호 연수 및 교육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온라인 시스템) 실시 ○ 교육활동보호 학교지원단(전문가 집단으로 교감, 교사, 장학사로 구성) ○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가입 지원 -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 녹음기 보급 ○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상금 청구(1인당 치료비 2백만원 이상인 경우)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및 심리건강 지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민사 2억, 형사 2천만원, 연간 총 10억 한도)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 나은 법률지원(법률상담 및 경찰 조사

정책	세부 내용
	입회) 서비스(도교육청 비용 부담) 제공 - 위촉 변호사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보호 방안 마련 ○ 교육활동 관련 민원 지원 체계 구축 ○ 교원 온라인 맞춤형 심리검사 실시 ○ 교원 심층치유 심리상담 실시 ○ 교원 집단 자기돌봄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1인 최대 2백만원) [교육활동 보호 운영 체계 구축] ○ 교육활동보호 전담 조직(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 운영 ○ 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보호센터(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 상담 및 지원) 운영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원과 학부모)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단위학교 책무성 부여)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과제] ○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계획 및 예산 수립 안내 ○ 단위학교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안내

출처: 강원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5)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와 교육 등이 주로 담겨 있는 ‘교육활동 보호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원 치유·회복 지원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 조직 및 지원 체계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II-8> 세종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 역량 강화 및 지원] ○ 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정책	세부 내용
교권 보호 역량 강화	○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 ○ 교육활동 보호 원격연수(2학점, 30시간) ○ 교원 안심번호제 지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민사 2억, 형사 5천만원)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원 치유·회복 지원 문화 조성] ○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원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마음 회복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전문의료기관 연계 심리 치료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지원) ○ 온라인 심리검사(희망교원 550명) 및 해석상담의 날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관 조직 및 지원 체계 강화]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도교권 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 보호 위원회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처리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사안 발생 시 학교 및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 다각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교원안심콜) 운영 - 학교와 교원에 대한 법률, 행정, 심리 등 종합적 지원 ○ 교육활동 침해 및 분쟁 관련 법률 지원단(7명 이내) 운영 ○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교변호사(23년 기준 10명) 제도 운영 - 동행서비스 제공으로 변호사 수임료 지급(최대 300만원)

출처: 세종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6)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동아리 운영 및 캠페인 등의 방안이 담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교육활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특히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 에듀 힐링센터(대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메타버스나 AI 등의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임.

<표 II-9> 대전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307교, 1교당 2백만원 지원) ○ 교육활동보호 홍보 및 제자사랑·스승존경 캠페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 행정, 법률 자문, 심리 상담(10회기) 지원 ○ 교원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몽클) 운영 ○ 보호조치 비용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 ○ 특별교육(HOPE) 운영 -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특별교육 운영 ○ 교육활동보호 지원 대상 확대(교원 외 강사 까지 확대) 운영 ○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민사 2억, 형사 5천만원, 연간 총 12억)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 대전광역시 교권 보호위원회(분쟁조정 전담팀 포함) 운영 ○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 - 전문상담교사, 교원, 퇴직교원, 퇴직 경찰 등 총 21명 내외 및 교육청 업무담당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전담변호사 1명, 위촉변호사 17명) ○ 에듀힐링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메타버스 심리상담 및 AI 힐링 앱 등 운영 ○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교당 2백만원 지원) ○ 학교녹음전화기 설치·운영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 연수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교육용 자료 개발·보급

출처: 대전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7)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II-10>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단위학교 책무성 부여)	[교육활동 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운영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충청북도교권 보호위원회 운영(위원 9명) ○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보호지원센터 운영(변호사, 상담사 등 5명)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 ○ 교원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지원단(컨설팅, 연수, 법률 지원) 운영 - 찾아가는 컨설팅지원단 운영(전문장학사, 변호사, 상담교사 등) - 찾아가는 연수지원(권역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 후 지원) - 법률지원단 운영(장학사, 변호사, 교수 등 8명 구성) ○ 맞춤형 치유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병원 연계 지원) ○ 교육활동보호 직무(원격) 연수 운영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배상책임 사고당 최고 2억원)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출처: 충청북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 갈등 해결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피해 교원 지원 강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특히, 2024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서는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여러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경호 서비스 등) 내용이 담겨 있었음.

<표 II-11> 충청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문화 조성(교내 교육활동 캠페인 전개) ○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보급 ○ 교육활동 보호 연수 확대(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다양하게 연수)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 공모 및 운영 ○ 교원 갈등해결 역량 지원 - 교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주체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교육활동 보호 사례동행 프로그램(120개 프로그램 공모) 실시 ○ 유공교원 및 학교 표창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피해교원 지원 강화] ○ 심리상담 비용 지원(상담횟수 10회기, 1인당 100만원 이내) ○ 병(의)원 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 교육법률지원단 운영(법률 상담 및 법률 분쟁 조정) ○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및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 강화 ○ 원격 심리검사(온라인심리검사) 지원 ○ 마음튼튼 교원안심공제 -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1사고 당 최대 2억) - 1사고 당 민·형사 사건 합산 최대 3,000만원 지원 - 교육활동 손해 (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원) - 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원) - 교원 긴급 경호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경호) ○ 교원치유지원캠프 운영(10회, 100명) ○ 공정한 사안처리 절차 준수에 대한 안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 ○ 충청남도교권 보호위원회 운영(10명 이상의 위원) ○ 학교(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내 ○ 교권 보호센터 내실화 - 사안처리 지원, 법률 지원, 상담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대표전화 운영 ○ 교육활동 사안처리지원단 운영(교감, 교사 등으로 5~10명 구성) ○ 교원 안심번호 사용료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운영 예산 지원(학교 규모별 50~250만원 지원) ○ 변호사 동행서비스 -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조사 등을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 ○ 민원대응시스템 강화 - 교원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민원대응팀)

출처: 충청남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9) 광주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광주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원 심리·정서 안정 및 치유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음.

<표 II-12>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강화]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응답하라, 교권 보호’ 제작·배부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현황 실태 조사 실시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원 심리·정서 안정 및 치유 지원] ○ 교원의 심리·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직무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원 치유크amp 및 힐링동아리(30팀)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민사 2억, 형사 5천만원) ○ 외부 전문상담위원(기관) 및 협력 병원 연계 상담 및 치유 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신속대응 현장지원팀 「교권부르미」운영 - 교권전담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이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상담 전화 및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 교원 법률 상담의 날 운영 ○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운영 ○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단위학교 책무성 부여)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과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반 계획 수립 안내

출처: 광주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0)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피해 교원 보호 및 치유’,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제시하였음. 전라북도교육청의 2024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여러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경호 서비스 등) 내용이 담겨 있었음.

<표 II-13> 전라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 함께 만드는 학교, 교실, 교육공동체 - 교육주체 동아리 문화 행사 및 프로젝트 운영 지원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피해교원 보호 및 치유] ○ 진단, 상담, 치료 중심의 교원치유지원 시스템 구축 - 개인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1인당 최대 120만원) ○ 교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법률지원 및 교원배상책임 보장 확대 - 교육활동배상책임, (민·형사)소송비용 지원,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연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경호서비스), 분쟁조정서비스 [교육활동 침해 대응]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 보호 조직 구축 - ‘중대 교권 침해 지원단’, ‘특이민원 대응팀(악성민원 대응)’ 구성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단위학교 책무성 부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운영 및 원격연수 운영 -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매뉴얼) 및 리플릿 보급 ○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기반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안내 ○ 민원상담 환경 조성 및 지원 - 교육상담실 구비 운영(유·초·중·고·특 100개교 지원) -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신청’ 운영

출처: 전라북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 조치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II-14> 전라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홍보·캠페인 및 예방을 위한 연수 실시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유 및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 협의회 운영 ○ 교권 보호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 지원, 복귀 및 사후 지원 역할 수행 ○ 전라남도교권 보호위원회 구성·운영(9명으로 구성) ○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안내 ○ 교육활동 보호 교원 안전망 구축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보급, 강사 인력풀 구축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대응조치 강화]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1인당 1백만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지원 강화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출처: 전라남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2) 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정책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단위 학교 교권 보호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II-15> 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인프라 등 조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 ◦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 민원 대응팀 운영 - 교원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 확대 운영 - 법률상 손해 배상금(민사 2억원, 형사 5천만원) ◦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 지원 ◦ 교육활동보호 대책 적극 홍보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 ◦ 교육청 단위 교직원힐링프로그램 확대 운영 ◦ 피해교원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1인당 100만원) ◦ 피해교원 상담 확대(외부 기관 위탁, 5~10회기 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센터 확대 운영(사안처리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 ◦ 원스톱(법률·상담·행정) 지원 서비스 ◦ 분쟁조정 지원단 운영(악성민원 발생 시 학교 지원) ◦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 지원(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
단위학교 교권 보호 강화 및 지원 정책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 안내 ◦ 정서위기학생을 위한 정서지원 강사 지원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공문서 감축

출처: 제주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3) 대구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권 존중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 고도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조례 개정을 과제로 내세웠음.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타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방지하고자 과제를 수립하였음.

<표 II-16> 대구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 공식적인 소통 채널 확대 ○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 활성화 ○ 교권 존중 사회적 문화 조성(‘모두의 학교’ 캠페인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확립을 위한 학생생활 지침 마련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진행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 -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하고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등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처분 전문가 검토 ○ 단위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 학부모 민원 침해유형을 명문화하고 제재 조치를 안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 고도화] ○ 대구교육권보호센터 기능 강화 - 침해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 교육활동보호 법률 지원 강화

정책	세부 내용
	-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1인당 1백만원) - 교원배상책임보험(민사 1사고당 2억, 형사 1사고당 5천만원) - o 교원 보호 체제 정비 및 강화 - o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 안심번호 서비스 및 학교누리집 기반 민원대응시스템 조성 - 교원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출처: 대구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4) 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단위 학교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 사업 추진 체제 및 조직’,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계획’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표 II-17> 부산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및 단위학교 지원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 o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지도에 대한 안내 - o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운영 계획 수립 등 안내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 사업 추진 체제 및 조직] - o 교육활동 보호 사업 추진 체제 구축 [교원힐링센터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계획] - o 치유 예방을 위한 개인·집단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 o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직무소진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위기관리 전문가 특강 운영 -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관리 등 몸·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 - o 스승 존중 문화풍토 조성 프로그램 -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100팀 공모, 팀당 70만원 활동비 지급) - 교육활동 보호 월간 웹진(홍보물) 발간 및 배포 - o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 위기교원 전담지원단 운영(퇴직 교원 4명) -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서비스 구축 - 교원배상책임보험(사고당 법률상 배상 최고 2억원, 연간 총 10억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예방을 위한 법률상담

정책	세부 내용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 계획]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기관 구축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 전문의료기관 치료 및 상담 지원(100만원 이내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행정 지원(특별휴가, 공무상병가) -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1인당 연간 100만원) - 교원법지원단 운영을 통한 법률상담료 지원(사안별 20만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1인 1회 20만원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지도 전문성 지원(교육자료 및 매뉴얼 보급)

출처: 부산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5) 울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권 보호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권 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예방·치유 중심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울산시교육청의 2024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여러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경호 서비스 등) 내용이 담겨 있었음. 특히 ‘교육활동 심의협의체’를 신설하여 직위해제 대상 교원 처분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타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표 II-18> 울산시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교권 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 교권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맞춤형 교원 치유 프로그램 연중 운영 ○ 학교단위 사제동행 및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치유 중심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정책	세부 내용
안전망 구축	○ 교육활동보호센터(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운영 ○ 교육활동 침해 교원 법률 상담 및 전문 상담 지원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10명 내외) 운영 ○ 병원 및 상담 기관 업무협약(27개)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안내 ○ 울산광역시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보호센터 누리집 운영 [교육활동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서비스, 배상책임, 민·형사소송 비용 지원,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연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제공 ○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지원 -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연 비용 지원(1사고당 200만원) ○ 교원 보호시스템(안심번호·투넘버, 통화연결음, 녹음시스템) 지원 ○ 교권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 현장에 즉시 투입 운영 ○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운영 -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처분 전문가 검토

출처: 울산시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6)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확대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 존중 문화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대처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특히 울산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직위해제 대상 교원 처분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타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처분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표 II-19>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정책	세부 내용
문화조성 및 교권 보호 역량 강화	○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문화 조성(교내 다양한 행사와의 연계 추진) ○ 교육활동보호 연수 확대 운영(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다각화 운영) ○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 캠프·동아리 운영 ○ 따뜻한 교육회복을 위한 교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50교 선정) ○ 교원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보호 주간」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상담 창구 다각화 운영) - 피해교원의 복귀 지원을 돕는 원스톱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 운영(10인~20인) ○ 교원안심공제(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사고당 최대 2억원, 연간 총 10억원) - 교원 소송비용 지원(각 소송 최대 660만원, 변호인 선임료 330만원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상해 치료비 지원(사고당 200만원 한도 지원) -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사고당 최대 20일 경호 지원) ○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대응팀 운영 - 교원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교육지원청 교원치유상담실 운영 ○ 교육활동 보호조치 비용 심사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처 강화] ○ 각급학교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수립·운영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10명 이상 50명 이하)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 -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행정 지원(특별휴가, 공무상병가) ○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운영 ○ 경상북도교육청 법률지원단(10명 이내) 운영 ○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서 제출 -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처분 전문가 검토 ○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 안내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17)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첫째,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정책으로 경남 행복 교권드림센터와의 연계 운영과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 문화조성 방안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둘째,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음. 셋째,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으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음.

<표 II-20> 경상남도교육청 교권 보호 정책

정책	세부 내용
교권 침해 예방 기반 조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청원, 진주) 운영 ○ 도교권 보호위원회 운영 및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내실화 ○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및 보호 문화조성 - 교원 참여토론회 실시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보급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 운영 ○ 수업방해 예방 「이음교실」 운영 - 수업방해 예방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이음교실」 선정 및 운영 ○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40명) 운영 ○ 피해교원의 치유·지원 강화 - 심리 상담 비용 및 치료비 등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체제 구축] ○ 본청 교권 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 교육지원청 교권 보호지원단 운영 ○ 교육활동 보호 심리법률 상담 지원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1인당 1백만원 이내) - 법률상담비 지원(1인당 1백만원 이내) ○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원안전지원시스템 지원(교원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등 제공)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역할 강화] ○ 각 기관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 교육활동보호 연수 및 예방교육 실시로 구성원 간 역량 강화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24)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나. 시사점

-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각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교원 치유 및 지원, 법률 지원, 민원 대응,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법률 지원 및 배상 책임 보장,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청들은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교육청들은 다양한 치유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교원이 받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의 확대와 내실화가 요구됨.
- 법률지원단 운영과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교육 기관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교육청들은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교권 보호가 단지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책임임을 시사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상호존중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교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각 학교가 교권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체계가 필요함.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

4. 관련 법령의 변화 분석³⁾

- 2023년에 서이초 교사 자살과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교권 침해가 사회문제화되었고,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 교육 관계 법령만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도 개정되었음.

가. 「교육기본법」의 교권 관련 조항 신설

- 2023년 9월 27일에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음.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음.

나.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 신설 등

- 기존 「유아교육법」에 생활지도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유아교육법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에서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결과를 기록하라는 것일 뿐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아님(김성기, 2023).
- 2023년에 교권 침해 사안이 심각하게 다루어지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아울러 「유아교육법」에도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3) 이 부분은 이덕란 박사(국회입법조사처)의 원고를 일부 포함하고 있음.

<표 II-21>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3.9.27.)

유아교육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u>소속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u>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u>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u>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유아 지도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밝히고 있음. 아울러 보호자는 교직원과 유아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다. 초·중등교육 관계 법령의 교권 관련 조항 신설 등

- 「초·중등교육법」에도 생활 기록에 관한 조항은 있었지만,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동학대로 보는지에 관한 조항은 없었으나 교권 침해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1) 생활지도 근거 마련 및 교권 존중 천명

- 2022년 12월 27일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지도와 징계를 구분하고, 학생은 교원과 타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음.

<표 II-22> 「초·중등교육법」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2.12.27.)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생략) <신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생활지도 분야 및 체벌 금지 명시

- 이에 따라 2023년 6월 27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생활지도의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음.

<표 II-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생활지도 관련 조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1호, 2023. 4. 11.,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 ⑦ (생략)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삭제>
제40조의3(삭제 <2013.2.15>) 삭제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제2항에서 정하도록 한 고시가 바로 2023년 9월 1일에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임.

- 이 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아울러 교육 3주체의 책무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이의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4) 아동학대 관련 조항 신설

- 2023년 9월 27일에는 다음과 같이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밝히고 있음. 아울러 보호자는 교직원과 유아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였음.

<표 II-24> 「초·중등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 개정(2023.9.27.)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신 설>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생 략)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신 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교원지위법상 교권 관련 조항 개정

1)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27일에 개정이 이루어졌음.
-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제14조와 제15조를 신설하여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제17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였음.
- 제18조를 개정하여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제19조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 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음.
- 제20조를 개정하여 학교의 장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하였음.
- 제22조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음.
- 제25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침해 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하였음.
- 제26조를 신설하고 제35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제27조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음.
- 제28조를 신설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음.
- 제29조를 개정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지원을 강화하였음.
- 제30조와 제34조 제2호를 신설하여 교권 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 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에서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다목에서 말하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것이 바로 2023년 3월 23일에 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임. 이미 2017년 4월 14일에 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를 개정한 것임.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정 당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 제6호만이 있었는데 여기에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된 것임.

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앞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처벌의 근거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조사 시에도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표 II-25> 아동학대처벌법의 교육활동 관련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단서 신설> 4. ~ 11.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제11조의2(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입법 동향

- 2023.9.27.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에 교권 관련된 의원입법 추진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2024.2.1.)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안 제10조의4)” 목적으로 발의됨.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1.16.)은 “관할청(국립은 교육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안 제29조제1항)” 목적으로 발의됨.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임.

-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1항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대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현행(2024.3.28.)	개정안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 ----- ----- -----<u>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인력</u>----- ----- -----. ② (현행과 같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023.11.17.)은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됨.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임.

-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그리고 제2항은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학교장이 위의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이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기관이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방안임. 다만, 신고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학교장이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통보했던 신고 기관이 확인하기 쉽지 않음. 또한 신고받은 기관이 학교장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학교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학교장의 의무 불이행 시 징계 또는 처벌 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2024.3.28.)	개정안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 ② (생략) <신설>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는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관할청과 고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생 략)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 ⑥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 -----제7항----- ----- -----.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0조제4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2023.11.10.)은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안

제28조제5항 신설)” 목적으로 발의됨.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임.

- 2024년 3월 28일 시행예정인 교원지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도록” 규정함.
- 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를 학교장 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2024.3.28.)	개정안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④ (생략) <신설>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0인, 2023.11.08.)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목적으로 발의됨.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 방안임.
- 현행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1항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 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대해 각호로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스토킹범죄’도 해당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임.
- 2024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제2항이 정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됨. 이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는 물론이고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함.
- 2024년 3월 28일 시행예정인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정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규정되었으며, 각 목에는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민원이나 학교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명분으로 교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됨.
-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스토킹범죄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행 예정인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라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가 가능함. 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스토킹범죄’도 해당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와 심각성, 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관할청(이하 이 조에서 “관할청”이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법률 상담 등을-----.
<신설>	② 관할청은 해당 교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의 선임 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한 소송대리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 ----- ----- -----

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⑥ (생략)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범죄 행위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교원지위법 외에도 제21대 국회에는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와 관련된 5건의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⁴⁾

- 서동용의원안(2023.7.27.)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 제22조제8항 신설)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정춘숙의원안(2023.8.11.)은 “교육감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안 제22조의6 신설)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서동용의원안(2023.7.27.)에 대해서는 “소속과 성격이 다른 전담공무원 간 협조 과정에서 현장조사·상담, 사례판단 등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도 있으므로, 협조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 진행 절차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검토의견⁵⁾이 제시됨

4) 이덕난,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11.2., pp.27-28.; 이덕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교육법학연구』, 35(3), 2023., pp.27-54.

5)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341호) 등 18건」, 2023.9., p.108.

- 정춘숙의원안(2023.8.11.)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장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계획, 아동학대의 신고·조사·판단까지의 절차 및 대응 주체가 이원화되는데, 학대 판단 기준의 일관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교육현장의 의견과 함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겠으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 교육 현장의 특성이 조사 과정 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는 검토의견⁶⁾이 제시됨.
- 그리고 강기윤의원안(2023.9.7.)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가운데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안 제17조제5호)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고영인의원안(2023.9.12.)은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방임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안 제3조제7호 단서 및 제17조 단서 신설)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송석준의원안(2023.9.18.)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 지도로서 교원이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안 제17조제5호 단서 신설)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난 9월 27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강기윤의원안(2023.9.7.)과 고영인의원안(2023.9.12.), 송석준의원안(2023.9.18.)에서 제안한 사항을 「아동복지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윤주경의원안(2024.2.7.)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제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안 제17조제5호)”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6)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의 글, 2023.9., p.116.

사. 교권 관련 자치법규 분석

- 17개 시도에서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경북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와 같이 교원과 학생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내용의 통합적 조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나 교원지위법 제21조에서 위임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교육 규칙, 교원지위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

<표 II-26> 교권 또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지역	자치법규	제정일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14.6.2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4.6.20.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0.10.8.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2.31.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0.6.4.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2.9.27.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3.10.3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2013.6.1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2023.9.25.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	2020.2.27.
광주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2.1.9.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20.6.5.
대구	대구광역시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3.6.10.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2.12.30.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2.28.
대전	대전광역시 교권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2016.3.1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3.12.29.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2.2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2.3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3.10.1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교육활동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2015.4.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2023.1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2012.9.27.

지역	자치법규	제정일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0.21.
울산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6.7.28.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2.26.
인천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현장 운영 조례	2011.10.1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3.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3.2.
전남	전라남도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4.8.1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2023.4.2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1.12.3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3.11.2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2020.11.12.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2.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권 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2014.10.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1.1.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0.7.22.
충남	충청남도교권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011.2.2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12.7.20.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1.1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0.18.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23.11.3.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10.18.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는 상태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권 보호위원회 관련 규칙은 개정될 예정임.
- 교권의 개념이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규에서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II-27> 자치법규에서 정의한 교권 개념

자치법규	교권 개념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및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인천광역시 교권 확립현장 운영 조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 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 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 생활지도권, 학생 징계 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
전북 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權利)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과 권리

- 대부분의 조례에서 교권을 헌법과 법률(국제법 포함)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부터 교육권, 교원지위법상의 교육활동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장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인천광역시 교권 확립 현장 운영 조례」로서 여기서는 위와 같은 수업권과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 생활지도권, 학생 징계 요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교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행정업무의 경감)에서 “①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출결 서류 등 종이 문서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교원의 직무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자칫 직무 배분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아. 시사점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짐. 이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22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생활지도와 징계를 구분하고, 학생이 교원과 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2023년 개정에서는 생활지도 방법과 체벌 금지를 명시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도모함.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에서도 교권 관련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음.
- 2023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었음. 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을 안정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교권 보호와 아동학대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반영됨.

- 각 지역 자치법규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단위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종합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맞추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결론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변화는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정부, 교육계, 학부모, 학생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5. 선행연구 분석

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권 문제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요구

1) 교사

- 김은주(2018)는 교권 침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권 침해의 실태, 교권 침해 요인, 효과적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교권 침해의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 침해의 요인으로 ‘가정환경 및 자녀 양육 태도’, ‘가정 및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IT 매체 이용에 의한 폭력성’ 등 학생·학부모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의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학교 차원의 전담 기구 활용, 치유지원센터 이용, 법률 자문 등의 대처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확대와 학

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았음.

- 김도기 외(2020)는 초·중등 교사의 교권 침해 경험의 의미와 과정을 밝히기 위해, 초·중·고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분석 결과 교권 침해 현상은 주로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 역할 및 책임의 모호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더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따라서 현재 교사들이 겪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제도적, 법률적 접근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의 범주 설정, 전문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제언함.
- 김범주 외(2023) 및 김소현 외(2023)의 연구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초·중등 교사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은 중등학교 교사들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른 법률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음. 또한 초·중등 교사 모두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및 홍보, 엄격하고 일관된 학칙의 적용을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었음. 이에 연구자는 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학교급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적합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언함.
- 교권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현재의 교권 침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 교육청, 국가 차원의 제도적, 법률적 변화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교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음.

2) 학생

- 김종우 외(2023)는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학생의 교권 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의 인권 존중 경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인권 존중 수준, 인권 관련 활동 참여 등이 나타남.

- 즉, 학생이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수록 교권에 대한 존중 의식도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인권 존중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냄.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된 교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함.
- 정소민 외(2023)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과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 그중 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원의 교육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원에 대한 정서 인식은 교사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남.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적 결정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보다 낮은 인식을 보여 교사의 교육적 결정에 대한 신뢰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강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운영’,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등의 의견을 나타내 제도 및 조치 강화를 높게 인식한 교사와의 차이점을 나타냄. 또한 ‘교원의 자기 성찰 요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일부 교원 스스로에게 있음을 나타냄.
- 교권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은 교권을 교육자나 전문직으로서의 권리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스스로 인권 존중의 긍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교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높았음. 교권 보호 법률과 제도의 보완을 우선으로 나타낸 교사와 달리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 등 전반적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3) 학부모

- 최선옥 외(2018)는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학부모의 인식에서 전체적인 교권 침해 현상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지만,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 침해 현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차이를 나타냄.

- 또한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침이나 조치에 대한 불만족과 오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였으며, 가해 학생, 학부모의 개인적·가정 환경적 요인과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을 다음의 원인으로 인식함. 이어 일부 교사의 도덕적 자질 부족을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김범주 외(2023)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초·중등 학부모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초·중등 학부모 간의 최우선, 차 우선 요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부모가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와 예방·치유·재발 방지 등 교육활동 보호 one-stop 서비스 제공이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및 홍보, 학생·보호자·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나타냄.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는 교사들에 비해 제도적 조치 강화보다 치료 방안 제공,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의 관계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교권 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부모들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 현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요인을 가장 높게 인식한 교사와 달리, 학교의 방침이나 조치에 대한 불만족과 오해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의 자질 부족 문제를 지적함.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률적 보완보다 심리치료, 국가적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노력 및 홍보,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적 상생 관계 형성 등 관계 회복 방안을 높게 인식함.

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제안

1) 법과 제도를 통한 개선

- 조기성(2019)은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를 분석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음. 첫째는 교

권 보호책임(담당)관의 명시화임.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책임 있게 할 교원이 필요한데, 현재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감, 학생부장, 생활지도 업무 교원 등 다양한 교원이 담당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의 원천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감을 교권 보호책임(담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힘.

- 둘째는 학교의 교권 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힘.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학교는 교육 본연의 공간이어야 하므로, 분쟁 해결로 인한 교육력 소모를 줄이고 가해자 조치에 대한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임.
- 셋째는 경미한 교권 침해 사안은 교원지위법에서 다루지 않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권 침해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축소·은폐를 금지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매우 경미하여 가해 당사자의 사과 등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에도 이를 학교장이 알게 되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오히려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경미한 사안은 교원지위법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는 입법화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함.
- 정혜민(2023)은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함을 나타내면서, 두 가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함. 첫째는 교원지위법상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더 다양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임. 기존의 조치는 기존의 징계 및 학교폭력 조치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둘째는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교원지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접근 금지 등의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교원지위법에 보호

자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서도 결정의 유형을 나타내고,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 김범주(2022)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이는 교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양측 모두의 우선순위로 선택되었음. 현재 교원지위법상 침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행규정은 구상권 청구가 유일하며,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할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학교장의 소환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강행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에 관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냄. 또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적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2)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 김은주(2018)는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인권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함을 나타냄. 기존의 연수, 강의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였음. 이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넘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등과 관련한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함.
- 이와 함께 인간 중심적이면서 구체화 된 교원침해 대처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냄. 교권 침해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의 유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화 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되, 피해 교원의 심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김범주(2022)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정립을 위해 국가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함. 이는 실제적인 교육적 효과와 함께 국가와 교육청이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또한 학교 구성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도 계속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종 연수 및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의 질적·양적 강화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사례 공유와 자문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전문적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조기성(2019)도 교원의 달라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사와 예비교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나타냄. 또한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인권 존중 교육 및 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언함.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인권, 시민교육 등을 강화하고 단순한 연수를 넘어 교육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실행할 것을 나타냄.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교권 보호 방안을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강화되어야 함을 제언함.

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직무 조정 방향 탐색

1) 교사의 직무

- 조기성 외(2016)는 교권의 보호 범위로 교육 법령에 의해 보장된 신분상 또는 직무상 특권,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행하는 수업이나 업무로서 교육권, 교원이 시민으로서 누리는 인권 또는 권리를 이야기하였음.
-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에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사의 직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교사의 직무 부담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양도 점점 늘어나며 교사들이 본질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교수·학습에 소홀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있음(정영수 외, 2010).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사의 직무 조정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직무와 미래 교사의 직무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가) 법령에 규정된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

- 김이경 외(2005)는 교사 직무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음.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표 II-28>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 직무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령

영역	하위영역	내용	관련 규정
학생 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을 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등
	학생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등
	학생 생활지도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훈육과 훈계 등의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
	학생 자치 활동 지도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등
	건강 증진지도	학생의 체위 향상, 영양 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등
전문성 신장	자질 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	교육기본법 제14조
	연구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승인을 얻어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복무	이행 의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
	금지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의 의무, 영리 업무 ...	
	근무성적평정	근무 실적 중 학습지도, 생활 지도, 학급경영, 교육 연구 및 담당 ...	교육공무원승진 규정 제16조
대외 관계	전문/교원단체 참여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	교육기본법 제15조

출처: 김이경 외(2005).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나) 교사의 직무 영역과 직무수행 기준

- 김이경 외(2005)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사의 직무 영역을 7가지로 정리함. 그리고, 각종 선행연구와 외국의 직무수행 기준을 참고하여 교사 핵심 직무 영역 및 내용을 선정하고, 워크숍, 현장 교사 검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제시하였음.

<표 II-29>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의 직무 영역

영역	내용
수업 지도	수업의 계획, 준비, 수업 실시, 학생의 학습평가 및 피드백 제공 등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생지도 영역	수업 이외 학생생활지도와 특별활동 지도 등
학급경영 영역	학급의 물리적, 심리적, 교육적 환경 조성, 학생활동 지원 및 지도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학교 교육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협력 관계 정립,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등
학교경영에의 참여 영역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학교에 대한 기여, 학교경영 및 업무 지원 등
전문성 신장 활동 영역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사명감, 자신의 교수에 대한 반성 및 전문성 개발 활동, 연구 활동 등

<표 II-30> 김이경 외(2005)가 정리한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

대영역	중영역
1. 수업 지도	1.1 수업 계획 및 준비 1.2 수업실시 1.3 학습평가
2. 학생지도	2.1 생활지도 2.2 특별활동 지도
3. 학급경영	3.1 학급 환경 조성 3.2 학급 자치 활동 지도
4.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1 교육계획 수립 참여 4.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5. 학부모 및 대외 관계	5.1 학부모 관계 5.2 대외 관계
6. 학교 경영 지원	6.1 학교 의사결정 참여 6.2 경영 지원 업무
7. 전문성 신장	7.1 전문가적 사명감 7.2 연수 활동 7.3 연구 활동

출처: 김이경 외(2005).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97.

다)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 권혁운(2010)은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기술서 305부를 분석하여 초등교사의 직무수행실태를 분석하고, 직무 기준을 개발함.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대분류별 일일 평균 직무 시간, 교사별(일반 교사, 부장 교사) 일일 평균 직무 시간, 담임 여부별 일일 평균 직무 시간, 담임 학년별 일일 평균 직무 시간, 교직 경력별 일일 평균 직무 시간을 분석함.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대분류별 일일 직무 중요도, 일일 직무 조정 방향과 직무 이외(잡무)의 수행 실태를 분석하여 교사 직무 기준안을 제시함.

라) 교사의 직무 부담

- 김이경 외(2009)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교사의 근무 시간 내 교수학습 관련 직무와 비 교수학습 관련 직무의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의 배경 변인(학교급, 경력, 직위, 담임 여부)에 따른 차이, 근무 시간 외 소요 시간, 총체적 직무 부담 등을 밝힘.
- 연구 결과, 근무 시간 내 교수학습 관련 직무 소요 시간과 비 교수학습 관련 직무 소요 시간의 비는 약 3:1이었으며, 즉, 우리나라 교사들이 근무 시간 내 수행하는 직무 가운데 약 25%는 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였음. 또한, 근무 시간 내외를 모두 합친 주당 직무 소요 시간은 평균 53시간 이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근무 시간 외에도 직무수행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핵심 직무를 국가 차원에서 정의하고, 비핵심 직무는 과감하게 사무 보조 인력이나 전문인력에 분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교사의 직무 부담과 직무 강도를 심도 있게 밝히고, 특히 비 교수학습 관련 직무 부담이 교수학습 관련 직무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함.

마)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의 직무분석

- 정영수 외(2010)는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접근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첫째, 교사 업무량 적정화를 위해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교사의 직무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직

무수행 영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조정해야 하고, 넷째, 수업 중심으로 직무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임.

-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국가 교사들과 비교할 때, 학급당·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업무 강도가 높고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 또한, 비 수업 교사와 전문 지원인력의 확보 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편이라, 우리나라 교사들은 지원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까지 맡아서 전방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근무 강도가 매우 높음.
- 정영수 외(2010)는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교직원의 직무를 분류하였음.

주요 활동			지원 활동	
학생 지도			행정지원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연수	교무행정	사무 행정
수업 계획 및 준비, 수업, 학습평가, 전후 학습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경영, 교과 편성 및 운영, 학부모 관계	교내연수, 교외연수	교무분장업무, 정책 행정업무, 행정사무, 대외 관계	감사, 회계, 인사 및 급여, 총무, 문서관리, 재산관리, 학교 행정지원

[그림 II-12] 정영수 외(2010)가 제시한 교직원 직무분류도

출처: 정영수 외(2010). 학교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분석. 경기도교육청, p.47.

- 또한, 과업별로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예를 들면, 학생 지도-학습지도-수업 준비 과업은 ‘수업 구상 및 학습계획안 작성’, ‘교재연구, 과정안 준비’, ‘교수·학습자료 지도안 제작 및 기자재·수업 환경 점검’의 3가지로 세분류하였고, 행정지원-교무행정-정책 행정업무는 ‘국가정책사업 관련 업무’,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업무’, ‘특색사

업’, ‘연구학교’, ‘시범학교’, ‘방과 후 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세분류하였음.

- 직무분석과 관련한 이슈는 교사의 업무량 과다, 수업 등 고유업무 외 행정 업무량의 과다, 수업 준비 시간의 부족, 교사 업무 분배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었음. 직무분석 결과 교사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지원 활동이 과다하였고, 직무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는 위생요인 관련 직무수행 업무가 과다하였음.
-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개인이 수행하기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음. 즉, 불만 요인은 전체 업무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행정 사무 업무와 일부 교무분장, 정책 행정업무 등 위생요인이었음.
-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단위 학교별 인력이 1~3명 배치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신분과 처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재적 교육지원 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바)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

- 정바울 외(2014)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교사의 직무 시간 소요 분석의 대표적인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점을 얻음. 영역별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구마다 세부 직무 영역이 달랐고, 행정업무의 범위를 다른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또한, 교사의 시간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과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업무 수행 시간도 소요 시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
- 연구는 교원의 시간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일회성 일반 설문지 조사, 경험 표집법에 따른 반복 조사, 교사의 하루를 기록한 시간일지 모두를 활용하였음.
- 교사들은 대부분 수업 또는 수업과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교사들이 수행하는 일은 수업 외에 수업 준비 및 평가, 학생 지도, 행정업무, 전문성 신장 활동 및 연수 등 매우 다양함. 우리나라 교사는 OECD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행정업무와 학생생활지도 시간은 높고,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적었음.

-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도 수업 진행 외에 수업 외 학생 지도, 수업 준비 및 평가, 학급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응답함. 수업 시간 중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교사는 감정의 조급함을 느낄 수 있고, 근무 시간 외 업무가 많다면 소진을 느낄 수 있음.
- 업무 전반에 걸쳐 상당한 비율의 교사들이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로 이어서 수행하는 등 동시 행동의 양상을 보임.
- 정바울 외(2014)는 교원의 업무시간 활용 재구조화를 위해 직무 재설계, 직무 여건 개선, 조직 문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2) 미래 교사의 직무 변화

- 정바울 외(2020)는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COVID-19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그에 따른 교사 직무 변화 양상에 관해 밝힘. 연구 결과,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원격수업의 방식과 플랫폼은 표준화되었으나 원격수업의 수행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의 양과 수준은 강화되었음. 개인의 적응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파편화 징후를 보였고, 온라인상 기록이 남는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 때문에, 퇴근 이후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는 그림자 노동으로 인해 소모되었음.
- 최상덕 외(2022)는 미래 교육에서 교사는 수업자료를 찾는 일보다는 수업을 기획하고 학생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 학생 정서를 관리하는 일 등을 주로 수행하며, 인공지능을 수업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인공지능과의 협업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함.
- 이윤미 외(2022)는 FGI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에 관해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 미래 교사에게 강조될 역할은 학생 개개인을

고려하는 개별화 교육, 코칭, 멘토링의 역할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 중재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있었음. 역할 변화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교육과 돌봄 체계의 모호성과 교사의 돌봄 역할 범위에 대한 갈등과 학교에 대한 기대의 강화와 업무 증가에 따른 혼란이 있었음. 연구는 미래 교사의 역할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함. 첫째, 교사의 대체 불가능한 본연의 업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있음.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자로서 학생에게 개별화된 융합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 전문가로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함. 셋째, 학생과 관계 맺음하여 학생이 주체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함. 넷째,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노력해야 함.

라. 시사점

-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권 문제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체계적인 대응과 인식 변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학생들은 교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하며, 인권 존중 경험이 교권 존중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음.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교 방침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지적하며, 심리치료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교권 보호책임관의 명시화, 학교와 시도교권 보호위원회의 역할 구분, 경미한 교권 침해 사안의 법적 처리 제외 등이 필요함. 또한, 보호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함. 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함. 단순한 연

수를 넘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권 침해 사안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교사의 직무 조정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교사의 직무 부담을 줄이고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비핵심 직무는 지원 인력이나 전문인력에 분담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가 필요함. 특히, 디지털 기술의 부상에 따라 원격수업과 같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함.
- 미래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학생 개별화 교육,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인공지능과의 협업 등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함.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과의 관계 맺음, 전문성 신장 등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종합 논의

- 현행법에서는 교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여러 법령에서 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모호함. 교원지위법 등에서 교권 보호위원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 교원의 법적 권한이 부족함. 교권은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연구자들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게 해석됨.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교권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교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치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

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체벌 금지 이후 증가한 교사의 지도 불응 및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및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조했음. 2012년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음. 2022년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음. 2023년에는 교사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계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음. 종합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정책 내용으로는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법률지원 및 배상책임 보장,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각 교육청의 정책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함. 교원치유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함. 여러 교육청이 법률지원단 운영과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함.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교원치유 및 지원체계 강화, 법률지원 및 민원 대응 능력 강화, 교육공동체의 역할 강화, 학교 현장의 자율성 및 책임 강화가 필요함.

-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 2022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생활지도와 징계를 구분하고, 학생이 교원과 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023년 개정에서는 생활지도 방법과 체벌 금지를 명시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도모함. 각 지역 자치법규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강화되고 있음. 종합적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선행연구들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권 문제에 대한 경험,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교사들은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체계적인 대응과 인식 변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학생들은 교권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하며, 인권 존중 경험이 교권 존중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음.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교 방침에 대한 불만과 오해를 지적하며, 심리치료와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함. 교사의 직무 조정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미래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 이러한 종합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권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음.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공동체의 역할 강화, 교사의 직무 조정, 미래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교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Ⅲ. 외국의 교권 관련 정책과 법 제도 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영국 사례
4. 프랑스 사례
5. 종합 논의

Ⅲ. 외국의 교권 관련 정책과 법 제도 사례

- 이번 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교권 관련 정책과 법 제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함.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는 모두 OECD 선진국으로, 발달한 교육시스템과 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따라서, 각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채택한 다양한 접근법과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용하여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접근법을 보여주며, 일본은 체계적인 악성 민원 대응과 정신적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권 보호를 실현하고 있음. 영국은 학교 책임제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생활지도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교사의 교육 업무 집중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1. 미국 사례⁷⁾

가. 미국에서 교권의 개념과 맥락

1) 교권의 의미: 권위(authority)를 중심으로

- 국내 법률 가운데 ‘교권’ 용어를 포함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와 2024년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 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이 있는데, 법제처가 제공하고 있는 영문 법령에 따르면 이것을 “educational authority”, “teachers’ authority” 등 일관되게 ‘권위(authority)’로 표기하고 있음.
- 영미권 문헌에서도 교권을 나타낼 때 ‘권위(authority)’가 주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teacher authority”를 비롯해 “classroom authority”

7)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범주 박사의 원고의 내용을 정리함.

(Oyler & Becker, 1997; Pace & Hemmings, 2007), “authority in student-teacher relations” (Macleod, Macallister & Pirrie, 2012), “pedagogical authority” (Harjunen, 2009/2011) 등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교권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더욱이 맥락에 따라 authority를 대신하여 “right” (Diana, 2016)나 “power” (Richmond & Maccroskey, 1984)를 사용하는 문헌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도 교권의 개념을 구성하는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오랜 기간 전개되었으며,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 지식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도 권위자의 권력과 지시에 저항하는 강한 평등주의적 지향을 나타내는 양가적인 측면이 번갈아 표출되어 옴(Pace & Hemmings, 2007).

- 권위는 매우 진보적인 방식의 리더십 개념으로도 이해되지만 엄격한 규율이나 부당한 억압과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Peters, 1966), 실제 미국인들은 학교 권위의 결여를 지적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반대로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혼재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Hurn, 1985; Sennett, 1980).

- 최근에는 법원에서 여러 법적 소송 결과 교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학교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Arum, 2003), 이와 반대로 일부 교육학자들은 교사가 아주 어린 학생들과도 권위를 공유했을 때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함(Oyler, 1996).

○ ‘권위’는 상급자가 명령할 권리(the superordinate’s right to command)에 대하여 하급자의 복종할 의무(the subordinate’s duty to obey)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Metz, 1978), 이 권리와 의무가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행사된다고 보느냐에 따라 교권을 정의하려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음.

- Pace & Hemmings(2007)은 보수주의자들은 교사가 서구의 학문적 지식과 미국의 공통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진보주의자들은 교사와 학생이 주도권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식의 권위 행사를 선호한다고 보았음.

2) 학교 규율의 관료화 맥락과 교권

- Kafka(2009)는 1959년 미국에서 최초로 교육구 전체에 걸친 학교 규율 정책이 채택된 바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학교 규율의 관료화(the Bureaucratization of School Discipline)’ 현상을 소개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라틴어 ‘in loco parmentis(부모를 대신하여)’ 라는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교육자가 아동이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은 부모를 대신하여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며, 훈육이나 징계 방법도 교육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특권이 부여된다고 여겨왔음.
 - 그러나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변화로 인해 교실 상황이 복잡해질 때마다, 교육자들은 더 이상 ‘in loco parmentis’에 의존할 수 없고 보았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의 징계 권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주장의 주된 내용은 교사가 학생의 개별적인 문제행동에 덜 집중하되 전체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구 수준의 규칙과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임.
 -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더 이상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율을 관료적 용어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게 되었으며, 학교 규율에 대한 책임을 학급 교사로부터 교육구의 관료적 구조로 옮기려고 했음.
 - 특히 1960년대와 1990년대에 학생 수 등 학교가 크게 성장하고 다양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의 비행 등 사회적 문제의 증가로 이어졌고, 교육구 차원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정된 사회 질서를 촉진해야 한다는 학교 규율의 관료화 요구 확산으로 나타난 것임
 - 즉, 징계를 비롯한 학교 규율에 관한 규칙, 역할,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등 “명확한 규정(definite regulations)” 과 함께 “징계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채택(adopt a definite policy on discipline)”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징계 규칙과 규정을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는 중앙집중식 정책 수립 경향이 나타났음.
- D’ Amico Pawlewicz(2016)는 미국의 뉴욕시 공립학교 대다수 교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UFT(United Federation of Teachers)가 전개했던 1968년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을 전후로 교권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있음.
 -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s)의 확산에 따라 인종

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풀뿌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공공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적 권력 구조(a racist Power Structure)”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60년대 초 뉴욕의 많은 교사들과 UFT 지도부는 인종 분리 철폐를 열렬히 지지했고 민권 운동을 통해 제기하는 인종에 따른 불공정을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구조적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기존 사회 질서가 붕괴하면서 민권 운동의 요구가 노조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나 특권과 충돌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됨.
- 특히 UFT는 학교가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진정한 학습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칠고 위험한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67년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아(disruptive child)” 조항으로 “아동이 정규 교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정규수업 상황에서 아동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
- 학부모 주도의 풀뿌리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 협회 회장인 Albert Vann은 “문제아” 조항(UFT가 주장하는)이 백인 교사들의 흑인과 푸에토리코 아동에 대한 잘못된 교육과 박해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했으며, 학부모들은 UFT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인종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학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하였음.
- UFT와 교육위원회는 포드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여 일부 시범 학구에서의 지역사회 통제 실험을 승인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UFT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션 힐-브라운스빌 커뮤니티 이사회가 19명의 백인 관리자와 교사의 고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교사들의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으로 이어졌음.
- D' Amico Pawlewicz는 논문의 제목에서 제시했듯이 이 사건을 두고 역설적 의미를 담아 “교사의 권리(teachers' rights) vs.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s)”로 표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학부모 집단과 교사 집단이 원하는 것

은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권 문제라는 점에서 정확하게 같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다만 학부모의 경우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기한 문제였지만, 교사들은 전문성 모델의 관점에서 교사를 표준화하고 규제하면서 이들의 직업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노조의 대응은 활성화되었다는 것임.

3) 학교 규율의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

- 미국은 학교 내 규율은 사법 체계의 응징적/징벌적 정의(punitive justice)를 따라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해 왔고, 이에 따라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배제적인 훈육이나 징계(exclusionary disciplinary action)가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음.
-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훈육·체벌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Fronius et al., 2019).
 - 첫째, 미국에서 1980~1990년대 유행했던 ‘무관용 정책’이 학생과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특히 흑인과 장애 학생 등 특정 집단 학생에 대하여 더욱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음(Balfanz et al., 2015; Losen, 2014; Marchbanks et al., 2015; Morris & Perry, 2016).
 - 둘째, 회복적 정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규율이 적용될 때 일부가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가해 학생에 따른 피해 당사자(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피해를 치유하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 관계를 개선하는 등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임(Ashley & Burke, 2009; Gregory et al., 2016; Morrison & Vaandering, 2012).
-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은 형사적 사법 체계에서 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화해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시도된 것인데(Karp & Frank, 2016; Sherman, 2003), 1990년대 초반 호주의 학교에서 처음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매

일 서로를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복적 접근이 학교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Payne & Welch, 2018).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등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 학교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Hurley et al., 2015; Schiff, 2013).

○ 미국에서 전통적인 규율 방식은 응보적인 관점에서 징벌에 초점을 두었다면, 회복적 접근은 피해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과 피해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잘못된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교실이라는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학교-교도소 파이프라인(The school-to-prison pipeline)”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는데, 무관용 정책에 따라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게 되면 이들이 학교를 자퇴 후 형사 사법 체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에 ‘학교 규율 격차(school discipline gap)’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어 있음.
- 다만 학생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접근 대신 회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재범률이 감소하고 학업성취도가 향상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증거도 뒷받침되고 있으나(Payne & Welch, 2018), 최근 미국에서 교직원에 대한 무례한 행동, 교실 밖에서의 난폭한 행위, 전자기기 사용 규정 위반 등 학생의 문제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NCES, 2022).

<표 III-1> 학교 내 규율의 전통적 접근 방식과 회복적 접근 방식의 차이

전통적·징벌적 접근 (Traditional/Punitive Approach)	회복적 접근 (Restorative Approach)
어떤 규칙을 어겼는가?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관계가 손상되었는가?
누가 규칙을 어겼는가?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이해 당사자는 누구인가?
어떤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어떤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나. 미연방법: “Paul D. Coverdell Teacher Protection Act of 2001”

- 미국은 미연방법 제7941조부터 제7948조까지 규정된 일명 「폴 D. 커버델 교사 보호법(2001)」을 통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는 규정을 둠.
 - 이는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Annotated)의 제20편 교육(Title 20. Education)의 제70장 초·중학교 강화와 개선(Strengthening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제8하위장 일반규정(Subchapter VIII. General Provisions)-제F절 통일 규정(Part F. Uniform Provisions)-제3하위부 교사 법적 책임보호(Subpart 3. Teacher Liability)에 속함
- (목적) 이 법은 “교사, 교장, 그 밖의 학교 전문가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질서, 규율 그리고 알맞은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794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 “피해(Harm)”, “비경제적 손실(Non-economic loss)”, “학교(School)”, “주(State)”, “교사(Teach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법 제7943조).
 - “경제적 손실”이란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실로서 소득의 상실 또는 고용과 관련된 혜택의 상실, 의료비 손실, 대체 서비스 손실, 사망으로 인한 손실, 장례비, 사업 또는 고용 기회 상실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복구는 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 “피해”란 “신체적, 비물리적, 경제적 그리고 비경제적 손실을 포함”함.
 - “비경제적 손실”이란 “육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 괴로움, 불편, 신체장애, 정신적 고통, 외모 손상, 삶의 기쁨 상실, 모임과 친분 관계 상실, (가사 노동 상실 아닌) 동거 관계 상실, 쾌락 손해, 명예훼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종류 또는 성질의 비금전적 손실”을 말함.
 - “학교”란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홈스쿨”을 말함.
 - “교사”란 “(A) 교사, 강사, 교장 또는 행정 교직원, (B)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육전문가, (C) 전문 또는 비전문 피고용인(학교에서 근무하는 자, 상시/비상시 규율을 유지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 (D) (학교 이사회와 구분되는) 학교 이사회의 개인 구성원”을 말함
- (적용)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주에만 적용하며 자금 수령

을 조건으로 해당 주에 적용하도록 정함(법 제7944조).

- (우선성 및 주의 비적용 선택) 연방법인 이 법과 주 법률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정함(법 제7945조).
- 이 법과 주 법률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법이 주 법률에 비하여 교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이 법은 주 법률에 우선하도록 정함.
- 또한 주가 이 법의 권한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 법률을 제정했거나 주 민사 소송에서 특정 날짜 부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 주 법원에 교사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사의 책임 제한(a)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 제7946조 제(b)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교사는 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정함(법 제7946조 제(a)항).
 - (1) 교사의 고용(계약의 내용, 연구자 주)이나 학교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
 - (2)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거나 훈육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 처리하거나 교실이나 학교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규칙·규정을 포함한) 연방법, 주법, 지방 법에 따라 한 행위
 - (3) 적절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사가 피해가 발생한 주와 관련 있는 활동이나 실무에 대하여 관련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사용 허가, 자격증 또는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그러한 활동이나 실무가 교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 (4) 교사에게 피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대하여 교사의 고의적 위법행위, 범죄 행위, 중과실, 부주의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의식적, 명백한 무관심으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 경우
 - (5) 교사가 (주가 그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운전면허를 소지하거나 보험 유지를 요구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운반하여 발생한 피해가 아닌 경우
- (교사의 책임 제한(b) 교사에 대한 법적 책임 보호 예외) 주 법률이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따라 교사에게 책임을 부여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법

적 책임 보호의 예외가 되도록 정함(법 제7946조 제(b)항).

- (1) 학교나 정부 기관에 교사의 의무 훈련을 포함한 위험관리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주 법률
- (2) 학교나 정부 기관이 피고용인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교사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주 법률
- (3) 주 법률이나 지방 법률에 따라 주 정부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주 법률

○ (교사의 책임 제한(c) 교사의 행위에 근거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교사의 고용(계약의 내용, 연구자 주)이나 학교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한 작위나 부작위에 기반한 피해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7946조 제(c)항).

- 다만,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피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대하여 고의적 위법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의식적, 명백한 무관심을 구성하는 교사의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교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음.
- 본 연방법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법을 우선하여 적용(교사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 연구자 주)하도록 함.

○ (교사의 책임 제한(d) 책임 제한의 예외) 이 법에 따른 교사 책임 제한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채용과 관련된 배경 조사나 그 밖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저지를 불법행위에 대하여 교사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7946조 제(d)항).

- (A) 폭력 범죄(제18편 제1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 또는 국제테러행위(제18편 제233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를 구성하는 위법행위로 피고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B) 적용 가능한 주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에 연루된 위법행위로 피고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C) 피고가 연방정부나 주의 민권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연루된 경우
- (D) 위법행위 시(적용 가능한 주 법률에 따라 결정한 바와 같이) 술이나 약물

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경우

- (교사의 책임 제한(e) 해석규칙) 학교 및 정부 기관에 대한 교사의 책임에 관한 경우 이 조의 조항은 학교나 정부 기관이 해당 학교 교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하위 부의 조항은 체벌의 사용에 관한 (규칙·규정을 포함한) 주 법률이나 지방 법률 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함(법 제7946조 제(e)항).
-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할당) 교사의 고용(계약의 내용, 연구자 주)이나 학교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의 범위 내에서 한 작위나 부작위에 기반한 피해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에 관하여 손실 보상액과 책임 비율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법 제7947조).
 - 교사인 각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각자의 책임에 정비례하여 할당한 비경제적 손실 보상액(책임 비율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법원은 각 피고에 대하여 책임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별도로 판결함.
 - 이 조에 따라 교사인 피고에게 할당한 비경제적 손실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사실심사관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각 사람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책임 비율을 결정함.
 - 이 법의 조항은 이 조에서 설정한 제한을 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에 우선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함.

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연방정부의 주요 시책

1) 2013년 R.E.S.P.E.C.T 프로젝트

- 미국 교육부는 RESPECT(Recognizing Educational Success, Professional Excellence and Collaborative Teaching[교육적 성공, 전문적 우수성과 협력적 교수에 대한 인정]) 프로젝트를 통해 교직이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 바 있음(U.S. DOE, 2013).
 - 이 프로젝트가 제안되던 2012년 Duncan 교육부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교육자들과 협력하여 직업을 재건하고 연방, 주 및 지방 교육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 교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며 “우리의 더 큰 목표는 가르치는

것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음⁸⁾

- RESPECT 프로젝트의 새로운 비전은 2013년 2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360회 이상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되고 5,700명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현장의 통찰력, 아이디어, 전문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수립되었음.
-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7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육자가 존중과 대우를 받으며 학생들은 교육적이고 생산적이며 참여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첫째, ‘책임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문화’는 학생의 학습을 위해 교사가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며, 교장은 교육자의 선발, 임용, 평가, 해고, 경력 발전 등에 관한 주요 결정을 학생의 학습을 중심으로 교사와 함께하는 것임.
 - 둘째, “성공을 위해 준비된 최고의 인재”는 효과적인 교육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고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임상 준비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더 엄격한 교사 준비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유능한 교사 또는 교장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임상 기회가 있어야 함.
 - 셋째,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개발”은 교사와 교장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함.
 - 넷째, “효과적인 교사와 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장을 측정하고, 교실과 학교 실습에서 얻은 증거, 동료와 학교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테뉴어 등 전문가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리더십 역할로의 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비효율적인 교원에 대하여 해고 등을 결정한다는 것임.
 - 다섯째,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커리어 연속성”은 훌륭한 인재를 학교와 교실로 끌어들이고 이들이 교직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과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여섯째, “성공적인 교육과 학습을 위한 조건”은 교육자의 성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 학습자, 장애 학생 등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사를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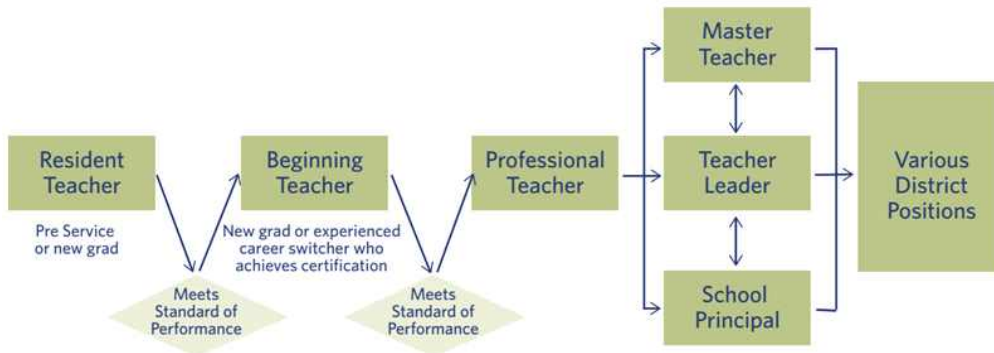
8)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ed.gov/content/launching-project-respect>>

치하고 모든 학생이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 영양 서비스 등 자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일곱째, “참여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와 학교의 운명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자들은 지역사회의 자원, 경험, 활동을 수용함으로써 학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지역사회는 효과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교사의 경력에 따라 탁월한 수업과 리더십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가 필요하며, 교육구와 학교는 교사와 협력하여 [그림 IV-1]의 예시와 같은 제도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음.

- 레지던트 교사(resident teacher):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초급 교사로서 \$20,000 내외의 보수를 받고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와 짝을 이루어 지원, 피드백, 코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정식 교사가 아님).
- 초임 교사(beginning teacher): 초임 교사는 독립적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인증된 교육자이면서 여전히 효과적인 교육자로 성장하는 단계로 여겨지며, 테뉴어 예비교사로서 \$35,000~50,000 수준의 보수를 받되 2~5년 가량 숙련 후 평가를 통해 테뉴어인 정교사(professional teacher를 말함, 연구자 주)로 승진하게 됨.
- 전문 교사(professional teacher):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자로서 인증받은 교사이며, \$65,000~120,000 수준의 보수를 받고 평가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다는 가정하에 종신 고용이 보장되거나 리더십 역할로 승진하는 자격을 부여받음.
-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 교실에 기반을 둔 학생과 동료교사에게 모범이 되는 교육자로서, 일부 수업 시수를 대신하여 레지던트와 초임 교사에게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델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하고 \$80,000~150,000 수준의 보수를 받고 향후 교장이 될 수 있음.
- 교사 리더(teacher leader): 마스터 교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장 또는 리더십 팀과 협력하는 전문적인 하이브리드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장과 분산된 리더십을 공유하거나 현장 기반 연구 프로젝트 지휘, 실천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개발, 동료 평가 및 검토 시스템 설계 등을 담당하고 \$80,000~150,000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향후 교장이 될 수 있음.



[그림 III-1] 다양한 교사 역할 구조의 예시

출처: U.S. DOE(2013: 24)

- 교원의 인사제도는 각 교육구 또는 학교 사정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학교(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DCPS)의 경우 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하고, 교사가 경력에 따라 인정받고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5단계의 LIFT 제도⁹⁾를 운영하고 있음(DCPS, 2023).

2) 2023년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

- 2023년 미국 교육부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Guiding Principles for creating Safe, Inclusive, Supportive, and Fair School Climates)」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이 포용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침을 제시함(U.S. DOE, 2023).

9) LIFT(Leadership Initiative For Teachers)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커리어 사다리로 구성되며, 성과가 우수한 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포함하여 더 많은 책임과 인정, 보상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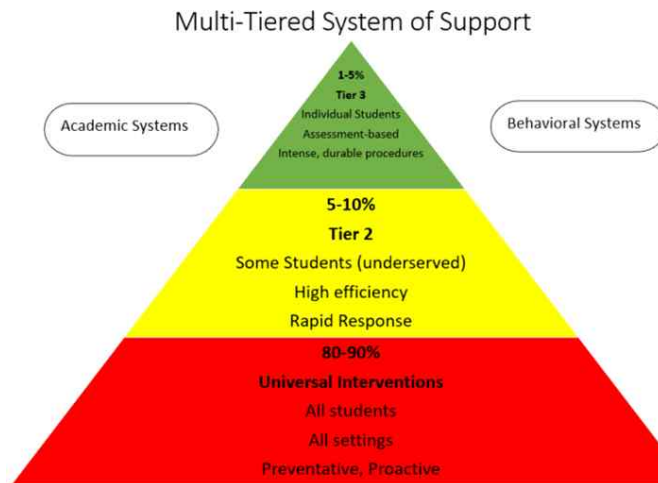
- 교육부는 가혹하거나 불공정한 배제적 훈육 관행, 그리고 유색인종·성소수자 학생·장애 아동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빈번한 규율 격차는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지원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봄.¹⁰⁾
- 예를 들어, 2017-18학년도(당시 가장 최근 데이터 학년도, 연구자 주)에 흑인 학생은 전체 유·초·중등 공립학교 학생의 15%를 차지하지만, 전체 퇴학자 중 38%를 차지했으며, 20%의 학생은 퇴학 이후 아무런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커짐. 그런데 공립학교 복장 규정을 비롯한 일부 규칙은 주관적인 해석의 차이로 인해 실제 행동의 객관적인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하여 징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임. 궁극적으로 배제적인 훈육 관행은 학생을 청소년 사업 시스템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미국 교육부는 ①긍정적이고 안전하며 따뜻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통해 소속감을 키울 것, ②증거 기반 전략을 통해 모든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요구를 지원할 것, ③교육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수 및 학습을 적절히 지원할 것, ④다양한 교육자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것, ⑤학생을 존엄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학생 징계 정책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 등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①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에는 모두를 위한 학교 안전을 조성하고, 학업, 규율 및 물리적 환경을 지원하며 학교 공동체 전체에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는 관계를 장려하고 유지하는 정책과 관행이 포함됨.
-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학업 성과(예: 시험 점수 및 졸업률) 향상, 학생 참여도 증가, 위험 예방 및 건강 결과 개선 교사 유지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 교육구 및 학교는 학생들의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 긍

10) 미국 교육부는 ‘배제적 훈육(exclusionary discipline)’에 따른 조치로 학교 규칙 또는 행동 강령을 위반한 학생을 학급, 학교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구금, 교내 정학, 교외 정학, 스쿨버스 탑승 정지, 퇴학, 대안 학교로의 징계 전학, 학교 관련 체포에 따른 수사를 포함한 법 집행 기관에의 회부 등이 있음. 교내 정학은 자녀가 징계 목적으로 최소 만나질 동안 정규 교실에서 일시적으로 강제 배제되지만 교직원의 직접 감독하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직접 감독이란 교직원이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학생과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함.

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강화, 2)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및 종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환영하고 포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 3) 엄격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며 친근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음.

○ ②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원적이고 공정한 학습 환경은 학생의 행복과 학업 성공에 높은 예측력을 보임.

- 연구에 따르면, 학교 시스템이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며, 이러한 조치가 건강과 안전 위협을 줄이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
- 주, 교육구 및 학교는 스트레스, 트라우마 및 기타 부정적인 경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고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보호 요소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를 사용한 증거 기반으로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다계층 지원 시스템(MTSS) 프레임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그림 III-2] MTSS에 따른 개입과 지원 위계

- 이외에도 정신건강 담당자의 조기 개입 전략, 통합형 학생 지원(Integrated Student supports, ISS)에 대한 투자,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s)의 수준 높은 구현,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s)에 대한 투자, 총체적인 학

교-지역사회-아동 모델(Implement the Whole School, Whole Community, Whole Child model; WSCC)의 구현 등의 전략 등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봄.

- ③교사에게 교육, 코칭 및 지원을 제공하고 수업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학생 및 가족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
 - 주, 교육구 및 학교는 양질의 교육과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 사전 서비스 및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학습 멘토링 기회 확충, 2) 교육자의 아동·청소년 발달과 학생 행동 및 훈육 관계의 이해 지원, 3) 관계의 발전, 회복,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관행(예: 회복적 관행), 4) 학교 내 다양한 정신건강 전문가(예: 공인 심리학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 전문가) 확보, 5) 수업 및 학교 퇴학을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하는 경우 학생의 행동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직원의 모든 조치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④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유색인종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관련된 신념을 가지고 교실 수업을 구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일부 연구에서 흑인 학생은 흑인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 졸업 가능성이 더 높고 배제적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낮으며, 학교 참여도 더 높아졌다는 결과 등을 근거로 함
 - 이에 교육구와 학교는 다양한 교육자를 채용하고 유지하고, 학교 기반 정신건강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정신건강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⑤학교는 징계 위반을 객관적으로 정의하여 주관성을 줄이고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기타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징계가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주와 교육구는 징계 관행의 초점을 학생의 지원과 교실에서의 학습에 집중하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1) 공식적(예: 학교 풍토 설문조사) 또는 비공식적(예: 포럼, 의견함) 방법을 통해 교육자, 학부모, 보호자,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정책을 공

동으로 수립하는 것, 2) 훈육 전략이 각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고려하는 것, 3) 학생 징계 정책과 절차가 명확하며 접근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 4) 문제가 발생하기 전 가족과 일관된 상호 의사소통 창구를 확보하여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 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됨.

라. 시사점

- 최근 국내 교권 회복 및 교권 보호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미국 사례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Student Right and Responsibilities Handbooks)” 나 미국의 뉴욕시(New York city)의 학생 권리 헌장(Students Bill of Right) 등이 소개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권위(authority)의 맥락에서 교권 보호나 회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이 학교 내 규율을 준수하고 스스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수단으로 보임.
 - 또한,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마다 서로 다른 교육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 내에서도 교육구와 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이 높아 개별 사례에 따른 차이 또는 격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부 교육구나 학교에서 시행 중인 사례가 미국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대체로 교권을 “teachers’ authority”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권을 교사가 엄격하게 규율하거나 학생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부여된 힘의 의미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 지식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과 존경으로부터 비롯되는 힘과 같은 넓은 의미로도 이해하는 등 사용하는 사람의 맥락과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임.
 - 특히 미국에서도 보수주의자들은 교사가 학문적 지식과 미국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의 경우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이 주도권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민

주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권위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보여짐.

- 미국 교육사에서 1960년대와 1990년대 반복적으로 나타난 ‘학교 규율의 관료화(the Bureaucratization of School Discipline)’ 현상은 최근 국내에서 교권 문제를 대하고 있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임.
 - 미국에서는 1960년대 학생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권 운동의 확산도 동시에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사회적·문화적·인종적 변화가 발생하자 교사가 부모를 대신한다는 ‘in loco parmentis’와 같은 전통적인 교리를 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학교 규율에 관한 사항을 더 이상 교사의 자율적 영역에 맡기지 말고 교육구 수준에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요구로 나타난 것임.
 - 국내에서도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부개정 이후 각종 갈등과 분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의존하려는 이른바 “교육의 사법화”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교권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법령 개정을 통해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2023년 교사들이 여러 달 동안 진행한 집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에서 학교 규율의 관료화는 이를 요구한 교사들이 기대했던 “징계 권한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개별적인 문제행동에 덜 집중하되 전체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Kafka, 2009: 324)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D’ Amico Pawlewicz(2016)가 1968년 뉴욕 교사노조인 UFT가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을 벌였던 배경을 해석하면서, 일련의 표준화와 규제는 교사 직업이 갖는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보았던 관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규정과 절차는 역설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양면이 있기 때문임.
 -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학교 규율의 관료화 요구는 당시 학교 규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학생 수가 급증했던 1990년대에도 재차 등장했으며, 강력한 규율과 통제에 따른 전통적인 규율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적 관점에서 최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규율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 전역에서 공감대가 확대

되고 있기 때문임.

- 미국 연방법으로서 교권 보호 법률이라고 알려진 「폴 D. 커버텔 교사 보호 법(2001)」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과 민사소송으로 인한 책임을 일정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받은 사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해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연방법과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게다가 2023년 이른바 ‘교권 4법’이 개정되고,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추가로 개정되어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법 사례가 국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정비에 주는 시사점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미국에서 전문적 권위로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①효과적인 교육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고 실질적인 커리큘럼과 임상 준비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 ②교원의 경력에 따른 자격 체계와 보상을 다양화하는 것, ③증거 기반의 다계층 지원 시스템(MTSS)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 ④학교 내 학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로서 공인된 심리학자,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전문가 등을 확보하는 것, ⑤훈육 전략이 각 학생의 요구와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고려하고 대상 학생을 다시 교실이라는 공동체로 통합하려는 노력하는 것 등은 향후 국내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9월 미국에서 발간한 「2022년 학교 범죄 및 안전 지표 보고서(Report 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2)」에 따르면, 2020-21학년도에 교사가 학생에 의해 직접적인 상해 위협이나 신체적 공격으로 피해 입은 비

율은 각각 6%와 4%로 나타났는데, 2011-12학년도에 비해 각각 4%p와 2%p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더욱 강력한 규율을 요구했다거나, 교사가 징벌적이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관행이 더욱 강화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투입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생의 교실 공동체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적어도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교사와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지원하는 방식이 교권을 보호·회복에 기여할 수 있거나, 적어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음.
- 또한 국내 교사 집단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회에 지속해서 훌륭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유지·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각 교원이 경력에 따라 늘어나는 전문성과 업적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LIFT stage와 같이 자격 및 보상 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교직을 더욱 매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일본 사례¹¹⁾

가. 현황

- 일본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임. 학생이 교사한테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행위, 또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몬스터 페어런츠 이슈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음. 이 몬스터 페어런츠라는 단어는 전직 교사인 Mukoyama Yoichi가 지었음¹²⁾.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그것이 폭력적이고 장기에 걸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부모를 의미하는 말임.
- 또한 일본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음. 교직원 권리 헌장 제1조

11) 이화여대 교육학 석사로 일본에서 법학(학부)을 전공한 오노 리나의 원고를 정리함.

12) 출처: <https://mukoyamayoichi.com/>

에 교직원의 책무와 권한이라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교직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탁을 받아 교육과 관련된 각각의 전문적인 직무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할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는 것 등이며 한국에서 쓰이는 교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의미하는 교권이라는 말과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설명함.

1) 몬스터 페어런츠가 교사에 주는 영향 및 몬스터 페어런츠의 분류

- Kusagai Yukari(2014)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 455명을 대상으로 휴직 퇴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음. 연구 결과, 대 교사 스트레스(Stressor), 학부모 스트레스, 동료 스트레스, 교무 스트레스가 교사의 휴직 퇴직 의식의 촉진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부모 스트레스를 제외한 대 교사 스트레스, 동료 스트레스, 교무 스트레스의 세 가지 스트레스는 교사의 피로 축적형 휴직 퇴직 의식과 교사의 발상 전환형 휴직 퇴직 의식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음. 한편, 학부모 스트레스는 교사의 피로 축적형 휴직 퇴직 의식만의 촉진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음. 학부모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교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휴직 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Saito Hiroshi(2010)는 Tadaï Toshiaki의 이론을 토대로 학부모로부터 교사나 학교에 들어오는 클레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덧붙여 학부모의 이기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특징별로 <표 III-2>와 같이 정의하였음.

<표 III-2> 학부모의 이기적인 언동 분류

3개의 대별	8개의 세분화	정의	언동 예
대처하기 곤란한 클레임	시조이드(Schizoid)형 클레머에 의한 클레임	경험한 사건들을 항상 악의적으로 여기는 경향	· 실제로는 없는데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함
	나르시시틱(Narcissistic)형 클레머에 의한 클레임	다른 사람을 때려눕힘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신을 증명	·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 등 교묘한 문제에 클레임을 걸음

3개의 대별	8개의 세분화	정의	언동 예
대처하기 곤란한 요구	교육과는 무관한 내용	학교 교육이나 양육과 무관한 것을 요구	· 돈을 빌려 주었으면 좋겠음 · 보험에 가입해 주었으면 좋겠음
	학교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	교육에 관계되어 있어도 제멋대로인 것을 요구	· 학예회에서 주역을 희망함 · 자기 자식만 우대 희망함
클레임이나 요구를 수반하지는 않으나 대처하기 어려운 언동	육아의 포기, 나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의무의 포기, 나태	· 급식비의 미납 · 결석 연락을 안 함
	육아의 오해, 곡해	과보호, 과간섭, 편향된 교육관에 의한 양육	· 작은 부상으로 야단법석 ·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교사나 학교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	교사의 인격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언동	· 한밤중에 교사 집에 전화를 걸음 · 교사한테 경청을 안 붙임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상식 언동	어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매너가 없는 언동	· 운동회에서의 음주, 흡연 · 수업 참관 중의 수다 떨기

출처: Saito Hiroshi, 2010

○ Saito Hiroshi(2010)는 <표 III-2>의 학부모의 이기적인 언동 분류를 바탕으로 가나가와현의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설문조사의 유효 응답자 수는 524명이었음. 그 결과, “대처하기 곤란한 요구” 중 교육과는 무관한 내용은 “별로 상처받지 않는다”가 214명, “전혀 상처받지 않는다”가 141명으로, 교사의 마음에 별로 상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교사나 학교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은 교사가 “매우 상처받는다”라고 410명이 대답하였으며, 가장 많았음. 또한 “대처하기 곤란한 클레임”과 “클레임이나 요구를 수반하지 않지만 대처하기 어려운 언동”은 “매우 상처받는다”와 “조금 상처받는다”라고 답한 비율이 약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2) 몬스터 페어런츠 관련 재판 및 범죄

○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하였던 학생 A의 부모가 알림장에 40번 넘게 “지분 거리기 위해 4번 문제 답을 지우고 X를 하고 88점을 준 최악인 선생이

다”, “악마 같은 선생이다” 등의 기술을 하였거나 학생 A 모가 시교육 위원회에 가서 담임에 대한 상담, 두 달 후에는 담임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하여 시교육위원회에 제출, 그 한 달 후에는 담임한테 폭력행위를 받았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음. 이 때문에 담임은 경찰에게 불려 3시간 동안 구 속을 당했음. 담임은 이런 부모의 행위 때문에 명예훼손 또한 불면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한 판례도 있음(오사카교육법연 구회, 2013).

- 또한 학교 위기관리에 특화된 유일한 전문 기관인 학교 리스크 매니지먼트 추진 기구에서는 몬스터 페어런츠와 관련이 있는 범죄를 다음 <표 III-3>과 같이 정리하였음.

<표 III-3> 몬스터 페어런츠 관련 범죄

협박죄	- 죽인다 - 때린다(홍내도 포함) - 집에 못 가게 한다 - 세상에 공표한다(내용에 의함) “선생님도 힘드네,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가족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되어 곤란하지 않아?” 등의 발언
공갈죄	- 돈, 재물의 요구 “당연히 합당한 대응을 해주겠지? (내용에 의함)” 등의 발언
건조물침입죄, 불퇴거죄	-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허가 없이 학교에 들어온 경우 (학부모인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 퇴거를 재촉해도 눌러앉을 경우는 불퇴거죄에 해당
폭행죄	- 때린다 - 발로 찬다 - 물건을 내던진다 (맞지 않아도)
기물손괴죄	- 학교 문을 박차고 부순다 - 비품을 부순다
강요죄	-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 에워싸고 억지로 사죄문을 쓰게 한다
위계 업무방해죄, 위력업무방해죄	- 거듭되는 장난 전화나 인터넷 범죄 예고 등 - 교사를 에워싸고 업무를 방해한다

출처: 학교 리스크 매니지먼트 추진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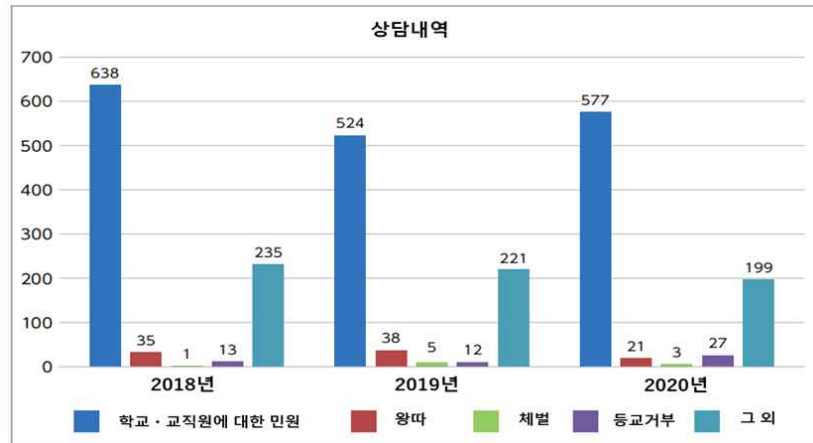
3) 교사에 대한 폭력 행위과 대처법

- 교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도 여전히 있음. 문부과학성(2023)은 2022년

도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 발생 건수를 발표하였음. 여기서 말하는 폭력행위란 “학생이 고의로 유형력(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함.

- 전체 학교 수에 대한 발생 학교 수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순으로 8.3%, 11.7%, 7.0% 총 11.6%임. 중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순으로 2.6%, 13.1%, 2.8% 총 12.2%이며, 고등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순으로 0.0%, 4.6%, 3.2% 총 4.2%임. 이 데이터에 따르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학교 종별로 보면 국립학교는 4.8%, 공립학교는 11.3%, 사립학교는 3.4%이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행위는 공립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6년 3월 판 야마구치현 교육위원회 문제 행동 등 대응 매뉴얼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대응 포인트를 아래와 같은 6가지를 기술하였음. ‘첫 번째, 복수 명의 교직원으로 대응하며 대응 교직원의 안전에도 충분히 유의한다. 두 번째, 흥분상태에 있는 가해 학생을 진정시켜, 다른 곳으로 옮긴다. 세 번째, 관리직 및 학생 지도 주임에게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한다. 네 번째, “폭력은 절대 용서 받지 못한 행위다”라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정보를 일원적으로 집약하여 시계열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한다. 여섯 번째, 학교와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처럼 미리 대응 대책을 정해두고 문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4) 도쿄도 교육 상담센터에 오는 상담내역



[그림 III-3] 도쿄도 교육 상담센터 상담내역

출처: 도쿄도 교육상담센터(2022)

- [그림 III-3]은 도쿄도 교육 상담센터에 오는 상담 내용 내역을 나타낸 그림임. 이에 따르면 학교나 교직원에 대한 상담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학교·교직원에 대한 민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1위 교직원의 발언 및 행동, 2위 관리직의 발언 및 행동, 3위 생활지도의 순위였음. 구체적인 민원 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교직원의 발언 및 행동이 226건, 관리직의 발언 및 행동이 112건, 생활지도가 98건 2019년에는 교직원의 발언 및 행동이 261건, 관리직의 발언 및 행동이 63건, 생활지도가 52건, 2020년에는 교직원의 발언 및 행동이 300건, 관리직의 발언 및 행동이 102건, 생활지도가 43건이었음(도쿄도 교육상담센터, 2022). 교직원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민원은 정도를 넘으면 교권 침해가 됨. 본 데이터를 통해 몬스터 페어런츠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나.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따로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학부모나 지역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나 요청에 대응하고 있음.

1) 정책

- 2020년에 시즈오카현교육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에서의 학부모 등의 대응에 관한 지침서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예를 들면, 다른 교직원들과 아이 콘택트를 할 수 있게 응대 장소는 학교 교장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또는 등근 의자를 사용하면 단시간에 절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명백히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내교자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다음 약속을 잡지 않는다, 검토하겠다는 말을 안 한다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2010년 8월에 문부과학성은 학부모나 지역 등으로부터의 요청 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대처를 발표하였음. 거기서 각 도도부현이나 시의 전문가팀 설치 사례를 공개하였음.
- 또는 설치 연월을 보면 2007년에서 2010년 무렵에 설치된 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때 학부모나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나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Ogi Naoki(2008)도 급식비 미납 문제를 시작으로 TV 매체에서 시작해 2007년 들어 신문, 잡지 등 활자 매체에서도 몬스터 페어런츠에 대해 크게 다루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급식비 미납 문제란 의무 교육비 관련 비용은 모두 국가의 책임(부담)으로 무상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징수금(급식비, 학년비, 학급비 등)을 지불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지불의뢰서(독촉 청구)를 송부했다니 학부모가 일방적이다, 고압적이다라고 반발해 왔다는 문제나 학부모 중에는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아이들은 급식은 먹을 수 있다, 급식은 못 끊는다며 모르는 척을 하는 학부모도 있다는 문제임(시즈오카현교육위원회, 2020). 이러한 몬스터 페어런츠의 문제에 대비한 전문가팀 설치 사례를 정리한 표는 다음 <표 III-4>와 같음.

<표 III-4> 전문가팀 설치 사례

도도부현명	명칭(설치연월)	주된 대처	주된 구성원 (교육위원회 직원 제외)
치바현	학교문제해결 지원팀 (2010년 4월~)	· 학교 등에서 해결하기 어렵 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전 문가를 소집해 학교 현장에	· 변호사 · 정신과 의사 · 임상 심리사

도도부현명	명칭(설치연월)	주된 대처	주된 구성원 (교육위원회 직원 제외)
		- 서의 지원을 포함해 대응 및 해결책 조언 등 - 대응 사례를 정리하고, 그 성과를 학교 등에 주지	· 민생(아동)위원
도쿄도	학교문제해결서포트센터 (2009년 4월~)	· 구시정촌교육위원회, 학교 및 학부모 등으로부터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공평, 중립적 입장에서 대응 · 서포트센터가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케이스회의에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	· 변호사 · 정신과 의사 · 임상 심리사 · 경찰관 OB · 행정서사 · 민생, 아동 위원 대표 · 학부모 대표
카나가와현	학교사고 등 긴급지원팀 (2000년 7월~) 학교간접지원팀 (2007년 7월~)	·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 발생의 미연방지 또는 발생 시 긴급대응책에 대해 현지에서 학교 또는 시정촌교육위원회에 대해 지도, 조언 · 피해의 미연 방지,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긴급한 “심리케어”와 가정에 대한 지원	· 임상 심리사 · 아동복지사 · 교원 OB의 NPO단체
이시카와현	학교문제해결지원팀 (2009년 4월~)	· 학교에 대한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요청 등에 관해상담 받기 ·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조정 실시	· 변호사 · 정신과 의사 · 임상 심리사 · 교장 OB
효고현	학교지원팀 (2007년 4월~)	· 학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등에 대한 지도, 조언 ·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의 대응 ·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문제에 대한 대응 · 학교와 가정,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 교육상담회의(케이스컨설팅 포함) 등의 대응	· 학교 OB · 경찰관 OB · 스쿨 소셜 워커 · 정신과 의사(수시) · 변호사(수시) · 복지관계자(수시)

도도부현명	명칭(설치연월)	주된 대처	주된 구성원 (교육위원회 직원 제외)
		· 교육상담창구(교육상담, 민원 및 요청에 대한 대응) 운영	
	고등학교문제 해결서포트팀 (2010년 4월~)	· 현립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 으로부터의 전화 상담 및 대 면 상담 ·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의 요 청 등 과제에 대응하는 현립 고등학교 관리직에 조언 및 지원 ·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 우에는 변호사 및 정신과 의 사를 포함한 케이스회의 개최	· 전문원(교원 OB) · 변호사(수시) · 정신과 의사(수시)

출처: 문부과학성, 2010

2) 사례에서 보는 대응 방법

- 일본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전력하는 대응을 함. 2022년에 도쿄도 교육 상담센터가 발표한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학부모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에서는 예시를 통해 대응 방법을 조언하고 있음. 그 예시는 다음과 같음.

<장래적 보상을 포함한 금전 요구 ~B 중학교장 상담~>

- 사례
체육 수업 중에 학생이 넘어져서 안면을 찢고, 앞니가 빠져 버렸다. 관리하에 있어서의 학교 사고이므로,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의 수속 등을 진행해 왔지만, 학부모로부터 장래적 보상에 대해 고액의 금전 요구를 암시하는 요구가 있었다. 언제까지 걸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 조언
왜 넘어졌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측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장래적 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부모님께 확인해야 한다. 치아 결손이 복구될 때까지가 학교가 맡아야 하는 대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 교육위원회 담당과와 협의 후 학교로서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반드시 인계받을 것, 또한 주치의의 치료계획 등의 정보를 관리직과 양호교사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를 수복한 후에, 어떠한 이상이 나왔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담당과와의 협의 결과에 근거해, 응대해야 하며,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원인이 학교 사고로 인한 치아 결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된다면, 인계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권 침해 대응 제도

-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사업을 펼치고 있음. 상담사업으로서 공인 심리사 또는 임상 심리사에 의한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메일 상담, 또한 도쿄도 교직원 건강 상담원(정신과 의사)이 정신보건에 관한 대면 상담도 실시하고 있음. 방문 상담사업으로서는 공인 심리사 또는 임상 심리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관리직 상담 및 개별 면담을 하고 있음. 정신건강 세미나를 위한 강사 파견, 교사 개별 면담, 교장 등 학교 관리직에게 조언 및 지원도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도쿄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하고 있음. 의료기관 등에서 그룹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소속 학교에서의 직장 복귀 훈련, 도쿄도 교육위원회와 공립학교공제조합과의 연계에 의한 의료기관 프로그램과 학교 프로그램을 일체로 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도쿄도 교육위원회와 공립학교공제조합 관동중앙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앓아 휴직하여 복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관리직 대상으로 연수회를 실시해 복직 후의 교직원한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정신질환이나 병가 중으로 아직 복직하지 못한 교원에게는 프레리워크(pre-rework)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 복직에 도움을 주고 있음(도쿄도 교육위원회, 2024).

다. 시사점

- 일본의 교권 침해 사례는 주로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악성 민원을 넣고 교원에게 범죄적 행위를 하는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에는 교권을 보호하거나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몬스터 페어런츠에 대응하는 전문가팀을 설치하는 등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 전문가팀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사, 경찰관, 아동 복지사, 학부모 대표, 교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범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로 위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가팀이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직원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임상 심리사나 정신과 의사에 의한 상담 서비스,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원을 위한 직장 복귀 지원 및 복직 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은 예방적 차원, 치료적 차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3. 영국 사례¹³⁾

- 영국은 한국에 비해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에 큰 주도권을 가지는 학교자치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자치제를 근간으로 하여 학교와 교사가 가진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단위학교가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단위학교가 책임져야 할 역할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교육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휴교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태도가 악화되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학생의 태도 문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교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음.
- 무엇보다 교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한다는 국가적 대전제 아래 교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자신감 향상, 그리고 교사의 건강, 복지,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영국(UK)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각각 자치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자치정부의 교육부가 개발한

13) 영국에서 학위를 한 강호원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의 원고를 정리함.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이 해당 지역에 적용 및 운영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잉글랜드의 관련 정책과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교권 회복과 교권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가.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

1) 교사의 행정·사무업무 경감

- 교육부는 오래전부터 행정업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는 대신에 교사 직무의 핵심인 교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해당 논의에 대한 근거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교 교사의 급여 및 조건 문서(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 STPCD)’의 변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교원 직무조정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화는 현재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당시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K)가 2003년에 발표한 STPCD부터 시작되었는데, 해당 지침에 최초로 ‘교사의 전문적 기술과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이 아닌 행정직무와 사무직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할 것이 교사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DfEK, 2003, p. 128).
- 또한 해당 지침은 2005년부터 모든 교사에게 계획수립, 준비 및 평가(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며 교장에게는 교장직(headship)을 위한 시간이 보장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DfEK, 2003, pp. 164-166).
- 특히 교사에게 PPA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각 교사가 담당하는 총 수업시간의 최소 10% 이상을 교수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DfEK, 2003, p. 164).
- PPA 시간 보장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3년 교육부의 교사 급여와 조건 문서 그리고 교사 급여와 조건 지침(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 2023 and guidance on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지침 역시 PPA 시간은 반드시 교사가 담

당하는 총 수업시간의 10%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PPA 시간에는 절대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DfE, 2024d, p. 50).

2)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 그동안 잉글랜드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문제가 학교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신규교사의 채용 및 경력교사의 근속 비율이 떨어지면서 결국 교사 수급난이 발생하는 문제를 겪어왔다(DfEa, 2019, pp. 10-11).
- 이에 교육부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9년에 ‘채용 및 근속 전략(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전략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신규교사양성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DfEa, 2019).
- 또한 해당 전략은 교원의 직무조정을 통해 교수와 직결된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의 수준을 높이고, 과도한 행정업무나 학생의 방해행동과 같이 교사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교원의 대처능력을 높이는 교원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함으로써 교직으로 유입되는 신규인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는 ‘채용 및 근속 전략’ 이후에도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교사의 행정업무와 사무업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교육부의 위탁으로 진행된 쿠퍼깁슨 연구(CooperGibson Research)의 결과를 담은 ‘교사의 행정 시간(Exploring teachers’ admin time)’이라는 연구보고서가 2023년에 발표되었음.
-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교사들이 다수의 행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의 지원인력이 감소하면서 행정직무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DfE, 2023a, p. 9). 해당 연

구결과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이미 교육부는 향후 3년 간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업무부담 경감 대책위원회(Workload Reduction Taskforce)’를 2023년에 발족하여 지원하고 있다(DfE, 2024e, pp. 5-8). 해당 대책위원회는 교원, 학교운영자, 교원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향후 3년 안에 교사의 근무시간을 5시간 줄인다는 교육부의 목표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DfE, 18 September 2023; DfE, 2024e, p. 3).
- 특히 해당 대책위원회의 주요 연구 분야 중에는 기존에 교육부의 초점이었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이외에도 교사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 비행정업무(non-administrative tasks)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내 직무수행 상황 그리고 학교가 짊어진 광범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DfE, 2024e, p. 8). 해당 대책위원회의 1차 제언 보고서는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나.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

1) 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한 우려

- 교육부가 2021-2022년 학기에 초·중·등 학교의 학교 대표자,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행동 수준을 조사한 ‘국가 행동설문조사(National behaviour survey)’가 보여주는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래의 결과는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수업에 차질을 야기하고, 수업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건강과 웰빙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학생의 행동관리와 관련된 교사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 지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5> 국가행동설문조사의 주요 결과(DfE, 2023b, pp. 11-12)

그릇된 학생 행동의 정도와 여파	· 학교 대표자(학교장, 부장급 교사, 행정실장 등) 및 교사 응답자의 62%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 전에 학생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일부 수업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답하였음 · 학생 응답자의 67%가 다른 학생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일부 수업의 학습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답하였음 · 교사 응답자의 69%가 학생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 수업시간 중 평균 1~10분이 낭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수업시간 중 30분 당 6.3분이 학생의 그릇된 행동으로 낭비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학교 대표자들 및 교사 응답자의 60%가 자신들의 건강과 웰빙에 학생의 그릇된 행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하였음
학생 행동에 대한 대처	· 학교의 고위 대표자들로부터 학생의 지속적인 그릇된 행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 응답자의 53%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2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음 · 교사 응답자의 27%와 학교 대표자 응답자의 20%가 학생의 행동관리와 관련된 연수와 전문성개발의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 학교 대표자 응답자 중 38%는 외부의 전문적 지원이 시기적절하다고 답한 반면에 41%는 전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하였음

2) 학생보호

- 교육부의 위탁으로 진행된 ‘정학과 퇴학에 대한 팀슨의 검토(Timpson review of school exclusion)’ 보고서는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퇴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DfE, 2019b, p. 6),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 학생들이 결국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제기함(DfE, 2019b, p. 8).
- 또한 해당 검토보고서는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정학이나 퇴학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로 꼽히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결과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함(DfE, 2019, p. 53). 팀슨의 검토보고서 이외에도 2019년에 발표된 흉기범죄에 대한 초당적 단체(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nife Crime)의 연구보고서와 잉글랜드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의 연구보고서 모두 퇴학당한 학생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APPG on Knife Crime, 2019;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2019).
-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단위학교로 하여금 퇴학생에 대한 책임을 지

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보수당의 2019년 총선공약과 2020년 교육부장관의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는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학교장의 권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주었음(Loft, Roberts와 Danechi, 2020, p. 8).

- 그리고 교육부는 팀슨의 검토 보고서에 담긴 제언에 따라 정학 및 퇴학 지침을 수정하고, 학생의 행동관리와 관련된 교원연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 제적 상황을 학교감사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음(National Statistics, 23 November 2023, p. 8).
-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잉글랜드의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 또한 학생을 합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음.
- 교육기준청은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퇴학이 아니라 학생을 재학생 명부에서 제외하는 제적(off-rolling)을 이용하는 학교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학교가 실시한 제적이 교육기준청의 학교감사체계 중 하나인 리더십과 운영관리에서 부적합(inadequate)¹⁴⁾ 등급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Ofsted, 10 May 2019).
- 또한 교육기준청의 이러한 입장은 2022년에 개정된 정학 및 퇴학 지침에도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학교가 정학이나 퇴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제적 처분을 받은 후 가정학습(home education)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학부모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교육기준청으로부터 부적합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음(DfE, 2022c, p. 15).
- 그리고 교육기준청의 2022년 교육감사체계(education inspection framework)부터 제적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정학과 퇴학 정보를 학교감사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대폭 추가되었음(Ofsted, 2022).
-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퇴학생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22-2023년 학기의 퇴학생 비율은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에서는 48% 그리고 중등학교에서는 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National

14) 교육기준청의 학교감사 등급 네 가지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함.

Statistics, 23 November 2023). 이러한 추이는 학생의 행동 수준을 개선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으로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3) 2022년 교육정책서에 명시된 학생 행동 개선에 대한 추진 목표

- 잉글랜드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는 향후 몇 년 동안 추진할 교육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육계획 정책서는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된 ‘모두를 위한 기회: 모든 아동을 위한 훌륭한 교사가 있는 건실한 학교(Opportunity for all: strong schools with great teachers for your child)’ 임.
- 해당 정책서는 ‘모두를 위한 우수한 교사’, ‘교육과정, 행동 그리고 출석에 대한 높은 기준 실행’,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 그리고 ‘보다 건실하고 공평한 학교체제’ 라는 네 가지 추진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DfE, 2022, pp. 8-10).
- 특히 ‘교육과정, 행동 그리고 출석에 대한 높은 기준 실행’에는 세 가지의 세부 추진계획들이 포함되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더 나은 행동과 높은 출석(Better behaviour and higher attendance)’ 이다(DfE, 2022, p 24). ‘더 나은 행동과 높은 출석’은 학생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며,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에서 학습하게 하는 것을 뜻함(DfE, 2022, p 24).
- ‘더 나은 행동과 높은 출석’이라는 세부 추진계획을 선정한 배경에는 학생이 받은 정학과 퇴학 처분의 원인들 중 방해 행동(disruptive behaviour)이 가장 높은 비율(34%)을 차지한다는 통계 결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DfE, 2022, p 25).
-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학생의 높은 출석률과 바람직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생이 우수한 교육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DfE, 2022, p 25).
- 또한 코로나19 기간에 실시된 장기간의 휴교는 결국 포스트 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학생의 수업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

성을 느끼고 있음.

- 학생의 태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의 교내 행동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과정 및 현직교사를 위한 전문성개발 연수과정에 학생의 행동관리(behaviour management) 영역을 포함시키고(DfE, 2022, p. 26),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는 지역별 학교 간 지원체계를 통해 운영되는 행동 허브들(behaviour hubs)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DfE, 2022, p. 26).
- 특히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행동·문화 국가전문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 Behaviour and Culture)’ 취득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기 시작하였음(DfE, 2022, p. 31).
- 또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내 행동(Behaviour in Schools) 지침’과 ‘정학·퇴학(Suspension and Permanent Exclusion) 지침’을 수정하여 학교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DfE, 2022, p. 31), 앞으로 ‘국가행동설문조사(National Behaviour Survey)’를 도입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교내 행동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DfE, 2022, p. 31).
-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교권 침해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교의 대응권한을 강조하고 지지하면서도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제기되는 학교 밖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기회 박탈 문제와 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의 전학 과정과 방법에 대한 규칙을 명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DfE, 2022, p. 33), 교육기준청으로 하여금 단위학교를 감사할 때 해당 학교의 제적학생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려되는 상황에 개입하게 함(DfE, 2022, p. 33).

4) 학생의 행동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권한

① 교내 행동 지침

- ‘모두를 위한 기회: 모든 아동을 위한 훌륭한 교사가 있는 건실한 학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는 2022년에 발표한 ‘교내 행동(Behaviour in Schools) 지침’을 수정하여 2024년 2월에 신규 지침을 발표하였음. 이전 지침에서부터 현 지침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학교의 행동 정책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DfE, 2022a, pp. 8-9; DfE, 2024a, pp. 6-7).
 - 목표: 해당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포함함.
 - 리더십과 관리: 담당 인력과 대표들의 역할, 사용되는 모든 체제, 할당된 자원, 운영자/이사의 관여를 포함함.
 - 학교체제와 사회적 규범: 규칙, 일상 그리고 결과체제를 포함함.
 - 관계: 교내 그리고 더 넓은 학교공동체 안에서의 의사소통, 가정-학교 연락, 기타 기관과의 연락을 포함함.
 - 학교 인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개발 및 지원: 행동에 대한 학교인력의 정기 연수를 포함함.
 - 학생의 이동과 발전: 바람직한 행동체계로의 유도 및 재유도, 규칙 및 일상(routine)을 포함함.
 - 학생 지원: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 수요를 가진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함.
 - 학생 간 학대: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학생 간 학대를 예방하는 조치와 이러한 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함.
 - (2024년에 추가된 내용) 금지물품: 학교가 금지하는 물품의 목록과 해당 물품에 실시될 수 있는 검색
 - (2024년에 추가된 내용) 휴대폰: 교내에서 하루종일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접근법
- 이전 지침과 비교할 때 신규 지침에 시도된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음. 우선, 단위학교는 ‘국가최소기대(national minimum expectation)’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의 행동 관련 접근법을 적용 및 운영해야 하는데(DfE, 2024a, p. 6), 이는 교육기준청이 학교감사에 사용하는 평가기준들 중

에서 행동과 태도 측면에 대한 기준과도 맥락이 일치하는 것임(DfE, 2024a, p. 6). 학생 행동과 관련하여 국가가 단위학교에 요구하는 최소기대수준은 다음과 같음(DfE, 2024a, pp. 6-7).

- 단위학교는 학생의 행동과 처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기대는 교사와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며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적용됨.
 - 학교 주요인력들(학교장, 부장급 교사, 행정실장 등)은 행동 정책에 따라 학생에 대한 행동관리를 함에 있어서 학교의 모든 교직원을 가시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함.
 -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들을 마련하고 일반적 그리고 표적 간섭 모두를 사용하며, 모든 학생이 행동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학생에게 맞도록 합당하게 조정함.
 - 통상적으로 학생의 행동은 교수, 학습 또는 학교의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방해는 용납되지 않으며, 용납가능한 행동기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
 -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괴롭힘, 신체적 위협 또는 학대 그리고 위협이 용납되지 않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당 환경에서 학생이 안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모두가 존중받음.
 - 괴롭힘, 차별, 공격성 그리고 경멸적 언어 중 어느 사건이든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함.
- 두 번째, 단위학교는 행동 교육과정(behaviour curriculum)을 수립하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대수준과 그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을 가르칠 것을 강력히 권고함(DfE, 2024a, p. 10). 학교의 행동 교육과정은 금지되는 행동들로 구성된 목록을 제시하기 보다는 교내에서 요구되는 일상적인 행동을 학생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과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학교의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가르칠 것을 권고함(DfE, 2024a, p. 11).
- 그리고 해당 지침은 학생에 대한 교실 제외(removal from classrooms) 처분과 다른 조치들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교실 제외 처분은

학생에 대한 중징계의 목적으로 교사 한 명의 지도 아래 학생이 교실 이외의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함(DfE, 2024a, p. 22).

- 교실 제외 처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행동이 교실에서 즉각적으로 제외될 만큼 매우 심각하지는 않을 때 일단 교실 안에서 행동 개선을 위한 여타의 조치들을 시도한 이후에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DfE, 2024a, pp. 22-23). 교실 제외는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는데, 해당 처분이 내려진 당일에 학교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함(DfE, 2024a, p. 23).

- 모든 학생에 대한 안전 유지 및 높은 수준의 차질이 일어난 후 안정성 회복
- 방해 학생이 관리되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함
- 해당 학생이 안전한 장소에서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게 함

- 또한 해당 지침은 학생에 대한 교실 제외 처분과 관련하여 학교의 명확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다음의 내용이 요구됨(DfE, 2024a, p. 24).

- (교실) 제외가 심각하게 나쁜 행실에 대한 대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단 위학교의 행동 정책에 명시함.
- 학교의 모든 제외 조치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을 계속 감시함.
- 학생이 제외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학교 인력과 학생에게 반드시 투명하게 알려야 함.
- 행동 정책 내에 (교실 제외) 기간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학생 제외에 적절성을 부여하는 원칙들에 대한 골자를 마련함.
- 제외 장소는 해당 학교의 적절한 곳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원을 갖추어야 하고, 학습하고 다시 집중하는 데에 적합하며 훈련된 학교 인력이 감독하는 곳이어야 함.
- 제외된 학생이 다시 기존의 교실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확실한 복귀 과정을 고안함.

- 그리고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행동 지침은 학교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명시하는 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의 대부분은 최신 지침에

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해당 지침에 명시된 학생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의 권한과 방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표 III-6> 학생 행동에 대한 학교의 대처 권한과 방법(DfE, 2024a, pp. 15-30)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대처	· 학생과 학교 인력의 안전 보장 및 평온한 환경으로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함 · 추가적인 문제 행동의 발생 및 재발을 예방하는 데에 단계적 축소전략들(de-escalation techniques)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평온한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사전동의를 거친 대사나 어구를 사용할 수 있음 · 행동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대처들이 포함됨 - 구금(detention): 처벌은 특정 학생에게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거나 교내 모든 학생에게 일반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음 - 보호(protection): 학생의 안전 유지는 모든 학교 인력의 법적 의무이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처에는 즉각적으로 또는 위험성 평가 후에 보호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선(improvement): 학교의 행동 기대수준을 이해하고 만족시키며 다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처벌, 반성적 대화 또는 표적 목회적 지원(pastoral support)¹⁵⁾이 동원될 수 있음
용인되는 처벌의 유형	· 행동 정책은 학생, 학교 인력 그리고 학부모와 확실히 소통하고 이들에게 이해된 다양한 처벌 방법을 포함해야 함 · 처벌의 예: - 구두 질책과 기대되는 행동을 상기시킴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유서 등과 같은 쓰기 과업을 설정함 - 특권 박탈 - 구금 - 교내 봉사활동(교실 청소 등) - 정기적으로 보고하기, 사전에 예정된 복장 검사 실시, 행동 감시목적의 호출 당하기 등 - 유기정학(suspension) - 최악의 경우 퇴학(permanent exclusion) · 필요시 처벌과 지원이 동시에 실시될 수 있음
처벌에 대한 법적 허용	· 학생의 그릇된 행동, 규칙 위반, 합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처벌을 적용할 수 있음 · 교사는 학생이 교내 또는 교사의 책임 하에 있는 기타 장소에 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벌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저지른 그릇된 행동에도 적용됨 ·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합법적인 처벌로 인정됨 - 학교의 유급 인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인정받은 무급 인력이 학생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렸을 때 -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 결정 또는 처벌 그 자체가 학교의 교정 안에서 내려졌거나 교사가 해당 학생을 법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때 - 다른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건 하에 타당할 경우

	· 학교장은 특정 교사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의 유형 혹은 특정 학생이나 학생 유형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처벌의 권한을 성인 자원봉사자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음 · 교사의 처벌은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금지됨
구금 (detentions)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처벌로서 향후에 있을 그릇된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통상적으로 급우들은 하교하거나 휴식시간을 가질 때 해당 학생을 단기간에 교사의 감독 아래 두는 것을 말함 · 교사는 학생에게 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학교는 행동 정책을 통해 징계의 일환으로 구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적인 학교 운영시간 이외의 구금이 합법적으로 인정됨 - ‘구금 처분을 내릴 때 학교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Matters schools should consider when imposing detentions)’에 구금 조건의 골자를 명시 - 만 18세 미만의 학생(점심시간 구금이 아닐 경우) - 학교장이 수업시간 이외에도 구금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해 온 경우 - 다음의 시간에 한하여 구금이 실시될 때 · 학생이 결석 허락을 받지 않은 수업일 · 학기 중 주말(중간방학 전/중/후에 있는 주말 제외) · 정규수업이 없는 학교 운영일(교내 교원연수일이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날, 공휴일/학기 첫날/중간방학 중/학기 마지막 날 제외) ·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방과후 구금의 경우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는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됨 · 점심시간 구금의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식사와 음료수를 섭취하고 화장실을 가는 데 필요한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함
교실에서 배제	· 교실에서 배제되는 처분은 심각한 처벌 사유로 인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한정된 시간을 교실 밖에서 보내게 하는 것을 말하며, 교실 밖에서 교사와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교실로 복귀하는 상황과는 구별됨 · 학생이 교실에서 제외되는 처벌을 받더라도 교사의 감독 아래 교육이 계속 진행되며, 이때 진행되는 교육은 일반적인 학교교육과정과는 다를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게 유의미한 것이어야 함 · 해당 처분은 심각한 처벌로 간주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일단 교실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한 후 사용해야 함 · 당일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학교장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학생이 교실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교실에서 제외된 학생에게는 학교공동체로 다시 통합되어 성공할 수 있도록 행동 개선에 초점을 맞춘 목회적 지원 등의 광범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수업에서 제외된 학생이 머무르는 공간을 감독하는 교사는 학교의 행동 정책 그리고 문제 행동 및 상황을 일으킨 학생을 다루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 적절히 훈련된 상태여야 함

재발방지를 위한 초기간섭	· 학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관리하고 정학이나 퇴학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초기간섭전략(initial intervention strategies)을 사용해야 함 ·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돕고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교실 밖, 소집단, 일대일 활동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학교가 실시할 수 있는 간섭의 예: - 학부모와의 빈번하고 열린 연계(필요시 가정방문 등) - 멘토링과 코칭 제공 - 단기 행동성적표(behaviour report card) 또는 장기 행동계획(behaviour plan) 이용 - 학생지원분과(pupil support unit)로 보내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별 항목 참조) - 분노조절장애, 회복력 결여, 급우관계 및 대인기술의 어려움 등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협력체나 기관들과 연계
학생지원분과 (pupil support units, PSU)	· 소집단으로 그리고 정규수업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계획된 간섭이며, 아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행동 또는 목회적 사유에 따른 계획된 간섭 - 정학 또는 퇴학의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예방 조치 · 학생의 행동 개선과 학습 지속을 통해 기존의 정규수업으로 성공적으로 재합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학교의 전반적인 기풍 및 행동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함 · 대부분은 해당 학교의 학생만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나, 일부(일반적으로 '교내 대안제공분과(Alternative Provision (AP) units)'로 불림)는 다른 학교의 학생까지 수용하는 곳도 있음 · 학생이 다른 학교의 학생지원분과로 위탁되는 경우: - 학생지원분과를 보유한 주인 학교(host school)의 입학 및 등록 규정에 따라야 함 - 기존에 다니던 학교와 학생지원분과를 보유한 주인 학교의 학생으로 중복으로 등록됨 · 학교는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학생지원분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적·관찰해야 함
재통합 (reintegration)	· 학교는 수업에서 제외되었거나, 교내외의 학생지원분과 또는 정학 처분된 학생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학교, 학생, 학부모,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릴 수 있음 · 학교는 학생이 다시 교실 수업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동 관련 기대수준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학생 행동의 감시와 평가	· 학교는 학생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는 건실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 권장됨 · 해당 데이터는 숙련된 학교 인력이 추적·감시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함 · 학교는 학교 대표자들의 참여하는 명확한 추적감시 및 평가 주기를 마련해야 함.

	· 학교는 다음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 권장됨 - 수업에서 제외된 학생을 포함한 행동 사건에 대한 정보 - 출석, 정학 및 퇴학 정보 - 학생지원본과, 교외 명령(행동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에 출석하게 함), 전학 활용 - 수색, 검색 및 압수 사건 - 교사, 학생, 운영자, 이사, 기타 이해당사자의 학생 행동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	--

② 정학 및 퇴학 지침

- 교육부는 2022년 ‘정학 및 퇴학(Suspension and permanent exclusion)’ 지침을 수정하여 2023년 9월에 신규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2023년 지침에서 시도된 가장 큰 변화는 학교가 퇴학 처분을 내릴 때는 합당한 근거에 따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들이 추가된 것임.
- 특히 교육부는 신규 지침을 통해 학교장이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때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학부모와 지역사회단체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DfE, 2023c, p. 8). 그리고 신규 지침을 통해 전학, 단위학교의 행동관리전략의 일환으로 학생에게 단기간 조치로 내리는 교외 명령, 정학 또는 퇴학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DfE, 2023b, p. 9). 신규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7> 정학 및 퇴학 규정(DfE, 2023c, pp. 11-15)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 단위학교의 학교장만이 처벌의 사유로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교장은 정학이나 퇴학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학생의 나이와 이해도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견해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학생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정학이나 퇴학 처분의 사유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학생에 대한 폭행 - 성인에 대한 폭행 -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 또는 위협적 행동
----------------------------	--

- 15) 학생의 출석률 향상, 질서정연한 분위기 조성 및 학업성취도 향상, 관용 장려, 인종차별 및 불평등 지양,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교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Ojewunmi, 2019). 잉글랜드의 학교들은 교내에 목회적 돌봄 담당자나 부서를 두고 학생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Ofsted, 4, April 2022; Ofsted, 20, July 2022).

	- 성인에 대한 언어폭력 또는 위협적 행동 - 공격적 무기나 학교의 행동 정책에 금지된 금지물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 - 괴롭힘 - 인종차별 - 성적 성향이나 성전환에 대한 학대 - 장애와 관련된 학대
유기정학	· 유기정학은 일시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위학교의 행동 정책 안에 있는 필수적인 행동관리의 도구임 · 유기정학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정해진 기간(일년 학기 수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45일까지 가능)에 대한 정학을 말함 · 단위학교의 행동 정책의 일환으로서 용납불가능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당시의 행동이 퇴학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유기정학 기간 중에 학생이 교육을 계속 받는다는 것인데, 학교장은 정학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안에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온라인 수업을 이용할 수 있음) · 유기정학은 해당 수업일의 일부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점심시간에 일어난 방해행동의 경우 점심시간에 한하여 학교의 교정에서 정학을 받을 수 있음) · 법적으로 유기정학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퇴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유기정학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유기정학 처분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퇴학	· 학생이 학교에 더 이상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결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내려져야 함 - 학교의 행동 정책을 한번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대처 - 해당 학생을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학생 당사자 또는 해당 학교의 교사나 다른 학생의 교육이나 복지에 심각한 해가 될 경우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 대안제공기관에 출석이 금지되는 날로부터 5일 안에 공식적인 퇴학 처리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합당한 강제력 사용

- 교육부(2013)의 ‘교내에서 합당한 강제력 사용(Use of reasonable force in schools)’ 지침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 인력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함. 해당 지침은 합당한 강제력(reasonable force)이란 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학생을 통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DfE, 2013, p. 4).
- 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서 합당하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강

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며(DfE, 2013, p. 4), 교사는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함(DfE, 2013, p. 4).

- 학교의 모든 인력은 합당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한은 학교장이 무급 자원봉사자나 학부모에게 한시적으로 학생을 담당할 책임을 맡긴 경우에도 적용됨(DfE, 2013, p. 4). 또한 합당한 강제력은 다음의 상황과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DfE, 2013, pp. 4-5).

<표 III-8> 합당한 강제력의 상황과 목적(DfE, 2013, pp. 4-5)

상황	·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학교 안에서 학생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사 당사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신체적 간섭이 가해질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되며, 언제나 개별 상황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함
목적	· 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이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교실에서 제외함 · 학생이 학교의 행사, 소풍, 견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함 · 학생이 교실을 떠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해당 학생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다른 이의 행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학생이 교실을 떠나는 것을 예방함 ·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을 막음 · 신체적 폭발을 통해 자해의 위험이 있는 학생을 억제함 · 단, 처벌로써 사용할 수 없음
동의 없이 학생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 학교장과 해당 권한을 가진 교사는 다음의 금지물품을 검색하기 위해 합당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음 - 칼과 무기 - 주류 - 불법 약물 - 도난물품 - 담배 - 폭죽 - 외설적 그림이나 영상 - 범죄에 사용되는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개인적인 상해나 기물파손을 야기하는 글 · 학교 규칙에 금지된 물품을 검색하는 데 합당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음

학부모에 대한 통보	· 학교가 학부모에게 강제력이 동원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각한 사건을 기록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도록 장려됨(강제력 동원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보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의 몫임) · 심각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사는 다음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 사건 발생 당시 학생의 행동과 위험성의 수준 - 사용된 강제력의 수준 - 학생 또는 교사에 대한 효과 - 학생의 나이
---------------	---

④ 수색, 검색 및 압수

- 교육부(2022)의 ‘수색, 검색 및 압수(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지침은 학교장과 교사가 학습과 근무를 위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발표된 것임. 학교가 실시할 수 있는 수색, 검색, 압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9> 합당한 강제력의 상황과 목적(DfE, 2022b, pp. 7-20)

수색	· 교사와 학생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행동에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임 · 학교장과 학교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받은 교사에 한하여 수색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장과 관련 권한을 가진 교사는 학생이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경우에 해당 학생이나 학생의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짐 · 관습법에 따라 교사는 학생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학생의 물품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해당 권한을 발휘할 때는 학교가 수색이나 검색을 당하는 학생의 나이와 요구를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교사는 물품 수색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CCTV 장면을 사용할지를 고려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수색이 실시될 때 현장을 감독해야 함 · 수색 전에 학생 당사자의 협조를 구해야 하며,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교사는 학교의 행동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학생이 수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교사는 수색을 실시하기 위해 합당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평가해야 함 · 법적으로 반드시 피수색자와 동일한 성별의 교사가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다른 교사 한 명이 증인으로 현장에 동석해야 함 · 교사는 학생의 외투, 주머니, 소지품, 서랍, 사물함을 검색할 수 있음
----	---

	· 학생의 소지품은 해당 학생과 또 다른 교사가 동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색이 진행될 수 있음 · 교사는 금속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알몸수색은 학교 안에서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음 · 수색을 통해 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 학교의 행동 정책에 맞게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함 · 학부모에게 학생의 금지물품 수색에 대해 통보해야 함 · 수색, 검색, 압수에 대한 항의는 통상적인 학교항의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검색	· 학생이 교정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의 외관에 대한 검사나 소형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학생이 흉기를 소지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학생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과 같이 수색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처리함
압수	· 수색 권한을 가진 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어느 것이든 압수할 수 있음 - 교사나 학생에게 위협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교칙에 따라 금지물품으로 규정된 경우 - 위법행위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경우 · 교사는 학생의 물품을 압수, 소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합법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교사는 손실, 파손, 압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음

⑤ 교내 휴대폰 지침: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 그동안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집중력 하락과 주의력 분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진행과 학생 훈육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DfE, 2024b, pp. 3-4).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증가하였지만, 학교마다 휴대폰에 대한 정책에 큰 차이가 존재하던 것도 사실이었음(DfE, 2024b, p. 4). 이에 교육부는 학교와 교사가 조용하고 안전한 교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내 휴대폰(Mobile phones in schools)’ 지침을 발표하였다(DfE, 2024b, p. 5). 다만 해당 지침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지침이 아니라 강력 권고 수준에 해당함.
- 해당 지침은 기존의 ‘교내 행동(behaviour in schools)’ 지침과 ‘교육에서 아동의 안전 유지(keeping children safe in education)’ 지침의 연장선

상에서 마련되었으며,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하기까지 학교 안에서 휴대폰을 비롯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DfE, 2024b, p. 6).

- 해당 지침은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단위학교가 행동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하거나 단일 정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DfE, 2024b, p. 7), 등교 시 휴대폰 지참 및 반입 전면 금지, 등교 시 학생의 휴대폰 일괄 수거 후 하교 시 반환, 등교 후 개인사물함 등의 특정 보관소에 휴대폰 보관 후 사용금지, 제한된 허용 구역에 한하여 학생의 휴대폰 소지 허용 등과 같이 단위학교가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성을 허용함(DfE, 2024b, p. 7). 그리고 교내 휴대폰 지침은 학생이 학교의 휴대폰 정책을 어겼을 경우 학교가 해당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할 뿐만 아니라(DfE, 2024b, p. 9), 학생의 휴대폰을 학생에 대한 교사의 몸수색이 허용되는 소지 금지 물품의 범주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DfE, 2024b, p. 10).

5) 학생 행동과 관련된 교사 연수 강화

① 행동 허브

-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행동 허브(behaviour hubs)를 운영하는 3개년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족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초중등 학교가 해당 지역의 선도학교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1년 혹은 2년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DfE, 28 February 2020). 교육기준청의 학교감사에서 전체평가 등급으로 가장 높은 뛰어남(outstanding) 등급 아래를 받은 학교의 경우는 행동 허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Behaviour HUBS, n.d.; DfE, 28 February 2020), 행동 허브로 지정된 선도학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매학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매학교가 선도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음과 같음.
- 선도학교는 자매학교의 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기존의 전략을 감사하며, 자

매학교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 접근법을 진단하고, 새로운 행동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개발하는 역할을 함(Behaviour HUBS, n.d.).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선도학교는 자매학교에 교사연수, 도구 및 자원, 일대일 코칭이나 멘토링을 제공하고, 자매학교가 선도학교를 전학할 수 있게 하며, 자매학교의 사후평가를 지원할 수 있음(Behaviour HUBS, n.d.).

- 교육부는 사립연구기관인 교육개발기금(Education Development Trust)에게 전국의 행동 허브들을 관장하고, 행동 관련 교사연수 및 연구를 진행하며, 행정 및 재정관리를 하는 센터의 역할을 맡겼다(DfE, 28 February 2020).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교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교육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총 12-20일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3,000파운드(한화 약 5123만 원) 그리고 총 30-40일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은 9,000파운드(한화 약 1,539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Behaviour HUBS, n.d.; DfE, 28 February 2020).
-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행동 허브로 지정된 학교는 50개교이며, 64개의 학교가 자매학교로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해당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37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Behaviour HUBS, n.d.).

② 학생 행동과 관련된 교사 연수 과정 개발 및 지원

- 학생의 그릇된 행동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과 웰빙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들 중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인력을 위한 업무 부담과 웰빙 개선(Improve workload and wellbeing for school staff)에서 행동관리를 여덟 가지 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가 교원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DfE, n.d.).
- 교육부가 제공하는 해당 자료들은 학생의 행동관리에 대한 발표자료나 우수사례 등에 관한 것으로 일선학교에 관련 분야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또한 교육부는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예비 교사에서부터 신규교사에 이르

기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사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초기교사양성과정과 초기경력체계(Initial Teacher Training and Early Career Framework, ITTECF)’를 2025년 9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DfE, 2024c. p. 4).

- 해당 체계는 경력교사로부터 교수에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학생의 행동관리에 대한 멘토링과 지원을 받으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DfE, 2024c. p. 4), 해당 체계를 구성하는 여덟 개의 주축 분야 중 하나로 학생의 행동 관리(Managing Behaviour)가 포함됨(DfE, 2024c. p. 24).
- ITTECF의 행동 관리 영역에서 제시하는 효과적인 학생 행동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과 방법은 예비교사의 양성과정과 신규교사를 위한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데에 사용됨. 이외에도 교육부는 ‘예비교사 행동 툴킷(The trainee teacher behavioural toolkit)’ 지침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행적인 행동관리와 대응적인 행동관리라는 두 가지 접근법의 특징과 요소를 안내하고 있음(DfE, 30 January 2024).
- 이처럼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연수과정의 기본적인 체계나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것은 교사연수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일선학교이며, 각 지역과 개별학교의 상황에 맞는 연수과정을 학교와 교사가 직접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 시사점 및 제언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교권회복 및 보호관련 정책은 전반적으로 학교 책임제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또한 교육기준청의 감사를 통해 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우선, 교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사의 채용 및 근속 개선이라는 국가적인 기조 아래 행정·사무업무 등과 같이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최소

화하는 대신에 교수·학습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이를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원의 직무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교육 현장을 만듦으로써 해당 분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의 기회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 또한 교사의 채용 및 근속 개선이라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화두가 되어 온 주요 주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업계 주도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주제별 교원연수프로그램은 해당 주제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직의 위상과 직업적 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셋째, 교권 회복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주도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학교와 교사에게 있음. 교육부는 교사의 채용 및 근속 전략 아래 추진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사, 교원단체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연계하여 왔으며, 이들이 직접 세부 추진 계획과 내용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 각 지역의 행동 허브나 ITTECF 아래 운영되는 교사를 위한 모든 연수과정은 학교와 교사가 상황에 맞게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되, 선도학교와 자매학교의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연수과정의 기준이 되는 지침을 개발하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함.
- 넷째,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행동 등과 같이 교권과 수업권을 훼손하는 학생에 대처하는 교내외의 지정교육기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음. PSU나 AP와 같은 별도의 운영 단위를 마련하여 문제 학생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계속 진행하면서도 교사와 다른 학생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과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호하고 있음. 문제 학생을 위한 지정된 교실이나 운영 단위는 문제 학생의 개선에 필요한 표적 지원

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정규 수업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혹은 담임교사의 권한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훈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한편, 교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와 교사를 뒷받침하고 있음. 행동 지침, 정학 및 퇴학 지침, 수색, 검색 및 압수 지침, 교대 휴대폰 지침 등 최근에 개발되거나 수정된 학교 지침들은 모두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교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짐. 이러한 지침들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학습에 큰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들로서 학교의 질서, 안전, 규율을 강조함.
- 다만 학교의 강화된 권한으로 인해 학교가 문제 학생을 쉽게 퇴학시킴으로써 학교의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문제 학생을 훈육하고 다시 수업에 참여시키기까지 학교와 교사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만큼 공식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제 학생의 즉각적인 퇴출을 통해 조기에 상황을 종료시키는 선택을 하는 학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퇴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에 대한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은 학생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제적생의 수를 학교 평가 결과와 연동시킴으로써 단위 학교에 대한 학생 관리의 책임을 묻고 있음.
- 이처럼 교사의 채용 및 근속 전략 아래 추진되는 세부 계획들은 주로 교권 회복과의 관련성이 높지만, 신규 학교 지침들은 교권 보호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019년 이래로 교사의 채용 및 근속 전략 아래 추진되어 온 기존의 계획들과 더불어 2023년부터 교육부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4. 프랑스 사례¹⁶⁾

-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한 프랑스 교원 직무에 대한 맥락 설명은 다음과 같음. 프랑스에서 교원의 주요 임무는 수업으로, 중등의 경우 자신의 수업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하며, 학교에 상시 근무하지 않음. 담임교사 제도가 있지만, 조종례가 없으며, 학급에 대한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음(초등은 담임제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함).
- 따라서 우리나라 교사와 같이 교사의 ‘업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학교의 행정업무는 교사 본인이 수업에서 프로젝트나 외부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학교의 행정실과 관리자(교장, 교감)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프랑스에서 교원 임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생활지도에 관련된 대부분 사항을 생활지도 교사(Conseiller Principale d'éducation 이하 CPE)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임.
- 생활지도 교사의 주요 임무는 학생들이 공동생활의 규칙을 습득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음¹⁷⁾. 생활지도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교에 1~2명 배치되어 있음. 이를 통해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가 원칙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프랑스에서 2023학년도(9월)부터 학교폭력 근절이 교육과제 우선순위로 설정됨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1차적 조치를 위해 학교폭력 담당 교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게 되었음. 하지만 해당 업무로 인한 교권 침해 현황을 위한 자료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며, 시기적으로 이를 판단하게도 이른 측면이 있음.

가. 교권 개념 정립과 용어 규정

- 프랑스에서 ‘교권’이라고 정의할 만한 합의된 개념은 없으며, 교사의 권

16) 프랑스 몽펠리에 교육대학교 김현경의 원고를 정리함.

17) <https://www.education.gouv.fr/bo/15/Hebdo31/MENH1517711C.htm#:~:text=Les%20CPE%20sont%20concepteurs%20de%20la%20vie%20scolaire.>

리를 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음.

- 우선 교사가 가지는 권리에는 교수학습자율권이 있음. 교육법 제 L912-1-1에 따르면 교원은 교육과정, 교육부의 지침, 학교 교육계획과 장학부서 감독을 준수하는 한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자유(Liberté pédagogique des enseignants)를 가짐.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대강 교육과정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표가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교원이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가짐.
- 다음으로 교원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와 관련된 의사 표현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공직법 L211-1~L216-3)와 파업권(노동법 L2511-1~L2512-5)을 가짐. (Articles L211-1 à L216-3 du Code de la fonction publique ; Articles L2511-1 à L2525-2 du Code du travail.)

나. 교권 침해 현황

-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교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프랑스에서도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상원에서는 ‘교원에 대한 압력, 위협, 공격 사건의 신고와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Sénat, 2024).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 경찰에 신고된 사건(수위가 심각한 사건)이 물리적 폭력은 5,063건, 명예훼손이나 언어·심리적 폭력의 경우에는 3,801건으로 나타났다.
- 교원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 분위기에 대해 1~2년 주기로 진행하는 조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신체, 심리,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교원의 비율과 추정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III-10> 2021-2022년 공립 및 교육부협약 사립학교¹⁸⁾ 초등학교 교원 피해 인원 추정 수치(Sénat, 2024, p33)

	무시 또는 건방진 발언	위협	고의적인 신체가해	수업자료의 도난 혹은 파손	개인 소지품 및 교통수단 도난 및 파손
%	36,9	10,1	3	9,1	4,5
교원 수	137800	37700	11200	34000	1670

<표 III-11> 2018-2019년 공립 및 교육부협약 사립학교 중등학교 교원 피해 인원 추정 수치(Sénat, 2024, p34)

	위협	고의적인 신체가해	수업자료의 도난 혹은 파손	개인 소지품 및 교통수단 도난 및 파손	흥기 위협
%	11,9	3,5	9,1	2,6	0,2
교원 수	58500	17200	44700	12700	900

- 교직원의 사법적 보호 및 법률 고문을 위한 단체인 ‘비종교적 연대 자율(Autonomie de solidarité laïque)’이 학교생활 및 근무 분위기에 대해 발표한 2022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단체에 사법적 보호¹⁹⁾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한 교원의 48.1%가, 개인적으로 법률 자문을 위해 연락한 교원의 41.6%가 학생의 법적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음(Autonomie de solidarité laïque, 2023).
- 프랑스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로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둘째로는 학부모와의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학교 밖 테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자 함.

18)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예산 지원을 받는 학교

19)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로 인해 신체적 상해, 폭력, 지속적 괴롭힘, 위협,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 공격의 위협이 당사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와 직계 부모까지 미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분석

1) 학교 내부규정

- 프랑스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생 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을 학교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이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교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 발생 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학교 내부규정은 교육법 R511-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함(Articles R511-13 du Code de l'éducation).
- 학교 내부규정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됨. 규정은 학교관리자가 학교 구성원들과 상의하에 준비를 책임지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표결을 거침. 학교 내부규정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학 때나 학교 입학 때 학생에게 전달되며 학교 내부에 게시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 내부규정은 학교 내의 생활 규칙을 명시하며, 행동 및 예의와 관련된 규칙을 중심으로 함.
- 학교 내부규정에서 교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교원이 학생생활지도 시 벌과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임.

가) 벌(Punition)

- 벌은 학교 내부에서 행하는 조치로 교실이나 학교에서 경미한 규율 위반이나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벌은 교원이나 관리자가 내릴 수 있음. 벌의 종류로는 학부모와의 연락 수첩에 표시, 방과 후에 남아 있기(18시까지), 반성문(구두 또는 서면), 추가 과제, 수업 배제가 있음. 벌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이 학부모에게 통지된다. 벌을 받을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dossier scolaire)에 기록이 남지 않음.
- 벌은 교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됨.
 - 추가 과제를 하는 벌을 받을 경우에 학생은 추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교사로부터 받는다.
 -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벌을 받을 경우에는 학교 교직원의 감독하에 이

루어진다.

- 수업에서 배제되는 벌을 받을 경우 학생은 수업 교실이 아닌 다른 학교의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학교 교직원의 감독을 받는다. 수업에서 배제된 시간 동안 학생은 교사가 지시한 학습과제를 한다.

나) 징계(Sanctions disciplinaires)

- 징계는 학생의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규율 위반 시 가해지는 조치이며, 특히 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경우를 말함.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무조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학생이 교직원에게 언어폭력을 가했을 경우
 - 학생이 교직원에게 심각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교직원이 물리적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징계는 학교장이나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으며, 형법의 원칙이 적용됨. 학생이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징계 수위는 잘못에 비례하여 책정됨. 징계를 받을 경우 학부모에게 징계 기간과 청원 방법이 통지됨. 징계를 받은 사실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학생 측에서 요구 시 삭제할 수 있음. 징계 조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에 청원 또는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다음과 같음.
 - 경고 : 징계의 가장 낮은 단계로 학생의 행동을 경고하는 것.
 - 면책 : 서면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엄숙하게 경고하는 것.
 - 책임감 증진 조치 : 학교 수업시간 외에 학교 안 또는 바깥에서 최대 20시간 동안 교육, 문화, 연대(사회봉사)활동을 행하는 것. 유예 가능.
 - 일시적 수업 배제 : 학생이 최대 8일간 학교에는 오지만 아무 수업도 들을 수 없는 것. 학생이 반복적으로 여러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 내려짐. 유예 가능.
 - 일시적 정학 : 학생이 최대 8일간 등교할 수 없는 것. 유예 가능.
 - 퇴학 : 학생의 교육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으로, 징계위원회에서만 결정 가능. 퇴학 처리된 학생은 다른 학교로 배정. 유예 가능.
 - 징계조치 유예(마지막 세 가지)의 경우 조치가 집행되지 않으며, 문제행동 재발 시 집행.

- 학생이 일시적 수업 배제나 일시적 정학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에, 학교에서는 징계 기간에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일시적 수업 배제의 경우 학생은 학교 내에서 다른 교원(생활지도 교사(CPE)²⁰, 감독 보조 교사²¹, 사서교사)의 감독하에서 주어진 학습과제를 함. 일시적 정학의 경우 학생은 학교 외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학습 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게 됨.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내부규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2) 교사가 신고당했을 경우 교육청의 지원체계

- 프랑스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학교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소셜미디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²² 학교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로 인해 사용자(주로 학부모)와 직접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현장의 교원들이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육부는 2019년, ‘교직원을 위한 신고 및 고소 대응 지침서’를 발간해 배포했음(MENJ, 2019). 해당 지침서에서는 교원이 신고당했을 경우 이에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도움을 받고, 해당 교원을 지원 및 지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우선 교원이 고소를 당했을 경우 지원하는 체계는 크게 학교장,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교육청의 인사국장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MENJ, 2019).
 - ① 학교장 : 교육청 인사국과 연계하여 고소를 당한 교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절차 진행기간 동안 교원과 교육청 사이의 연락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 교원과 교육청 장학사의 면담에 참여한다.
 - 학교 구성원에게 교원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교육청 장학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원과 회의를 주최한다.

20) 들어가는 문단에서 전술

21) Assistant d' éducation :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율학습을 감독하고,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돕는 보조교사. 보통 대학생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22) 원칙적으로 프랑스 학교에서는 핸드폰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교원의 허락 하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② 교육청 장학사 :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 및 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 해당 교원과 면담 실시 : 고소의 의미와 교원의 권리에 대해 안내하고, 교원의 말과 관찰사항을 수집한다.
 - 해당 교원에게 물질적이나 심리적인 지원을 제안한다.
 - 고소 건의 심각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예. 근무지 변경 등).
- ③ 교육청 인사국장 : 마찬가지로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 및 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와 연계한 상담을 안내한다.
 - 교육청 인사국 내 담당자를 지명해 해당 교원을 지원한다.
- 다음으로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수위가 높은 비난(신고)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체계는 일차적으로 학교장, 그 이후 교육청의 두 단계로 나뉜(MENJ, 2019).
 - ① 학교장 : 교원의 보호와 지지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 ② 해당 교원 : 교원에게 비난 사실을 알리고, 교원과 함께 추후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 ③ 교육청 : 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하고, 추후 절차를 논의한다.
 - ④ 학부모 : 비난을 한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는데, 이때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표 등 제3자와 함께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청 장학사와 함께 면담한다.
 - ⑤ 교육청 : 학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학교장과 함께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는데, 학교장은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은 교육청에서 내린다.

3) 출근하지 않을 권리 (Droit de retrait)

- 프랑스에서 교원은 신변에 실질적 위협을 느낄 경우, 공무원으로서 출근하지 않을 권리와 공무원 실질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가짐.
- 공무원에서의 노동 안전 및 위생과 의료 예방과 관련한 1982년 5월 28일 법령(décret n° 82-453 du 28 mai 1982 relatif à l'hygiène et à la sécurité du travail ainsi qu'à la prévention médicale dans la fonction publique) 제 5조와 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을 경우 (즉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제재나 징계를 받지 않음.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위험이 심각하여 장기간 또는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나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위험한 사건이 거의 즉각적인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여 신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정도로 급박한 경우
- 출근하지 않을 권리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해당 권리는 개인적 권리이며, 단체행동을 위한 권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이는 사전 고지를 통해 행사하는 파업권과 구별된다.
-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파악되었거나,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여길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권리의 행사는 정당화되며 월급은 유지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행정당국이 권리 행사자가 해당 권리를 남용한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 행사자의 근무 복귀를 서면으로 명령할 수 있으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당만큼을 월급에서 제할 수 있다.

○ 해당 권리의 행사(신고)체계는 다음과 같음.

- 교원은 즉시 서면이나 구두로 관리자나 교육청 국장에게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하며, 관리자나 상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중지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한 이 사실에 대해 적절한 '위생, 안전 및 노동 조건 위원회(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 이하 CHSCT)에 알릴 것이 권고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자나 교육청 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
- 이후에 신고 내용은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은 관리자나 교육청 국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 위험 상황이 정상화되었을 경우, 즉 위험을 없애려는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해당 교원은 상급자의 사전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근무지에 복귀해야 한다. 상급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험 해결 조치에 대해 해당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4) 공무원 직무 보호(Protection fonctionnelle des personnels)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1983년 7월 13일 법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해당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의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상해, 폭력, 지속적 괴롭힘, 위협, 욕설, 명예훼손, 모욕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함. 또한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함. 따라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로 인해 공격의 피해를 입을 경우 행정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격의 위협이 당사자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와 직계 부모까지 미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직무 보호 조치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당사자(교원)는 경찰이나 헌병 또는 검사에게 직접 제소를 통해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학교장 또는 교육청 국장)를 통해 지역교육청에 서면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는 정당한 사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 보호 조치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당국은 요구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회신해야 한다.
 - 승인의 경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물질적 수단과 사법 보조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자유를 가지며, 변호인을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 당국이 이를 도울 수 있다.
 - 거절의 경우 합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 한다.

<표 III-12> 프랑스의 교원 보호 조치(MENJ, 2024)

영역	내용
지지 및 보호 활동	교원 보존조치 교원 개별 상담 의료조치 가해자(다른 교직원 또는 학생) 소집 및 거리두기 조치 :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징계조치(3.1.2)에서 서술) 검사에게 피해 사실 고발 등

영역	내용
교직원의 사법절차 보조	교원의 변호인 선임 보조 교원의 변호인 수임료 지원 사법절차에 따른 결근 인정 및 교통비 지원 사법절차에 따른 비용 지원
교직원이 입은 피해 회복	교직원이 입은 모든 피해(경제적, 개인적,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에 대한 회복 지원 가해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라. 학교 보안 및 안전을 위한 교육부 가이드라인 (2024년 4월 발간)

- 프랑스에서는 최근 학교 보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대
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음.²³⁾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테러 경보 최고등급
이 시행 중이며, 교육부에서는 4월 학교 보안 및 안전을 위한 지침서를 발
간했음. 해당 지침은 모든 신체 및 언어적 폭력 및 위협을 즉각적으로 교
육청에 신고할 것, 피해자에 대한 빠른 대처, 단위 학교에서 안전조치 강화
를 주축으로 하고 있음. 이는 학생과 교원을 모두 보호하는 취지로 작성된
문서이지만, 교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MENJ, 2024).
- 먼저 교직원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사실은 무조건 학교장이 ‘학교
사건(Fait établissement)’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이때 피해 사실이란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확인된 피해 사건과 해당 교원
의 신상 등이 온라인에 퍼지게 된 사이버 폭력 사건까지를 포함함. 교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은 일차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고 위협을 줄
이기 위한 보존 조치를 시행해야 함. 보존 조치는 피해 교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가해자의 학교 접근을 막는 것임. 그리고 공무원 직무 보호
를 시행함. 상황이 더 심각할 경우 정부 핫라인(CMVA)으로 신고하며, 앞선
보존 조치와 공무원 직무보호를 시행하는 동시에 검사를 통해 고소할 수
있음.

23) 중고등학교 온라인 학업 공간의 메시지함에 테러 위협 메시지가 전송되어 해당 서비스가 일시적
으로 중지되었으며, 파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히잡을 착용한 무슬림 여학생에게 히잡을 벗을
것을 명령했다가 (프랑스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이 짙은 의복과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음) 논란이 불거져 이로 인해 살인 위협을 받아 사직한 바 있음 (르몽드지 기사)
https://www.lemonde.fr/societe/article/2024/03/29/securite-a-l-ecole-la-ministre-de-l-education-nicole-belloubet-en-quete-d-une-riposte_6224945_3224.html

- 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교직원 회복을 위해 해당 피해 교원과 학교의 관리자, 교육공동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관리자의 처리 과정을 돕고 제도적으로 지지하며, 필요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사안 처리에 참여할 수 있음. 또한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원의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또한 해당 피해 사실이 미디어에 보도될 경우 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책임짐.

마. 프랑스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 프랑스에서 학생에 의해 일어나는 교권 침해는 학교 내부규정의 별과 징계에 의해, 학부모에 의한 신고나 고소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교육청의 지원 체계에 의해, 그리고 교원의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거나 테러의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 보호조치 및 경찰신고, 고소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통해 교원 보호가 제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구조적으로 교원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 생활지도 교사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국보다는 교권 피해의 여지가 적긴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도 교원의 피해 사실이 매우 이슈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조치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음.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라는 한국과는 다른 위협이 존재한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논의

- 미국의 사례는 교권 보호와 회복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접근을 보여줌. 미국의 교육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각 주와 교육구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현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교사의 권위를 'teachers' authority'로 이해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전문 지식에 대한 자발적 존중을 강조함. 이는 국내 교권 보호 정책에서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일본의 사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교사에 대한 정신적 지원을 강조함. 일본은 '몬스터 페어런츠'라 불리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정신과 의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사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직무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둠. 국내에서도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팀 구성과 교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영국의 사례는 학교 책임제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접근을 보여줌. 영국은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수·학습과 직결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교사의 채용 및 근속 전략하에 교원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직업적 매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국내에서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시사함.
- 프랑스의 사례는 교사와 생활지도 교사를 분리하여 교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을 보여줌. 프랑스는 교사와 별도로 생활지도 교사를 두어 학생생활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며, 교사가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교육청과 관리자, 경찰 등의 지원체계를 통해 교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이는 국내에서도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들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 교사의 전문성 제고, 심리적 지원, 학교와 교육청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교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은 교사와 학

생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며,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마지막으로, 각국의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회복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을 위한 FGI 분석

1. FGI(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개요
2.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현상에 대한 인식
3. 교권 침해 원인과 결과
4. 교권 침해 사례 및 회복
5.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평가
6.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7.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직무조정 방안 탐색
8.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I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을 위한 FGI 분석

1. FGI(Focused Group Interview) 조사 개요

-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으며, 크게 두 차례로 구분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음.
- FGI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1차 FGI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리자, 교사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고, 2차 FGI는 실제 교권 침해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음.
- 1차 FGI 대상 선정은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음.
 - 기본적으로는 학교급과 교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함. 특히, 교권 회복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교원 단체를 포함하여 선정함.
 - FGI 연구 참여자의 소속기관은 국내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교수, 관련 국가교육 연구기관의 박사, 국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 등임.
- 추가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 직무 조정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교직 경력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직 교사의 직무 조정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음.
 -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의 직무(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중학교는 생활지도와 수업지도,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중심으로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와 해당 업무의 특성과 요인, 직무 조정 방향 및 방안을 조사함.
- 2차 FGI는 교권 침해를 겪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의 주도로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을 주위로부터 소개받아서 선정하였음. 최종 면담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면담 참여를 허락한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면담 전에 사전질문지를 보내어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면담에서는 학교명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음.

- 학교급별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유아, 특수, 초등, 중등 등 학교급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고르게 선정하였음.
- FGI는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권과 관련한 어려움과 앞으로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담함.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주제에 따라 내용을 체계화하고 요약화하여 교권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아울러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원고를 요청하고 연구진과 논의하여 FGI 분석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지 검토하였음.
- FGI는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현재의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현상에 대한 인식, 교권 침해 원인과 결과, 교권 침해 사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평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상호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연구자가 꼬리 질문을 통해 현상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인터뷰 전사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①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현상에 대한 인식 ②교권 침해 원인과 결과 ③교권 침해 사례 및 회복 ④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평가 ⑤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음. 2차례에 걸쳐 실시된 FGI 참여자의 정보는 <표 V-1>과 같음.

<표 IV-1> 연구 참여자 정보

일시		참여자	성별
1차 FGI	2024년 1-2월	박사 A	여
		박사 B	남
		교사 C	여
		교사 D	여
		교사 E	여

일시	참여자	성별
2차 FGI 2024년 3월	교사 F	남
	교사 G	남
	교사 H	여
	교사 R	여
	교사 S	남
	교사 T	남
	교수 I	여
	교수 J	남
	교장 K	남
	교감 L	남
	교사 M	여
	교사 N	남
	교사 O	남
	교사 P	여
	교사 Q	남

2.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현상에 대한 인식

가. 교권의 개념

1) 교육권은 교권을 포함하는 개념

-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인식이 있음. 한편 교육권은 더 광의의 의미임에 반하여 교권은 교사의 권리만 챙긴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음. 교권, 교육활동 보호 등의 용어에서 포괄적인 교육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교권 회복, 교권 치유 등의 개념 확장의 필요성

-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교권 회복에 관한 법률은 없는 현실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교권 회복, 교권 치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실질적인 현장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담을 수 있는 교권 회복의 개념을 확장하여야 함.

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관계

1) 교권은 학생 인권을 포함하는 개념

- “교육활동 보호” 또는 “교육권”은 “교권”이라는 용어보다 학생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는 “교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 이슈와 교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2) 교권은 학생 교육을 위해 존중되어야 함

- 교권은 교사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하기 위해 존중되어야 하는 것임.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에 비해 강조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앞으로는 교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다. 추락한 교권

1) 교사가 교육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

- 최근 교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음. 공급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 지상주의 인식이 교육에도 영향이 있어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자라는 인식이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 교사가 가해자, 기득권자라는 인식

- 교사가 공급자, 가해자, 권력자인 시대에 학생 인권 훼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짐. 최근에는 교사를 기득권자로 보거나, 교사에게 함부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함.

3)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함

- 최근 이슈화된 초등학교의 사건 이후 교사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학교와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받는 상황

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함. 개선을 위해 교사가 교육하는 본연의 업무 이외의 것은 덜어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교권 침해 원인파 결과

가. 교권 침해의 원인

1) 학생 인권은 높아지고 교권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학교 자율성을 강조하고 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은 향상된 것에 비하여, 교사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 최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상황이 되도록 교권을 향상시킬 방법이 필요함.

2) 아동학대법 관련 학부모의 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권리 행사

- 아동학대법 관련하여 학부모들에게 학습이 되어 교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녀에게 하는 말을 폭언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아동학대법에 의해 신고되면 무조건 직위해제 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단에서 억울하게 분리되는 상황이 있음.

3) 아동학대 등에 대한 인식과 신고가 늘어나면서 교권이 침해됨

-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 등이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신고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음. 아동학대와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고하는 상황임. 이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난치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

4) 학생의 건강과 돌봄까지 교사와 학교에 의존하는 경향

- 최근 교사가 교육하는 것 이외에 학생들을 돌보고,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등의 기능까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이것은 교사가 정년이 보장된 국가 공무원이기에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함. 이러한 인식에 정치권과 언론이 가세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 신체적 활동 제공 등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음. 이후 학교와 교사의 추가적인 역할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음.

5) 교권 침해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 부족

-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생활고시 해설서가 배포되었으나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되는 정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임.

나. 교권 침해의 결과

1) 교사가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

-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강조한 것과 교권 침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바람직하지만 교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하거나 교사가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함.

2)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지 않고 교권 침해가 누적됨

- 교권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한편으로 교사 자신의 부족함을 알리거나 교권 보호위원회 이후 진행과 교사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 영향으로 지속적인 교권 침해가 누적되는 상황이 되기도 함.

3)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 누적

- 면담에 응한 현장 교원들은 공통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각종 피해를 언급하였음. 가장 큰 피해로 심리적·정신적 피해(자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를 지적하였으며, 물질적 혹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기제가 미흡하여 본인 스스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였음.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음.

4. 교권 침해 사례 및 회복

가. 고등학교 교권 침해 사례

1) 고등학교 상대평가 제도에서의 교권 침해 양상

-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시스템에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로 교권 침해가 나타나기도 함. 평가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함.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잠을 자는 경우도 많음.

2) 불법 촬영, 사이버 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 사례

- 남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합성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 수준의 교권 침해 사례도 있음.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을 진행 또는 대비하는 상황도 있어서 교사의 지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3) 일상용어로 욕설을 쓰는 고등학생을 지도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욕설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에서도 욕을 하거나 강한 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교사가 지도를 하면,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거나 벌금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음.

4)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한 자괴감과 정상적인 훈육조치 망설이게 되는 교사들

-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에 대해서 교사들은 부드러운 언어지도(아동학대 신고를 피하기 위해)를 하거나 자괴감에 빠지거나 교사로서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교사의 정상적인 훈육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나타내는 학생들마저 참고 견뎌야 하는 학

교문화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괴감에 빠지는 교사들이 많음.

5)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교사들

- 특성화고의 경우, 교사의 역할과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했을 때 고소당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나. 중학교 교권 침해 사례

1)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중학생

- 선생님께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못 한다는 인식을 하는 중학생에게 팽배해 있는 상황임. 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최종 판결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임. 오히려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사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상황임.

2) 욕하는 중학생과 심한 충격을 받는 교사

- 강당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가 무례한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반말로 욕을 하는 행동에 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물치료까지 한 교사의 사례가 있음.
- 조퇴가 지속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에게 충격을 받은 교사는 112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음. 관련한 교권 보호위원회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함. 오히려 교사는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중학교 여자 선생님들께 욕설을 한 학생에 대해서 지도하는 교사에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한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등의 사례에서 교사는 추가 지도하기가 어렵고 상처받는 상황이 됨.

3) 교과서 가지고 다니기 지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300만 원 벌금 처벌

- 중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 학생의 무례한 대답에 대해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30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음.

4) 핸드폰 소지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중고등학생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핸드폰 소지와 관련한 지도가 어려운 상황임. 학생이 핸드폰을 쉬는 시간에 사용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학생 인권 등의 이유로 교사가 적당한 지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중학생의 생활지도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남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을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편이나, 중학교에서는 강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도하게 됨.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민원 정도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함.

6) 밤늦은 전화, 욕설과 협박, 과도한 민원과 요구

- 퇴근 시간 이후, 심지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전화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학생들 간의 문제에 대해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학부모들로 인해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7) 교권 보호위원회 신고를 꺼리게 되는 교직 문화

- 명백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칠까 봐 두려워 교권 보호위원회 신고를 꺼리게 되고, 신고해도 교권 침해로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 교사들은 가급적 신고를 하지 않고 참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다. 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례

1) 기본적인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여겨지고 수업 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 학생의 생활지도가 일부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

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글 같은 상태의 교실이 있기도 하고, 1학년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있기도 함.

-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한 교권 침해는 교실 내에서의 수업 방해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세워두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여러 차례의 교권 보호위원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 어려운 현실임. 나아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2) ADHD 등의 학생 질병과 관련한 교사 의견에 관한 사례

-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 생활에서 개인적인 정서적 상황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교사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ADHD 등의 학생 질병과 관련하여 교사가 학부모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함.
- ADHD 등이 있는 한 명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나머지 여러 명 학생의 수업이 무시되는 상황이 있음. 필요한 경우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는 매우 바람직함.

3) 초등학교 졸업생이 초등교사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례

- 초등학교 졸업생이 초등교사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이상한 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을 한 사례가 있음. 졸업생이라서 학교 내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라. 특수학교 교권 침해 사례

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특수교사

- 특수학교는 특성상 학생들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학생들이 많으며, 부모들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학교가 해주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구나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2) 잦은 신체적 위협으로 인한 소극적인 교육활동 태도 견지

-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많으며, 이들이 가지는 공격성으로 인해 교사들은 수시로 신체적 상해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 신체적 위협이 누적됨으로 인해 특수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태도를 점점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음.

3) 비협조적인 관리자, 참고 견디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통한 회복

-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조금 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학교문화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교권 침해로 겪은 해당 학교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음.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는 그저 참고 견디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통해 해당 학교에서의 기억이 회미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마. 유치원 교권 침해 사례

1) 교권 침해가 가장 심한 유치원

- 유치원에서는 교권 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선택 사항임. 현실은 교권 침해가 여러 학교급에서 가장 심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악성 민원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만족할 때까지 부당한 요구에 응대하라고 지시하기도 함.

2)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충실히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

- 유치원 교육 목표인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등을 우려하는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도 함. 이러한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초등학교에서도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유치원 관리자의 인식과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함

- 유치원의 부당한 교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의 인식 변화임. 이를 위해서 관리자가 부당한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 교사를 보호하기 위

한 조치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함.

4) 유치원 관리자의 바람직한 인식과 노력으로 바람직한 해결

-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원칙에 따라 학부모의 오해를 설득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노력이 바람직한 해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음. 정당한 지도를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한 설명과 보조 교사 등의 대안 제시의 사례가 있음.

바. 교권 침해 회복 과정

1) 본인 스스로 참고 견디는 시간의 연속

- 면담에 응한 교사들은 상담 등 교권 침해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까지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교나 주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스스로 견뎌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음.

2) 학생,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안내

- 교권 침해 이후 교사들은 스스로 교권 침해를 겪지 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면담을 통해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5.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대책 평가

가.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4법

1)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기대가 있음

-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여겨져서 고소, 신고 당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함.

-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국민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 법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근거로 조례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함.

2) 2023년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하여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음

-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하여 2023년 말에 각 학교에서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개정하였음.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적용 초기라고 할 수 있음.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개선이 기대됨.
- 생활지도 고시는 최소한의 생활지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바람직함. 한 명의 문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나머지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생활지도 고시, 학교생활 인권 규정의 적용에서의 딜레마

-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도 교사마다 지도 방식이 다를 수 있음. 지도 과정에 대한 실수, 학부모 민원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교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임.

4) 생활 인권 규정, 교권 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

-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훈육의 근거가 생긴 것은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훈육의 단계가 포괄적인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함. 생활 인권 규정과 교권 보호위원회가 활발하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 개선이 필요함

-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교육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최근 아동학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에 비해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게 이루어져야 함.

나.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함

1) 교사의 정당한 교육에 위협하는 아동학대처벌법

- 한편으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임,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거나 보완되기를 기대함.

2) 교권 침해 학생 보호 방안으로 악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

- 최근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

3) 교육활동 중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교육청이 처리해야 함

-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의 자문을 통해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함. 또한 교육지원청에 교권 보호 팀을 구성하여 각 사안을 개별 교사가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야 함.

4)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사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학부모가 있음. 이것으로 이익을 본 학부모는 학교급을 올라갈 때마다 반복하기도 함. 이러한 악의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공적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소송이나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다. 교권 보호위원회

1) 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사안이 매우 많은 현실

- 교원 보호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렸을 때만 집계됨. 그러나 교권 보호위원회까지 가지 않은 건수가 매우 많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임. 따라서 교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한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FGI 등의 조사를 통하여 교권 침해 관련 연구를 수행함.

- 학생이 교사에 대한 성적인 말,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교권 침해의 경우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대하는 어려움 등으로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지 않는 사례가 많음.

2) 교권 보호위원회 진행에 대해 변호사, 법무법인으로 상대하는 학부모

- 교권 침해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교사의 아동학대를 검토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있음. 관련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훈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됨.
- 학교폭력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는 교사에게 매뉴얼에 따라 자기 자녀를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함.

라. 교권 치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2016년부터 교원치유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의무로 한 규정이 있었음. 교원치유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는 현직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사 웰빙 지원방안, 교권 관련 연구물 등도 탑재되어 있음.

6.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가.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1) 교사와 학부모 간 적절한 소통 방법에 대한 대안

-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이 싱가포르 등의 예와 같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이기도 함. 한편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교육을 위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학부모 대상의 학교 이해 교육

- 오히려 학부모 대상의 부모 교육을 모든 학부모가 필수로 이수하게 함으로

써 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부모 교육의 의무화가 제안되기도 하였음.

3) 교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및 교사 대상 민원 응대 교육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즉, 교권 침해 사안에 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이 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 민원인 것과 민원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가 필요함.

나. 교사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정책

- 교사가 생활지도 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서적인 상태는 교육 상황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교사가 트라우마에 가까운 상처받는 상태가 아닌 편안한 웰빙의 상태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다. 소송 등의 사안은 교육청, 교육감이 진행

1) 교사 직무수행 과정의 소송에 대한 지원

-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부모의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감이 진행해야 함. 현재 교사 개인이 소송에 대하여 진행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임.
- 폭력 수위가 높은 사안은 범죄로 보고 상위기관이나 경찰에서 처리해야 함.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폭력에 해당하는 과도한 사안까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

2) 교육지원청의 단위 학교 지원 강화

- 단위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면, 교육지원청에서 TF팀 등의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의 대응을 수행한

다면 학교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함.

3)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예방 효과

-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단위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상급 기관에서의 강력한 조치와 제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라.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 현장 개선

1)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 토론 수업, 협력 수업, 문제해결학습 등의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 요소가 더 많다는 연구가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교육현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2) 교사의 평가권 보장

- 초등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수행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음. 수업에 집중을 못 하고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 민원 등을 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 중학교에서는 성적 결과에 대한 소송이 있는 사례도 있음.
-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가 학생의 평가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교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교사가 교수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교권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음.

3)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학교

-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을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 오히려 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를 잘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임.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학교로의 변화가 필요함.

4) 교권 침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단

위 학교문화 정착

- 교사들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특히 관리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바라고 있었으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음.

마.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필요

-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교육부 교육정책의 개발 속도가 다른 부분이 있음. 학생생활지도 고시, 나이스 출결 관련 등의 정책 개선 과정에서도 그 속도 차를 느낄 수 있었음.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시에 정책 개선이라는 것이 필요함.

바. 교사 직무에 적합한 처우

1)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우

- 교사의 급여가 전문성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또한 교직의 보람과 명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우수한 대입 성적과 능력에 비하여 부족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교사들과 사회 전반에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교사의 보수가 적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최근의 일부 수당의 상승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매스컴에서 제시된 인상률의 숫자에 비해서 실제 인상된 급여는 부족한 상황임. 교사의 직무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사. 교사, 비교과 교사²⁴⁾, 공무원직, 행정직의 업무 조정

1) 교사, 공무원직, 행정직의 업무 조정

- 교육대학교 졸업, 임용고시 합격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공무원이 되면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교사가 공무원직, 행정직과의 직무 갈등 상황을 겪게 됨. 서로 협력해야 하는 동료들 간에 업무 표준안 등의 해결 방

24)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를 의미함.

법이 필요함.

- 행정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된 행정실무사가 주요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여전히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교사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공무원직 노조를 통해 학교와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함.
-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가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급식, 시설관리, CCTV 관리 등의 업무는 학교에 교사가 아닌 공무원직, 행정직이 수행하도록 업무 조정이 필요함.
-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공무원직, 행정직이 학교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빠른 보편화 과정에서 교사에게 교육이 아닌 다른 업무까지 부과하는 과정을 거쳤음. 이제는 학교의 여러 인력이 각각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비교과 교사(보건, 영양, 사서, 상담) 명칭, 업무 조정

-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와 교사와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음. 비교과 교사 수가 증가하면서 담임교사들이 지도해야 하는 학생 수는 더 많아진다는 인식이 있음.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교사, 보조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 조정이 필요함.

7.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직무조정 방안 탐색

가. 초등학교

1)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업무 특성 및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 방과후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이 많지 않은 업무를 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방과후 강사 등의 민원이 발생함. 예컨대, 희망 방과후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및 강사로 지급 및 환급, 수강료 미납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와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함.
- 또한, 방과후학교 부서가 많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도 취소에 따른 수업료 및 교재비 반환, 강사료 지급 등과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실 직원과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 처리 및 고충의 양상은 학교 규모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큰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 질에 대한 민원,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사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교권 침해로 겪는 경우가 있음. 한편, 주로 농어촌에 위치한 작은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방과후학교 관련 민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최근 늘봄학교 정책에서도 학교 교사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방과후학교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도입에는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나 학교에서 진행하면서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상황이었음. 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단호한 조정이 필요함.
-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하지 못한 수업 연구를 위한 업무는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조정이 필요함.

2)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직무 조정 방향 및 방안

- 교사들은 수업, 생활교육, 행정업무, 수업 준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수강 및 연구 활동,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연계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성격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수행함. 교육 수요가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관련 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수는 줄어들고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행정업무,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 등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및 관리, 학생이 희망하는 방과후 수업 미선정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등 수업 및 학생 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

과 관련이 낮은 업무는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에 따라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업무 지원의 질이 달라 지므로 교무행정전담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로 환급 처리, 수강료 미납금 처리 등 회계 업무 관련 민원 처리는 학교 행정실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사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단위 학교 내 업무량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위 학교 내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고, 불편한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중학교

1)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업무 특성 및 내용

- (생활지도)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민원과 교권 침해는 학부모가 자녀가 관여된 갈등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는 학부모의 자녀 중심 사고편향에서 기인함.
- (학생평가) 교사의 평가권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가 주로 발생함.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기록하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엇이 부족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민원을 제기하고, 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기도 함.
-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관련하여 교권 침해가 발생함. 교사들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교사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재구성 시 국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재구성해야 함. 한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실행할 때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하여 교권을 침해하기도 함.

2)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 조정 방향 및 방안

-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부모의 좁은 사고”, “교사의 업무 이해도 부족”,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적 권위 자체를 불인정” 등이 제기됨. 즉, 자기 자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학부모의 좁은 사고, 학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업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라고 봄.
 -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가 많은데, 불만 상황의 맥락과 여러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입장과 생각을 유의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교사는 학교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적인 권한과 책임, 의무,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함. 교사는 학교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교육활동을 해야 함. 이러한 지식과 이해 없이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겠지, 법에서도 나의 노력을 인정해 주겠지” 라고 착각하는 것이 교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적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교사도 갈아치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교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존경, 권위가 약화되고,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남.
- 이러한 원인을 토대로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함. 예컨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민원 창구를 외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을 해당 교사나 해당 학교에 직접 제기하기보다 학교 외부의 제3의 전문기구를 만들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의 전문기구에서는 민원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판단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반발

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사나 학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민원이나 요구도 줄어들게 될 것임. 한편,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임.

다. 고등학교

1)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업무 특성 및 내용

- (학교 성적 및 생활지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학교 성적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함.
 - 시험 및 성적 등 학생평가·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등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무리한 직접적 수정 요구, 교육청, 교육부 등 상급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함.
 - 학교폭력 처리, 생활지도, 징계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권 침해가 발생함.
- (수업 중 학생 지도) 교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은 수업 중 학생의 교사 지도 불응,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감정적 폭행이 주를 이룸.
- (출결 관리) 코로나, 독감 등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무리한 인정 결석 처리 요구, 체험학습 인정 처리 등을 둘러싼 학생 및 학부모의 갈등, 민원이 발생함.
- (동료 및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배정) 대부분의 교권 침해가 학생과 학부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교권 침해는 동료 교사와 관리자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 일부 교사에게만 부당한 업무 몰아주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 간 협력과 사기 저하가 발생함.

2)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업무 조정 방향 및 방안

- 학생 출석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출결 처리 기준 명확화
 - 출결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출석 관련 민원 대응을 교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출결 확인 전화나 방문, 학업 중단 숙려 중인 학생 및 학부모의 관리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함.
- 학생평가 및 성적 관련 민원 처리 매뉴얼 공식화
 -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성적 관련 민원 처리 매뉴얼을 공식화해서 의미 없는 사소한 민원에 대한 복잡한 처리 절차로 인한 교사의 교육 활동 위축과 피로를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식 성적 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의 채점과 부분 점수 부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처리함.
- 학교별 민원 처리 전담/전문 대응팀 구성·운영
 - 담임교사에게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민원 처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장 교사에 상응하는 수업 시수 감면 및 수당 등의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8. 주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FGI는 교원, 관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참가자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됨. 또한 교사 직무 조정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교권 보호와 직결되는 교사의 직무에 대한 인식과 조정 방안을 조사함.
- 조사 결과,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학부모의 과도한 권리 행사, 학생들의 무분별한 신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함. 이러한 침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임. 교사들은 교권 침해 상황을 피하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며,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다양한 학교급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불법 촬영, 욕설, 폭력, 과도한 학부모 요구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남. 이러한 사례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과 교사 직무 조정이 필수적임. 교사의 본연의 업무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절차가 필요하며, 교권 회복과 치유에 대한 법률적 정의도 필요함.
-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임. 아동학대법과 관련된 학부모 교육과 학생들에게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교사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제보와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

1. 연구를 통해 드러난 현상 및 원인
2. 정책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
3.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제안

V.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탐색

- 본 연구에서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는 비록 현재 법률에는 교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자치법규인 조례에 정의된 교권 개념이나 선행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권 개념과 일치함.
- 다만, 이러한 교권의 개념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에 대한 침해 즉,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침해임.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다양한 자유권(표현의 자유나 정신적 자유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교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장애 요인으로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이슈임.
- 이러한 이유로 교권과 관련된 이슈는 상당 부분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본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연구를 통해 드러난 현상 및 원인

가. 교권의 현 수준에 대한 인식

- 교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 우선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교권 보호위원회의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의 가장 큰 수치임. 2012년의 경우 교권 보호 종합대책(2012)이 수립된 해로서 교권 침해로 인한 문제 상황이 심각한 시기였는데 현재도 그때와 비슷한 교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교육부의 2019~2022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중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심각하며,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

- 게 나타났음. 또한 침해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이 일어났음.
- 한국교총에서 집계하는 통계에서도 코로나 시기 주춤했던 교권 침해 현황은 2021년부터 증가하여 2023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또한 KEDI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2019년보다 2023년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는 결과가 있었음.
 - 이처럼 낮아진 교권에 대한 인식, 심각해진 교권 침해의 정도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나타냄.

나. 교권 침해의 심각성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교원 치유지원센터 지원 건수에서 나타남. 교원 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2020년 19,000여 건에서 2022년 1학기에서만 36,000건으로 폭증하였음.
- 교권 침해로 인해 교원들이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에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로 전해질 수밖에 없음. 교사들은 2023년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이 개정되고 후속조치들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처벌법 상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인 생활지도 태도를 보이게 됨.
-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학교 내 질서를 어기고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단호하고 직접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음.
- 이러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 개인이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관리자의 인식 제고, 교권 보호와 관련된 인력 충원 등 교권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도 강화해야 함.

다. 교권 침해의 원인

- KEDI 교육 여론조사(2021~2023)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음.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제재의 미흡 등을 선택하였음(2023년 기준, 일반인 응답).

-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의 인성 이슈가 제기됨.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학생의 권리 측면만을 강조하고 책임이나 의무에 대한 경시가 학생의 인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됨.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되고 있고, 인성교육의 목표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KEDI 교육 여론조사(2012~2023)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인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된 이후 2022년까지 전반적으로 높아지다가 2023년 인성 수준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교권 침해와 학생 인성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음.
- 학교에서 교권 이슈가 커지게 된 이유로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불신이 꼽히고 있음. KEDI 교육 여론조사(2016~2023) 자료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가 2017년에서 2022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들어 급격히 낮아졌음. 다만,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는 2022년과 2023년에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교권 침해 현상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해석됨. 이는 일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자로서 학생이나 보호자는 해당 집단의 소수에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2. 정책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

가. 선행연구의 논의

- KEDI 교육 여론조사(2021)에서 물어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일반여론은 침해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 예방 교육·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 제고,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역량 강화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교권 관련 선행연구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의 관점에서 나온 제언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제언들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분석하였음.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교권 관련 연구 및 보고서 중 제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헌 46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제언을 정리하였음.

<표 V-1> 교권 관련 선행연구 제언의 범주화 결과

대분류	소분류	빈도(건)
교권 관련 법제도 개선 (77)	교권 침해자 강력 조치	14
	교사 권한의 법적 규정	11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강화	10
	교권의 개념과 범위 정립	8
	교권 보호 관련 법령 개정	7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	6
	교사의 기본권 보장	5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5
	학교와 교사의 조치 권한 규정	5
	교육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 규정	4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2
교권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27)	교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15
	문제 행동 학생 치료 체제 구축	5
	출결 및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5
	교원 배상책임보험 강화	2
피해 교원 지원방안 마련 (25)	교원 치유센터 역할 제고	10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시스템 구축	9
	교권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	6
	교직 사회 내부의 문화 변화	8
교권 존중 문화 조성 (21)	학교 구성원 간 관계 개선	6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5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	2
	아동학대 조사 제도 개선	12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21)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	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4

대분류	소분류	빈도(건)
교원 전문성 신장 (19)	교원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9
	교원의 전문성 향상 노력	7
	교원 양성과정 강화	3
교권 보호 매뉴얼 개발 (19)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10
	구체적인 교권 침해 대응 방안(매뉴얼) 마련	9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17)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17
교권 보호위원회 강화 (15)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8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7
교권 관련 연구 확대 (7)	교권 관련 연구 확대	7
관리자 역할 제고 (5)	관리자 역량 강화	3
	관리자 책무성 강화	2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4)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4
기타 (3)	교직단체 역할 활성화	1
	생활지도 전문교사 신설	1
	학교폭력 법안 개정	1
		260

- 대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언급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은 교권 관련 법제도 개선이었고, 그다음부터 교권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피해 교원 지원방안 마련, 교권 존중 문화조성,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권 보호 매뉴얼 개발,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교권 보호위원회 강화, 교권 관련 연구 확대, 관리자 역할 제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기타 순이었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이후 교권관련 법률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교권 보호 정책들이 상당수의 제안된 정책들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이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구체적으로 보면 <표 V-2>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많은 개선 제안사항이 최근의 교권회복 및 보호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많은 제안 사항들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V-2> 선행연구의 제언과 현 법령 및 제도와의 비교

대분류	반영 여부	소분류 항목별 현 법령 및 제도 반영 여부 및 내용
교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반영	- 교권 침해자 강력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 활동 보호 법제화, 학교와 교사의 조치 권한 규정, 교육 당사 자 간 권리의무관계 규정,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절차 강화 -> 초·중·고등교육법(제18조, 제18조의4, 제20조의2),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 개정과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상당 부분 반영됨.
	일부 반영 및 미반영	- 교권의 개념과 범위 정립, 교사 권한의 법적 규정, 교사의 기본권 보장 -> 자치법규(조례)에서는 교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부터 교육권, 교육활동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교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한 조항은 없음. -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률에 반영되지 않음.
교권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27)	반영	- 교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교원 배상책임보험 강화 -> 교원지위법(제14조, 제22조, 제25조 등)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 교육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관리 등을 명시함. - 출결 및 민원 처리시스템 구축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민원 대응 방안 마련, 온라인 민원 및 출결 처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됨.
	일부 반영	- 문제행동 학생 치료 체제구축 -> 교원지위법(제25조)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으나, 문제행동 학생을 처벌의 측면이 아니라 예방의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치료받도록 하는 체제는 미흡함.
피해 교원 지원방안 마련 (25)	반영	- 교원 치유센터 역할 제고,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시스템 구축, 교권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 -> 교원지위법(제23조) 개정으로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및 전문 치료 지원, 법률지원 및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교권 존중 문화 조성	일부 반영	교직 사회 내부의 문화 변화, 학교 구성원 간 관계 개선,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개선

대분류	반영 여부	소분류 항목별 현 법령 및 제도 반영 여부 및 내용
(2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서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을 통한 캠페인 성격의 활동 예시를 제시하는 등 일부 반영되었음.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21)	반영	• 아동학대 조사 제도 개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 아동학대 사례 판단 시 교육감 의견 참고 등이 반영되었음.
	미반영	•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 →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은 반영되지 않았음.
교원 전문성 신장 (19)	일부 반영	• 교원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교원의 전문성 향상 노력, 교원 양성과정 강화 → 교원지위법 시행령(제2조의3)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연수 및 홍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만,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이후에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노력, 교원 양성과정 강화 등의 논의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
교권 보호 매뉴얼 개발 (19)	일부 반영	•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 구체적인 교권 침해 대응 방안(매뉴얼) 마련 →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음. 다만, 교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17)	반영	•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교원지위법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음.
교권 보호위원회 강화 (15)	반영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 미반영되었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제언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교권 관련	반영	• 교권 관련 연구 확대

대분류	반영 여부	소분류 항목별 현 법령 및 제도 반영 여부 및 내용
연구 확대 (7)		→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면서 교권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 또한, 교원지위법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
관리자 역할 제고 (5)	반영	• 관리자 역량 강화, 관리자 책무성 강화 → 교원지위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에 학교의 장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함. 그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의 신고 의무, 민원 대응책임 등이 반영됨. 이에 따라 관리자 역량 강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4)	일부 반영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 그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 행정업무가 경감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이 인상되어 교사의 생활지도 업무, 행정업무에 대해 처우개선이 일부 반영됨.
기타 (3)	반영	• 학교폭력 법안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조력인 제도가 신설되어 퇴직 교원이나 경찰공무원 등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지원하게 되었음.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겪게 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직원역할 활성화 → 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교직원체 가입 교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역할이 강화됨.
	일부 반영	• 생활지도 전문교사 신설 → 생활지도 전문교사 신설은 미반영됨. 단,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제언의 취지가 일부 해소됨.

나. 정책적 흐름

1) 교육부 정책

- 2011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012년 교권 보호 종합대책, 2022년과 23년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일관성 있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요인들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였음.

- 2012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방안’ 문서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먼저 ‘활동(교육), 침해, 교원, 학생, 학교, 보호(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키워드로 나타났음.
- 다만, 각 해당연도 방안의 문서 분량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워드 빈도는 각각의 문서마다 달랐음. 각 해당연도 상위 20개의 키워드 중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위 빈도 키워드를 제외하고 난 후 절반의 키워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①교권 침해-②학부모-③치료-④예방-⑤특별-⑥위원회-⑦학교장-⑧상담’, 2021년에는 ‘①보호-②치유-③센터-④학생-⑤예방-⑥강화-⑦교권-⑧운영’, 2022년에는 ‘①조치-②교권-③지원-④위원회-⑤생활-⑥행위-⑦피해-⑧학부모’, 2023년에는 ‘①민원-②학부모-③보호-④교권-⑤생활-⑥지원-⑦조치-⑧대응’ 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그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교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 조치(피해 교원 보호 및 교권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교권 보호 인프라 확충(교원치유센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만, 2023년의 경우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음. 교육부의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법제화되었음. 특히,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의 기준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통해 확립되고 구체적인 매뉴얼(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이 제작됨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근거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음.

2) 시도교육청 정책

-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부 정책에 근거를 둔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발표·시행하고 있음. 앞서 살펴본 데로 교육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시

도별 특성에 맞는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은 일반적으로 교권 침해 예방 및 문화조성,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교권 보호 관련 역량 강화 및 지원 영역 등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 법령의 흐름

- 2022년과 2023년의 교권 보호 정책은 교권 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과 밀접하게 관련됨.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례를 개정 및 제정하였음.
- 「교육기본법」상 보호자의 교권 존중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유아교육법」상 원장의 민원 처리의 책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호자의 교원 존중 의무를 부여하였음. 「초·중등교육법」에서도 학생의 교직원 인권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특히, 동법 시행령에서 학생생활지도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장 교원들이 불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역시 개편되었음.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조사 시에도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음.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하였고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 이전 설치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특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2017년 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의 개정)하였음.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포함하였음.

다. 문제점과 쟁점 논의

1)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최근 교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일부 교사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보인다면 교권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또한 교사들이 교권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너무 축소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일련의 교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은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그간 드러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시에 터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더욱이, 이러한 교권 침해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교직의 정체성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동엽, 2024).
- 교사는 교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서 개인적 유용성 동기(안정된 직업, 개인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안정된 수입의 보장 등)뿐만 아니라 내재적 동기(학생이 좋아서,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학생들의 사회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를 균형 있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이동엽, 2024). 현재의 교권 침해 이슈의 상당부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 교사의 본질적인 활동과 역할이 제한되어 헌신과 열정을 가진 교사보다는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교직에 적합한 교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학생 간의 갈등에 개입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제나 학습을 모니터링하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신고당하는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202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직원 9910명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음(김민석, 2023.7.25.).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관리되고 있는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 9,910명 등록되어 있다는 것임. 교직원이 아동학대행위자가 된 수는 2014년 244건에서 2019년 2,30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 2020년 1,000건으로 갑자

기 줄어들었음. 다만, 21년 1,229건, 22년 1,702건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음. 현재까지 11,600여명 이상의 교직원이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행위자²⁵⁾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임.

- 증가하는 아동학생 신고 및 그로 인한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되게 되면 교사들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생들과의 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2022년 3,035건인 교육활동 침해 현황이 2023년도에 5,050건으로 급증했다는 사실(교육부, 2024)과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병가나 휴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떠남으로써 남겨진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현시점은 교권 침해의 문제는 교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2) 교권 보호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보완 필요

-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관련 법률 개정은 오랜 기간 서서히 이루어져 왔음(전제상, 2024). 특히, 2016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것과 2023년 일련의 교권 보호 관련 법률(「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23.9.), 「아동학대처벌법」(* 23.12.))이 개정된 것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교사들은 2023년에 진행된 법률 개정이 교사들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학부 모의 교사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

25) 아동학대행위자는 수사기관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국가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에 22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입함으로써 혐의없음 종결 비율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신고에 대한 불안감과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협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작년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포함되었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교사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상황임. 이에 22대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과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이와 더불어 교사의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학교안전법」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임. 근래에 교사의 체험학습 인솔이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김지애, 2024.5.24.). 이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학교 밖 학습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 이렇듯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률은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시행할 제도적 기반 역시 보다 촘촘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교권 회복 및 보호 정책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후행한다는 주장이 있음. 즉, 학교폭력 근절 관련 법률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포함된 대책들이 일정한 시기를 거쳐 교권 회복 및 보호 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임. 예컨대,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학생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교권 보호위원회의 대책이 이를 닦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최근 교권 보호위원회 상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주장 역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과거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다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된 것처럼 교권 보호조치도 학교 내

교권 보호위원회에서 2024년 3월28일자로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도 한 예임.

- 이와 유사하게 학교폭력대책 5개년 계획수립처럼 교원지위법 제14조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규정되었음. 그간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긴 했으나 일정한 기간 주기로 이루어지는 종합계획의 성격보다는 교권 보호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현안 대책의 성격이 컸음.
- 이제부터라도 법률에 의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은 보다 체계적인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다고 평가됨. 법률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됨.
- 종합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러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확보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대책들이 계획·시행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교원지위법 제16조에 따라 실시되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화된다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3)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부족

-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에 소속된 교원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당연

하듯이 공교육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이 새로운 역할을 맡아왔음. 그 과정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고 미세한 수당조정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교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배정해 왔음.

- 현재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이나 표준수업시수는 존재하지 않음. 2000년에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 포함된 과제인 직무수행기준이나 표준수업시수의 설정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임(이종재 외, 2000). 물론 현실적인 이유가 크지만 직무수행기준이 없다는 점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결정한 모든 일이 교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직무를 지원하는 체계는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한 수준임. 통상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러한 지원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우선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지원시스템 구축에 시차가 작동하고 있음.
- 교육청 수준에서 살펴보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도 교권 보호위원회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학교 측면에서 보면 교육활동 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시행할 인력과 공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별 상황에 따라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음.
- 교원의 본질적인 활동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된 특정한 교육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더 빈약할 것으로 예측됨.
-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원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활동들은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들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제거의 방식은 교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3. 교권 회복 및 보호 방안 제안

가. 원칙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 교권 보호의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은 학생 인권과의 관계임. 특히,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슈가 등장한 바 있음.
- 교권과 학생 인권이 갈등적 관계라는 관점과 균형 있게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이 공존하고 있음(김성기·김기예, 2023; 김성기 외, 2023). 다만, 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항상 같은 비중으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교권 또는 학생 인권이 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특히, 그간의 논의처럼 교육 당사자의 권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라는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교권 또는 학생 인권 간의 관계가 단순히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거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 교육기본권에서는 교육 당사자로서 학습자(제12조), 보호자(제13조), 교원(제15조)을 포함하고 있음.
 - 학습자에 대한 규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은 학습자의 인격과 개선을 중시하고 학습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는 학습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준수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특히,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함.
 - 교원에 대한 규정(제14조)은 다음과 같음.

- ① 학교 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권에 제시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와 보호자 그리고 교원의 권리와 책임은 학습과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함을 보여줌. 특정 당사자의 권리는 이러한 목적을 위배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예방과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

- 교권 보호는 발생한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최수진 외, 2021). 예방적이라는 것은 사후 조치 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즉,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의 문화를 조성하거나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학교구성원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자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 등이 시행될 때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임.
- 이와 더불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학생이 교권 침해자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학교 규칙에 대한 미준수, 교사에 대한 반항, 동료 학생에

대한 무시 등을 행하는 것임. 이러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조치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나 그 접근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함.

- 교육적이란 의미는 학생을 교육의 공간이나 기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징계는 결국 해당 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하고 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 배타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성향상 문제로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교육적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행동이 나타난 것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야 함.
- 물론 극단적 행동이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필수적일지라도 문제행동 발생 시 그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해당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원인을 살피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 등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3)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의 접근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야 하는 것임. 단순히, 교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강화와 교권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만으로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교권 침해 요인들을 제거할 수 없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2024년 시행한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82 수준이었으며, 교육이 직면한 과제로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인한 인성 및 시민성 교육 소홀, 학생들의 다양한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 KEDI의 교육 현안 여론조사에서도 학생의 인성 수준에 대한 우려와 학교에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사회성 및 인간관계가 1위, 도덕성이 2위, 기본 생활 습관이 3위(2023년 기준)로 나타난 바 있음.
- 학교가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사회성이 부족한 개인주의 성향의 학생을 위한 경쟁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적 이유라고 판단됨.
- 또 다른 관점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무엇이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환경의 조성 여부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가 약해진 것 중 하나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음. 즉,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일부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곧 학교라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고 사교육 의존도에 따라 학력 격차나 수업 준비도, 입시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짐에 따라 교사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학생들과 보호자는 학생의 현재 학업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결국 현재의 교권 침해 현상은 단순히 교권 침해 제도가 미비하거나 교권 침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조치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닌 공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가 해당 원인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는 교원의 직무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는 것과도 관련됨. 즉, 교원의 직무 재조정의 관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사회의 요구, 가정교육의 약화에 따라 교육의 기능 이외에 초등의 경우 보육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게 되었음. 하지만, 늘어난 직무 영역에 비해 학교의 구조나 구성원은 예전의 방식대로 배치되고 직무가 정의되어 있음.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원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법령에서 규정된 교원의 역할을 의미 있게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교육환경, 각자 개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새로운 교육 방법(예: 학생참여형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으로 가르친다는 한계가 있음.
- 교원이 온전히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교원의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임.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학교에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게 될 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원은 교육활동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게 됨.

나. 구체적 과제

1)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단기적 보완

배경	●교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학교 내 교권 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교내 교권회복 및 보호 관련 예방조치를 수행할 조직이 없음. ●학교 내 교권관련 사안 조사시 대부분 당사자는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이므로 조사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존재함. ●교권관련 제도 개선 이후의 행·재정적 후속조치 필요.
세부 방안	●교권의 개념 중 핵심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으로서의 교권의 개념을 교권지위법에 규정함. ●학교 내 교권관련 이슈를 전담할 조직 신설(가칭 교권위원회)을 통해 학교 전반에 걸친 교권 보호 및 회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교권 보호 사안 조사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사안조사를 담당하게 함 (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확대개편을 추진함). ●생활지도 고시 등 학교의 교권 침해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및 재정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은 관련 인력 및 예산을 학교에 배부해야 함.

-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서는 교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이 교사에게 있다는 것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 교권의 개념은 ‘교원의 권위와 권한’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달리 말하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교원의 권위는 법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지만 교원의 권한은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객관화하여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이러한 교원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평가권만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평가하며, 교육감은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평가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도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학교장이나 교사 등 교원의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도 제32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원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처럼 현행 법제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권위(사회적 신뢰와 존경)는 물론이고 법적인 권한도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
- 현재 상황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교권을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제안된 다양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함.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교권 이슈를 논의하는 기관인 교권 보호위원회가 2024년 3월 28일자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 기능이 이관되었음. 이는

그간 학교 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다만, 더 이상 학교에 교권 보호를 총괄하는 조직이 사라지는 바람에 교권관련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게 됨. 예컨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가 담당하고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정서적 치유 등은 교무부에서 담당하는 구조가 됨.

- 학교폭력 제도의 경우 과거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된 이후에도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존재하여 피·가해학생 조치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학교 내 교권 예방활동이나 교권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교권담당조직(가칭 교권위원회)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교권담당조직은 새롭게 도입되는 교권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학교 교권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사안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과거 학내 교권 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사안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권 보호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의 입김이 강해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재심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렇듯 교권관련 사안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사 및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함. 학교폭력 제도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된 것 같이 사안이 복잡한 교권 침해사안 조사시에는 외부의 전문가에 의한 사안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 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만약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착된다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학교 내 갈등상황 조사관 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롭게 도입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학교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나 공간 부족 또는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음. 계획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성공적인 실행 조건들은 충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방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교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함.

2)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교권 보호 및 회복 제도 개선

배경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제기되는 교권 침해 주장에 대해 여전히 교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특히, 2024년 교권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일부 법률에 포함되었지만 완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권 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반복적인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함. ●여전히 교권 침해 경험 교사는 온전한 회복 없이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함. ●종합적인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이 부재하며, 학교급의 교권 침해 상황을 반영한 학교급별 맞춤형 교권 보호대책이 부족함.
세부 방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과정에서 불필요한 법률적 소송이나 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즉, 「아동복지법」상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과 더불어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체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상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 ●교권 침해자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함. 반복적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학생 보호자에 대한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함.

- 교권 침해 피해교원 및 교권 침해 위기에 처한 교원의 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5년단위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함.

- 2023년 강력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시행에 따라 예전보다 한층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수립되었음. 이처럼 그간 교원들이 요구한 내용들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은 FGI 결과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여전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 조항(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이 교육활동에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과제가 남아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의안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
- 특히,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의 개념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이 중 정신적 폭력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률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교원의 학교 밖 교육활동 대표적으로 체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민·형사적 책임을 제한적으로 묻는 방안이 법률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함.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체험활동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등에 대해 교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때문임.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교권 회복 및 보호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체험학습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고는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한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함.

- 교권 침해자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반복적 교권 침해행위를 범한 학생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학생 치료 체제구축을 통해 처벌적 측면이 아닌 치료적 측면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학생 보호자의 경우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집행이 필요함.
- 다만, 현재 학부모를 포함한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교권 침해 조치사항 중 특별교육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이 이루어지거나 조치없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교육 이수 및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
- 학생 보호자의 직접적인 교권 침해행위나 학생이 행한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특별교육기관이 충분히 지정되어야 하며, 학생 보호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정교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정신적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현재의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교권 침해 경험을 가진 교원의 회복을 위해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비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할 시 발표되는 교육부 차원의 교권 보호대책이 종합대책 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에 따라 교권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한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되었음. 특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초등과 중등학교급에서의 교권 침해사안의 유형, 침해집단, 침해의 원인과 과정, 교권 침해의 영향력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대책이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함.

3)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성 개발 여건 조성

- | | |
|----|--|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된 교육환경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는 양성체제가 미흡함. |
|----|--|

-
- 교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교사 등의 저경력 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가 발생함.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절차나 대응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직과목 개선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학부모 상담역량, 교육활동 침해행동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법 그리고 교권 보호절차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세부 방안
- 교원양성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습교사제 등의 방안으로 생활지도나 학생, 학부모 소통역량 등을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교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업무 배분 과정에서 저경력 교사 배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저경력 교사들이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수습교사제 도입을 통해 임용에 합격한 임용 대기자가 학교현장을 경험함으로써 학생지도나 학부모 및 학생 상담과 같이 실제의 사례와 멘토교사의 지도로 실행학습을 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예전과 다르게 학교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 교원양성과정의 실습과정으로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교사의 학교 업무 배정 과정에서 교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업무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사에게 배정(업무 전담 교사로 지정하고 수업시수 감축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전문 직위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업무 담당 전문가로 양성할 기회를 제공(승진 가점 및 인센티브 제공)해야 함. 장기적 관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생활지도 수석교사 직위 신설이 필요함.
 -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함.
 - 위기 학생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교사(상담사) 배치가 확대되어야 함.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배치되는 상담교사(상담사)를 학교의 여건(학생 수나 높

은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학교 특성 고려)을 고려하여 배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교권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배경	•교사들은 학교관리자인 교감·교장의 교권 보호 관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교권 보호와 관련된 학교관리자의 책무성 체제가 여전히 부족함.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된 학교관리자의 교권 회복 및 보호 책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세부 방안	•학교관리자를 위한 맞춤형 교권 보호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함. 사례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교장 승진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소속 학교 교사들의 교권 보호 노력을 평가지표로 포함함(동료 평가의 일환). •시도교육청은 학교평가의 한 지표로 학교의 교권 보호 체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점 지표로 포함해야 함.

- 교권을 보호하려는 방안으로 학교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학교관리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 교권 침해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님.
- 학교관리자의 인식과 대응 능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관리자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예컨대, 그간 학교에서 교권 보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학교관리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야 함. 이를 통해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음. 특히, 학교 내 민원

처리나 교권 침해 사안을 담당하는 교감의 경우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학교관리자의 교권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에 교사의 교권 보호인식과 학교의 교권 보호제도 및 문화에 대한 평가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학교평가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할 때 학교평가지표에 교권 보호 지표가 들어가면 학교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교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 또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의 수준(교육활동 여부나 학생·학부모의 교권 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교권 침해에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를 지원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음.
- 더불어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거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관리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5) 교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배경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이를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상호존중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세부 방안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이 통합 운영되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관련된 역량인 존중, 이해, 갈등관리,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 위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함.

- 인성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인성교육의 실천, 즉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함.
- 현행 학교문화 책임 규약에 교권 회복 및 보호와 관련된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의 합의된 규범으로 발전시켜야 함.

- 학교 내 교권 문화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내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서 꾸준히 제안되었으며, 법령으로서 교육 의무화가 규정되었음.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일회성의 형식적인 집체 교육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교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이유임.
-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중과 배려, 소통, 협동 등이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학교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것은 인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식 교육이 주를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학생 활동 중심, 프로젝트 중심,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

교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개발·운영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이 아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에는 학교구성원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적 관점의 사후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는 학교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될 수 있음. 이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시행 기반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으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상호 간의 존중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음.
- 학교에서 이러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권 보호 활동을 기획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교권 보호 예방 교육이 될 수 있음.

6) 학부모 교육 강화 및 실효성 확대

배경	●그간 학교나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책임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및 지역 내에서 학부모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세부 방안	●학교급별로 학부모 등 보호자는 적어도 1회(30분 수준)에 걸친 학부모 교육을 받도록 강화함. 학부모 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학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권리를 중심으로 하되, 교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교권이 학생의 교육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시킴. ●학부모 교육을 학교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유연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특히, 학부모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

용하여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교권 침해는 단순히 법적인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님. 근본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나타나는 것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학교구성원의 관점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현상임. 그러므로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교육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나 무시 현상을 극복할 수는 없음.
- 그간 강력하게 시행된 학생인권의 확대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권리의 강화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교원의 교권을 위축시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 있음. 학생인권의 확대는 학생의 책임보다 권리를 우선시하는 풍토를 형성하였고, 학교자치, 학교자율성 강화의 흐름에서 보장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는 학부모가 학교 내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함. 이는 곧 교원의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를 줄여준 것으로 해석됨.
- 교권은 교사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습자인 학생의 학습권과 기본적 인권을 위해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임. 특히,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생활지도 등은 기본적으로 교원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바탕이 되어야 함.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관계는 제한된 시간 동안 1대 1 또는 1대 소수의 구도인 반면, 학교는 단체 생활을 통해 학교의 목표와 학생의 교육적 성과가 형성되기 때문임.
-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학부모(또는 학생의 보호자)의 내 자식만을 위한 교원의 관심과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면 학교나 학급운영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교육기본법」제13조(보호자)에서는 ①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 등 보호자는 노력해야 하며, 학교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이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 많은 연구의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에서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가정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곧 학부모의 교육적 책임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이런 관점에서 학부모 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함.
- 학부모 교육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 인성교육이라고 판단됨. 누구나 인정하듯 학생 인성 문제는 학교에서만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부모로서의 교육적 태도도 학생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위기 학생 뒤에 위기 부모가 있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함.
-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법제화하여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학부모를 통한 가정에서의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만에서는 2003년에 「가정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학교 교육에서 4시간 이상의 가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친직교육(親職教育, 부모의 역할 교육), 자직교육(子職教育, 자녀의 역할 교육), 성별교육(性別教育, 성역할 교육), 혼인교육(婚姻教育), 실친교육(失親教育,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 윤리교육(倫理教育), 다원문화교육(多元文化教育), 가정자원관리교육(家庭資源與管理教育), 기타 가정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생활 교육·부모 교육·가족 상담 등을 추진하게 되어 있지만, 가족생활교육이나 부모 교육, 가족 상담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학교에서의 일반적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신혼부부부터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부교육, 부모 교육, 가정교육을 체계화하고, 유치·초·중·고 입학식에서 30분 이상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 이 과정에서 학교 이외에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학교 내 학부모 교육의 경우에도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학교구성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 강화

배경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교직 내부에서도 학교 이탈 의도를 가진 교사가 늘어나는 등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 •교원들이 소임을 수행하는 과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데 비해 직무수행 과정의 인센티브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세부 방안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교직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대중 매체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 •교원의 추가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체계의 조정 및 수당의 현실화를 지속해야 함.

- 교원들은 최근 교사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교육전문가의 자긍심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특히, 교권 침해 관련 사안을 경험하거나 동료교원의 사례를 관찰하면서 더욱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게 됨. 이는 교원이라는 긍지, 교원으로서의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교권 보호가 내실화되고 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권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과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함. 언론기사의 경우에도 학교에 대한 혹은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무분별하게 보도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교원에 대한 공격 또는 부정적인 글들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와 방안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마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 침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할 방안이 요구됨.

-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는 교사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악성 민원이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에 있음.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법령 및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근본적 교권 회복에 도달하기 어려움.
- 교권 보호 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고 학부모들 역시 아동학대 신고, 민원 제기 등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개정 사항만으로는 학교현장의 근본적 변화에 이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우려됨.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 제고와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및 민원 제기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대학입시의 과정에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직업으로서 교직의 매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함.
- 교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하며, 현재 교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부딪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이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교원의 역할과 직무 환경이 그 중요성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현재 교원이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간 당연시되어 오던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원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의 희생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담임수당이나 부장수당이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은 우수한 인재가 근무하는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낮은 수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가 수준

의 전반적인 연봉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단일 호봉체제라는 점과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낮은 수당은 교원의 사기를 낮추고 사회적으로 교직에 대한 낮은 평가를 부추길 수 있음.

8) 교육지원 활동 행정업무 조정 · 이관

배경	•교원의 역할을 교육정책의 변동에 따라 커지고 있어 교원의 전문적 역할인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 •그간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화되고, 시도교육청이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교권 침해와 관련된 학교나 교원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세부 방안	•불필요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지원팀(센터)의 조직을 확장하여 교육지원청이 학교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현재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력요구 수준을 엄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학교교육을 지원할 보조 인력을 확대해야 함. 늘봄학교가 늘봄실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인 것처럼 학교의 업무 중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업무는 학교행정실이나 외부의 행정기관으로 이관해야 함. •학교의 외부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 23년 도입된 민원전담팀 운영을 모니터링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이 해결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함.

- 학교는 사회체제로서 교수-학습활동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짐. 교사는 학교의 핵심 기능인 교수-학습활동을 담당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

- FGI 분석 결과 학교의 다양한 인력 간의 업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공무원, 행정직 등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방과후 학교, 늘봄 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과 관련이 적고 외부 강사에 의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도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예컨대, 방과후 학교의 교수-학습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교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강사 채용과 관리, 수강료 수납 등의 채용과 회계 관련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로 볼 수 없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 활동 이외의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민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방과후 학교, 안전관리, 학교급식, 교구와 기자재 관리 등 교육지원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행정직원을 배치하거나 학교 단위 혹은 교육지원청 단위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교육활동 지원이 학교와 교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지원센터의 사무 대상 및 범위 조정, 인력의 배치, 예산 지원 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출결 인정 및 확인, 장기 결석자 확인, 학업 중단 숙려 학생 관리 등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관리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기보다는 별도의 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원이 해당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권 침해를 유발하는 큰 원인으로 나타나는 학부모의 민원을 현재는 교사 개인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2023년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안으로 학교 내 민원처리 전담팀(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을 구

성하고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을 부여하였음. 또한 학교 선에서 처리가 힘든 민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하지만, 여전히 민원처리의 대부분을 교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큼. 본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관리자 등의 이해관계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어 갈등과 민원의 발생 여지가 많음. 특히, 교권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주로 담임교사나 업무담당 교사가 해결해야 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학교 관련 민원은 접수-처리까지 별도의 대응팀(부서)을 학교 내 조직 및 학교 밖의 행정기관 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 전담 대응팀이 어디에 설치되든 원천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 접수된 민원에 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교사는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조사의 횟수, 시간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원 처리 결과에 불응하는 민원인은 상급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9)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지향

배경	•교권 회복 및 보호에 관련된 현재의 위기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임. •교권 회복 및 보호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나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필요한 지원센터 등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함.
세부 방안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한 교육현장을 실현함.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위기학습에 대한 협력교사제 운영을 확대함. 또한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입시제도 및 고등학교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 경쟁중심의 공교육 시스템을 모든 학생

이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생태계로 확장해야 함.

-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달, 민주주의 발달 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 또한, 학교 이외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낮아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성적 등이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시험과 학생평가의 공정성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활동 과정을 압도하는 목적-수단의 전도현상이 학교 교육 현장에 만연되어 있으며 강하게 나타남.
- 이처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교권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학교의 본질적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FGI 분석 결과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남. 현재는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 민원 등을 피하고자 긍정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고, 성적 결과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도 존재함을 나타냄.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학생평가에 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에서 교권 침해의 상당 부분은 수업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평가 등 본연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와 교사의 본질적 활동으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임. 특히, ‘명문대학 진학-인생 성공’이라는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시험 및 성적 평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 영역임. 이러한 구조에서 학생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잦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며, 교사의 고유한

권한인 학생평가 권한이 침해받기도 함.

-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평가에 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개정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와 더불어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요구되는 미래지향적 교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학교로 변화해야 함.

Ⅵ.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결과 요약
2. 정책적 제언
3. 향후 연구 제언

Ⅵ.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결과 요약

- 이번 연구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음. 먼저, 교권 개념의 모호성과 법적 한계를 지적하였음. 현행법에서는 교권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의 법적 권한이 부족한 상황임.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교권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교사의 권리와 권위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교권 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두드러지고, 초등학교 이하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교사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정책변화 측면에서 보면, 2011년 이후 다양한 정책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1년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012년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2022년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등이 있었음. 이러한 정책들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한 상황임.
- 교권 침해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교권 침해 예방 교육,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법률지원 및 배상책임 보장,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민원 대응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권 침해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통해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확인하였음. 미국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접근을, 일본은 악성 민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교사

에 대한 정신적 지원을 강조하였음. 영국은 학교 책임제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접근을, 프랑스는 교사와 생활지도 교사를 분리하여 교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을 보여주었음.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은 국내 교권 보호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FGI 분석 결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사의 권한 위축, 아동학대법 관련 학부모의 과도한 권리 행사, 학교 기능의 지나친 확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등이 도출됨. 그 결과 교사가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교사의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교원들은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해 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었음. 면담 참여자들은 2023년 이후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개선 방향으로 부모 교육 의무화, 교육청의 직접적인 법적 지원체계 구축,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이 제안되었음.

2. 정책적 제언

-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먼저,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교사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함. 이는 교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예방교육과 인식개선도 중요함.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야 함.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 교육을 법제화해야 함.
- 교원치유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켜야 함.

- 민원 대응 시스템도 강화해야 함.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함.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민원 대응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 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여 교권 침해를 예방해야 함. 학교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교권 침해 예방과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함.
- 해외사례의 벤치마킹도 필요함.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효과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함. 교권과 학생 인권이 갈등 관계가 아닌 균형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접근하며,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병행해야 함.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교원의 직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3. 향후 연구 제언

- 이번 연구는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교권의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교권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교사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

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됨. 이를 위해 다양한 법률전문가와 교육정책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분석해야 함.

-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후 교권 침해 예방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중요함. 특히, 학부모 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연구는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
- 교원치유 및 지원체계의 강화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역할 확대와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함. 특히,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구체적인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해외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교권 보호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교권 보호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각국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함. 이러한 연구는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연구들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향후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15). 2015 교권 보호 길라잡이.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교권 보호 종합대책.
- 교육부(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 교육부(2023).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 교육부(2024).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현황.
- 교육부 보도자료(2023. 5. 22.).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강원도교육청(2024). 2024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 광주시교육청(2023). 2023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의 안전망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2024).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 경상북도교육청(2024). 2024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
- 경상남도교육청(2023).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2023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 남궁지영, 김창환, 우명숙(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2).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형, 도재우, 민윤정, 양희준, 이강주, 이쌍철, 이정우, 이희현(202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2).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형, 이희현, 양희준, 도재우, 이정우(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3).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형, 황준성, 강성국, 모토카네 마사히로, 이호준, 안병훈(2023).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OR2023-02). 한국교육개발원.
- 권혁운(2010).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191-214.
- 김도기, 이정표, 권순형, 김제현, 김세영(2020). 교사의 교권 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강원도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499-526.
- 김달영, 송규호, 신종문, 이경오, 이승윤, 조민정, 류민영(2014). 교권과 학생인권의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2), 27-46.
- 김민규, 이상신, 엄문영(2016). 교권 침해에 관한 판례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28(3), 1-24.

- 김민석(2023.7.25.). [교권] 보건복지부, 교직원 9910명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관리. 교육희망.
- 김범주(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의 우선순위—공공선택론 관점에서 교사와 보호자 요구에 대한 시론적 적용—. 교육정치학연구, 29(4), 59-83.
- 김범주, 이평구, 김소현(202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초·중등 교육대상 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1(2), 199-226.
- 김성기(2023). 학생생활지도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35(2), 57-77.
- 김성기, 김기예(2023).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안.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성기, 정성수, 김기예(2023).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의 균형, 경북교육청 교육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김성기, 황준성, 이덕난(2017).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 서울: 가람문화사.
- 김소현, 김범주, 왕건환, 이상우, 이평구(2022).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식 분석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학생, 학부모, 교원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22-12). 경기도교육연구원.
- 김은주(2018). 교권 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 167-197.
- 김이경, 유수정, 김미정(2009). 교사의 근무시간 내·외 직무부담 비교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7(4), 87-108.
- 김이경, 한만길, 박영숙, 홍영란, 백선희(2005).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 RR 2005-8).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민, 양승실, 이선호, 김일혁(201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4).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우, 김위정, 이가람(2023).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인권연구, 6(1), 65-99.
- 김지애(2024.5.24.). “소풍 갔다가 법정 설라” ...요즘 학교 체험학습 줄이는 이유. 서울신문.
- 김태옥, 임두빈, 박정수, 주아름, 박한범, 최선미(2018). 교권 침해 실태분석 및 교권 보호 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2018-003).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센터.
- 대구시교육청(2023).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 대전시교육청(2024).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

- 부산시교육청(2023).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 서울시교육청(2023). 2023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 세종시교육청(2024). 2024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운영 계획.
- 울산시교육청(2024).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 이강주, 양승실, 차성현(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3). 한국교육개발원.
- 이덕난(2023. 11. 2.).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교육활동 보호의 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 이덕난(2023).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교육법학연구, 35(3), 27-54.
- 이동엽(2024). 생태학적 관점에서 교권 문제 바라보기.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
- 이웅(2023. 8. 1.).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어났다?”. 연합뉴스.
- 이윤미, 이상은, 박상완(2022).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교사역할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식. 교육학연구, 60(6), 399-428.
- 이종재, 김혜숙, 송광용, 이윤식, 박종렬, 서정화, 김성열(2000).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의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 인천시교육청(2024).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
- 임소현, 강영혜, 김홍주, 조옥경(201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5).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김은영, 백승주, 황은희, 황준성, 김홍주(20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7).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김홍주, 한은정, 황은희(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백승주, 유경훈, 허은정(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9).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허은정, 백승주(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18).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박병영, 황준성, 황은희, 백승주, 김혜자, 이정우(20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0).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황준성, 김은영, 김혜진, 백승주, 김혜자, 이정우(20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KEDI POLL 2021). 한국교육개발원.
- 전라북도교육청(2024). 2024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 전라남도교육청(2023). 20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 전제상(2024). 우리나라 교권 보호정책의 역사와 특징. 제1차 교권 회복 및 보호 포럼.
- 정바울, 이성희, 양승실, 김병찬, 김종민, 김효정, 서용선(2014). 교원의 업무시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RR2014-04). 한국교육개발원
- 정바울, 장유정(2020). Covid-19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교사 직무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7(4), 125-144.
- 정소민, 조기성, 정이화, 김용진(2022). 학교구성원의 교육활동(교권) 보호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22-수시-0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정영수, 김숙이, 김이경, 김민희, 김민성, 이강복, 민병성, 김영순(2010). 학교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한 교직원 직무분석. (2010년 정책연구개발사업).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정혜민(2023).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찰. 법과인권교육연구, 16(1), 1-20.
- 제주도교육청(2023).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 조기성(2019). 교권의 개념과 보호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조기성, 정상우(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22(6), 33-57.
- 최상덕, 최동선, 허재준, 박승재, 박성철, 박근영, 서영인, 문보은, 도재우, 장상현, 이용상, 박준식, 신철균, 백선희, 박기범, 정창권(2022).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Ⅱ). (협동연구총서 22-26-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선옥, 염보아, 황의갑(2018). 교권 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165-190.
- 충청남도교육청(2024). 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 충청북도교육청(2023). 2023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기본계획.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3). 교권 침해 사례 모음집.

미국 사례 참고문헌

- Ashley, J., & Burke, K. (2009). Implementing restorative justice: A guide for schools. Chicago, IL: Illinoi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uthority.
- Balfanz, R., Byrnes, V., & Fox, J. H. (2015). Sent home and put off track: The antecedents, disproportionalities, and consequences of being suspended in 9th

- grade. In D. Losen (Ed.), *Closing the school discipline gap: Equitable remedies for excessive exclusion* (pp. 17-30).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D'Amico Pawlewicz, D. (2016). Teachers' Rights Versus Students' Rights: Race and Professional Authority in th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1960-1986.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3(3), 541-572.
-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2023). LIFT: Leadership Initiative for Teachers 2023-2024.
- Fronius, T., Darling-Hammond, S., Persson, H., Guckenburg, S., Hurley, N. & Petrosino, A. (2019). *Restorative Justice in U.S. Schools: An Updated Research Review*. San Francisco, CA: WestEd. Retrieved from, <https://www.wested.org/wp-content/uploads/2019/04/resource-restorative-justice-in-u-s-schools-an-updated-research-review.pdf>.
- Gregory, A., & Clawson, K. (2016). The potential of restorative approaches to discipline for narrowing racial and gender disparities. In R. Skiba, K. Mediratta, & M. Rausch (Eds.), *Inequality in school discipline: Research and practice to reduce disparities* (pp. 153-170).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Hurley, N., Guckenburg, S., Persson, H., Fronius, T., & Petrosino, A. (2015). *What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restorative justice in schools?*. San Francisco, CA: WestEd. Retrieved from, <https://www.wested.org/wp-content/uploads/2016/11/1437411340resourcewhatfurtherresearchisneededonrestorativejusticeinschools-3.pdf>.
- Kafka, J. (2009). Shifting Authority: Teachers' Role in the Bureaucrat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Postwar Los Angeles, *History of Education Quarterly*, 49(3), 323-346.
- Karp, D. R., & Frank, O. (2016). Anxiously awaiting the future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Victims & Offenders*, 11(1), 50-70.
- Losen, D. (Ed.). (2014). *Closing the school discipline gap: Equitable remedies for excessive exclusio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Marchbanks, M. P., III, Blake, J. J., Booth, E. A., Carmichael, D., Seibert, A. L., & Fabelo, T. (2015). The economic effects of exclusionary discipline on grade retention and high school dropout. In D. Losen (Ed.), *Closing the school discipline gap: Equitable remedies for excessive exclusion* (pp. 59-74).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Morris, E., & Perry, B. (2016). The punishment gap: School suspens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achievement. *Social Problems*, 63, 80-81.
- Morrison, B., & Vaandering, D. (2012). Restorative justice: Pedagogy, praxis, and discipline. *Journal of School Violence*, 11(2), 138-155.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2). More than 80 Percent of U.S. Public Schools Report Pandemic Has Negatively Impacted Student Behavior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ress releases. Retrived from, https://nces.ed.gov/whatsnew/press_releases/07_06_2022.asp.
- Payne, A. & Welch, K. (2018). The effect of school conditions on the use of restorative justice in school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6(2), 224-240.
- Schiff, M. (2013). Dignity, disparity and desistance: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strategies to plug the “school-to-prison pipeline” . Closing the School Discipline Gap Conference of January 2013, Washington, DC.
- Sherman, L. W. (2003). Reason for emotion: Reinventing justice with theories, innovations, and research—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2002 Presidential Address. *Criminology*, 41, 1-37.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3). A Blueprint for R.E.S.P.E.C.T.: Recognizing Educational Success, Professional Excellence and Collaborative Teaching.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Guiding Principles for creating Safe, Inclusive, Supportive, and Fair School Climates.

일본 사례 참고문헌

- 도쿄도 교육상담센터(2022).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학부모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https://e-sodan.metro.tokyo.lg.jp/works/support/pdf/tebiki_all.pdf
- 도쿄도 교육위원회(2024.01.15.).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에 대하여
<https://www.kyoiku.metro.tokyo.lg.jp/staff/welfare/consulting.html>
- 문부과학성(2010.8.). 학부모나 지역 등으로부터의 요청 등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대처
https://www.mext.go.jp/a_menu/shotou/uneishie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0/09/13/1297348_1.pdf
- 문부과학성(2023.10.4.). 2022년도 아동·학생의 문제행동·등교거부 등 학생지도상의 여러 과제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

- https://www.mext.go.jp/content/20231004-mxt_jidou01-100002753_1.pdf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2020.1.). 학교에서의 학부모 등의 대응에 관한 지침서
https://www.mext.go.jp/content/20200630-mxt_syoto02-000006216_02.pdf
야마구치현 교육위원회(2016.3.). 문제행동 등 대응 매뉴얼 ~아동학생 · 학부모와의
높은 신뢰관계 구축을 목표로~
<https://www.pref.yamaguchi.lg.jp/site/kyouiku/26677.html>
오사카교육법연구회(2013). 주목할 만한 교육재판 판례(2013년 12월)
<https://kohoken.chobi.net/cgi-bin/folio.cgi?index=cnt&query=/lib/khk242a1.htm>
학교 리스크 매니지먼트 추진 기구 뉴스레터 WEB
<https://www.relief-point.co.jp/newsletterweb/%E3%83%A2%E3%83%B3%E3%82%B9%E3%82%BF%E3%83%BC%E3%83%9A%E3%82%A2%E3%83%AC%E3%83%B3%E3%83%88%E3%81%B8%E3%81%AE%E5%AF%BE%E5%BF%9C/>
All Japan Teachers and Staffs Union. 교직원 권리 헌장
<https://www.zenkyo.jp/about/charter/>
Kusagai Yukari(2014). 公立小・中学校教師の休職・退職意識に影響を及ぼす諸要因
の検討. パーソナリティ研究, 23(2), 67-79.
Mukoyama Yoichi. Official web site
<https://mukoyamayoichi.com/works/work08>
Ogi Naoki(2008). アンケート調査報告 「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 の実相.法政大学
キャリアデザイン学部紀要= 法政大学キャリアデザイン学部紀要, 5, 99-113.
Saito Hiroshi(2010). 「モンスターペアレント」 の対応策に関するパラダイム転換. 佛
教大学教育学部学会紀要, 9, 111-122.

영국 사례 참고문헌

-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nife Crime. (2019). Back to School? Breaking the link between school exclusions and knife crime. Retrieved from, <https://www.fightingknifecrime.london/report/back-to-school-breaking-the-link-between-school-exclusions-and-knife-crime>
Behaviour HUBS. (n.d.). Home. Retrieved from, <https://behaviourhubs.co.uk/>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2019). Keeping kids safe: improving safe guarding responses to gang violence and criminal exploitation. Retrieved from, <https://assets.childrenscommissioner.gov.uk/wpuploads/2019/02/CCO-Gangs.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18 September 2023). New taskforce to tackle teacher workload.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taskforce-to-tackle-teacher-workload>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Use of reasonable force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se-of-reasonable-force-in-schools#:~:text=Documents-,Use%20of%20reasonable%20force%20in%20schools,-Ref%3A%20DFE%2D00295>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a). 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c8fc653ed915d07a80a33fa/DFE_Teacher_Retention_Strategy_Report.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9b). The Timpson review of school exclusion: government response.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00676/Timpson_review_of_school_exclusion__government_response.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a). Behaviour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school-absence-and-exclusions-team/revised-school-behaviour-and-exclusion-guidance/supporting_documents/Behaviour%20in%20schools%20%20advice%20for%20headteachers%20and%20school%20staff.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b). Searching, screening and confiscation: guidance for school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d1643e8fa8f50bfbe55c/Searching__Screening_and_Confiscation_guidance_July_2022.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2c). Suspension and permanent exclusion from maintained schools, academies and pupil referral units in England including pupil movement. Retrieved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school-absence-and-exclusions-team/revised-school-behaviour-and-exclusion-guidance/supporting_documents/Suspension%20and%20permanent%20exclusion%20guidance.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a). Exploring teachers' admin time.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677e70ea2cb001315e4a2/Exploring__teachers__admin_time.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b). National behaviour survey.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809defb32b9e0012a963ce/National_Behaviour_Survey_academic_year_2021_to_22_report.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3c). Suspension and permanent exclusion from main-
tained schools, academies and pupil referral units in England including pupil
movement guidance.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
dia/65ce3721e1bdec001a3221fe/Behaviour_in_schools_-_advice_for_headteachers
_and_school_staff_Feb_202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ce3721e1bdec001a3221fe/Behaviour_in_schools_-_advice_for_headteachers_and_school_staff_Feb_2024.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a). Behaviour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s://
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ce3721e1bdec001a3221fe/Behaviour_in_
schools_-_advice_for_headteachers_and_school_staff_Feb_202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ce3721e1bdec001a3221fe/Behaviour_in_schools_-_advice_for_headteachers_and_school_staff_Feb_2024.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b). Mobile phones in school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cf5f2a4239310011b7b916/Mobile_
phones_in_schools_guidanc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cf5f2a4239310011b7b916/Mobile_phones_in_schools_guidance.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c). Initial teacher training and early career frame-
work.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b8fa60e9
e10a00130310b2/Initial_teacher_training_and_early_career_framework_30_Jan_20
24.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b8fa60e9e10a00130310b2/Initial_teacher_training_and_early_career_framework_30_Jan_2024.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d).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document
2023 and guidance on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eae75b5b652445f6f21aa4/School_
teachers_pay_and_conditions_document_2023.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eae75b5b652445f6f21aa4/School_teachers_pay_and_conditions_document_2023.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4e). Workload reduction taskforce: initial recommen-
dations.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a10648
e8f5ec000d1f8c2f/Workload_reduction_taskforce_-_initial_recommendation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a10648e8f5ec000d1f8c2f/Workload_reduction_taskforce_-_initial_recommendations.pdf)
- Department for Education. (28 February 2020). Behaviour hubs.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uidance/behaviour-hubs>
- Department for Education. (30 January 2024). The trainee teacher behavioural to-
olkit: a summary.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initial-teacher-training-itt-core-content-framework/the-trainee-teacher-behavi-
oural-toolkit-a-summary](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itial-teacher-training-itt-core-content-framework/the-trainee-teacher-behavioural-toolkit-a-summary)
- Department for Education. (n.d.). Improve workload and wellbeing for school staff:
Behaviour management. Retrieved from, [https://improve-workload-and-wellbei-
ng-for-school-staff.education.gov.uk/explore-all-resources/behaviour-managem-
ent/](https://improve-workload-and-wellbeing-for-school-staff.education.gov.uk/explore-all-resources/behaviour-management/)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2003). 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 Document 2003. Retrieved from, <https://www.local.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School%20Teachers%20Pay%20and%20Conditions%20Document%202003%20WEB.pdf>
- HM Government. (2022). Opportunity for all: strong schools with great teachers for your child. Retrieved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2416cb5d3bf7f32add7819f/Opportunity_for_all_strong_schools_with_great_teachers_for_your_child__print_version_.pdf
- Loft, P., Roberts, N., & Danechi, S. (2020). School exclusions. Retrieved from,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DP-2020-0032/CDP-2020-0032.pdf>
- National Statistics. (23 November 2023). Suspensions and permanent exclusions in England: autumn term 2022/23. Retrieved from, <https://explore-education-statistics.service.gov.uk/find-statistics/suspensions-and-permanent-exclusions-in-england>
- Ofsted. (10 May 2019). What is off-rolling, and how does Ofsted look at it on inspection?. Retrieved from, <https://educationinspection.blog.gov.uk/2019/05/10/what-is-off-rolling-and-how-does-ofsted-look-at-it-on-inspection/>
- Ofsted. (2022). School inspection handbook. Retrieved from, <https://dera.ioe.ac.uk/id/eprint/39370/1/School%20inspection%20handbook%20-%20GOV.UK.pdf>
- Ofsted. (20, July 2022). Education recovery in schools: summ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recovery-in-schools-summer-2022/education-recovery-in-schools-summer-2022>
- Ofsted. (4, April 2022). Education recovery in schools: spring 2022. Retrieved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recovery-in-schools-spring-2022/education-recovery-in-schools-spring-2022>
- Ojewunmi, B. T.(15, November 2019). Pastoral care: a whole-school approach to creating the ethos of wellbeing that culminates in better engagement and improved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ers. BERA. Retrieved from, <https://www.bera.ac.uk/blog/pastoral-care-a-whole-school-approach-to-creating-the-ethos-of-wellbeing-that-culminates-in-better-engagement-and-improved-academic-achievement-of-learners>

프랑스 사례 참고문헌

- Articles R511-12 à R511-19 du Code de l' éducation (교육법): Sanctions applicables aux élèves des établissements d' enseignement du second degré
- Articles L211-1 à L216-3 du Code de la fonction publique (공직법)
- Articles L2511-1 à L2525-2 du Code du travail (노동법)
- Autonome de solidaire laïque (2023). Baromètre de l' ASL 2002 sur le climat scolaire et la relation dans les établissements.
- Décret n° 82-453 du 28 mai 1982 relatif à l'hygiène et à la sécurité du travail ainsi qu'à la prévention médicale dans la fonction publique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MENJ(프랑스교육부). (2019). Guide d' accompagnement des personnels de l' éducation nationale visés par un dépôt de plainte.
- MENJ(프랑스교육부). (2024). Guide pratique pour la sécurité des élèves, des personnels et des enceintes scolaires
- Sénat(프랑스 상원) (2024). Rapport d' information N° 377